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Ver. 2023

SGC 에너지

■ 목 차

I.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해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11
1.1 의의
1.2 이해당사자
1.3 CP란?
1.4 CP필요성

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12

3. CP 7대 구성요소 12
3.1 CP의 도입 및 운영방침의 수립
3.2 최고경영진의 지원
3.3 자율준수 편람
3.4 교육훈련 프로그램
3.5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3.6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3.7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와 개선

II. 하도급관련 불공정거래행위

1. 하도급법 적용대상 및 위반시 제재 13
1.1 하도급법의 목적 및 입법취지
1.2 하도급법의 구조
1.3 관련 규정
1.4 적용범위 14
1.5 위반시 제재 20

2. 거래단계별 법 위반 유형 및 업무시 유의사항 24

2.1 계약체결단계시 하도급법상의 규제내용
2.1.1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의무 24
2.1.2 부당한 특약 설정 금지 28
2.1.3 건설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31
2.1.4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32

2.2 계약이행단계시 하도급법상의 규제 내용
2.2.1 부당한 위탁(발주)취소 및 수령 거부 금지 35
2.2.2 부당반품의 금지 37
2.2.3 검사 및 검사 결과 통보 의무 39
2.2.4 하도급대금 감액행위 금지 41
2.2.5 기술자료제공요구 및 유용행위 금지 43
2.2.6 부당한 경영간섭(전속거래 강요행위 및 경영정보 요구) 금지 48

2.3 대금지급단계의 하도급법상 규제내용
2.3.1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51
2.3.2 선급금 지급 의무 54
2.3.3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의무 56
2.3.4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금지 58
2.3.5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 금지 58
2.3.6 보복조치 금지 59
2.3.7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60
2.3.8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2023. 10. 4. 시행) 61

III. 부당한 공동행위

1. 공동행위(담합)의 개요 64
1.1 의의
1.2 규제현황
1.3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요건

2. 합의추정제도 65

3.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유형 66
3.1 가격을 결정 유지 변경하는 행위 66
3.2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68
3.3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69

4. 공동행위 적용 제외 요건 71

5.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시 제재 73
5.1 행정적 제재
5.2 형사적 제재
5.3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6. 입찰담합금지
6.1 의의 74
6.2 입찰담합의 유형
6.2.1 입찰가격담합 74
6.2.2 낙찰예정자의 사전결정(수주자 선정에 관한 행위) 75
6.2.3 경쟁입찰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유도 77
6.2.4 수주물량 등의 결정 77
6.2.5 경영간섭 등 78

5.3 업무상 유의사항 78
5.4 위반시 제재 79
5.5 공정위의 입찰담합징후 분석 시스템 운영 81
5.6 자진신고에 대한 감면제도(리니언시) 운영 81

6. 문서 작성 및 정보보안 관련 가이드라인 82
7. 업계모임 참여시 행동요령 83

IV. 계열사간 거래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1. 개요 84
2. 일반부당지원행위의 금지(법 제45조 1항 9호) 85
2.1 개념
2.2 유형
2.2.1 자금지원행위 86
2.2.2 자산지원행위 87
2.2.3 상품 및 용역지원행위 88
2.2.4 인력지원행위 90
2.2.5 물량지원행위 91
2.2.6 통행세 92

3. 특수관계인 이익제공금지 (법 제47조) 93
3.1 개념
3.2 유형
3.2.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94
3.2.2 사업기회제공 96
3.2.3 합리적 고려나 비교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97

V. 협력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1.1 개요 101
1.2 유형
1.2.1 경쟁자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위
1.2.2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1.2.3 부당하게 차별취급하는 행위
1.3 관련 사례 102
1.4 제재
1.4.1 행정적 제재
1.4.2 형사적 제재
1.4.3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VI. 공정위 공시 및 기업결합 신고

1. 공정위 공시 103
1.1 개요
1.2 기업집단현황 공시
1.3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104
1.3.1 개요
1.3.2 자금, 유가증권, 자산 거래
1.3.3 상품·용역 거래
1.3.4 대규모 내부거래 여부의 판단 105
1.3.5 위반시 제재 107

2. 기업결합 108
2.1 기업결합심사제도의 의의
2.2 기업결합 규제 제도의 내용
2.2.1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2.2.2 기업결합 신고제도

VII. 대규모유통업법

1. 개요 111
1.1 대규모유통업법의 목적 및 입법취지
1.2 대규모유통업법의 구조 111
1.3 관련 규정 112
1.4 적용 범위 113
1.4.1 거래당사자
1.4.2 납품업자의 거래형태
1.5 위반시 제재 113

2.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위반 유형 및 업무시 유의사항 114
2.1 서면교부의무 및 계약추정제도 114
2.2 상품판매대금 지급의무 116
2.3 상품판매대금 감액의 금지 117
2.4 수령지체 및 거부 금지 117
2.5 상품의 반품 금지 118
2.6 경영정보제공요구 금지 119
2.7 판매촉진비용의 부당전가 금지 120
2.8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122
2.9 경제적 이익 제공요구 금지 124
2.10 매장 설비비용 보상의무 124
2.11 상품권 구입요구 금지 등 126
2.12 불이익 등(보복행위) 금지 128

VIII. 대리점법

1. 개요 129
1.1 주요내용
1.2 징벌적 손해배상

2. 대리점법 상세내용 130
2.1 법 적용 제외 사유
2.2 다른 법률과의 관계
2.3 계약서 교부의무
2.4 대리점법상 금지행위 131
2.4.1 구입강제(밀어내기) 131
2.4.2 부당한 이익제공강요 금지 133
2.4.3 판매목표 강제행위 134
2.4.4 불이익제공 135
2.4.5 경영활동 간섭 금지 136
2.4.6 주문내역 확인 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136
2.4.7 보복조치 금지 137
2.5 업무상 유의사항 137

IX. 표시광고법

1. 표시 광고법의 적용대상 및 위반시 제재 138
1.1 표시광고법의 목적 및 입법취지
1.2 위반시 제재

2.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140
2.1 표시 광고의 기본원칙
2.2 유형
2.3 표시·광고시 유의사항 140
2.3.1 사업자 자신에 관한 표시·광고 140
2.3.2 가격에 관한 표시·광고 141

2.3.3 원재료, 성분에 관한 표시·광고 142
2.3.4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한 표시·광고 142
2.3.5 보증에 관한 표시·광고 142
2.3.6 추천, 권장 등에 관한 표시·광고 143
2.3.7 경쟁사업자 및 경쟁관계 상품에 관한 비교표시·광고 143
2.3.8 중상, 비방하는 표시·광고 144
2.3.9 누락, 은폐 등에 의한 기만적인 표시·광고 144
2.3.10 기타 거래내용 및 거래조건에 관한 표시·광고 145

3. 업무상 유의사항 145
4. 부동산의 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146
4.1 심사지침의 목적
4.2 심사지침의 적용범위
4.3 용어의 정의 147
4.4 일반원칙
4.5 세부심사지침 147
4.5.1 상가 등의 명칭 147
4.5.2 시행자, 시공자, 분양자 148
4.5.3 분양업종, 분양방법, 분양현황, 공사현황 등 148
4.5.4 입지조건, 생활여건, 접근성 149
4.5.5 재산가치, 수익성 151
4.5.6 부동산의 가격 151
4.5.7 부동산의 면적 152
4.5.8 부동산의 특징(재료, 제품, 품질, 부대시설, 별도계약품목 등) 153
4.5.9 융자, 전세금 등 153
4.5.10 인허가 154
4.5.11 조감도 등 155
4.5.12 건물인증 155
4.5.13. 견본주택(모델하우스) 156
4.5.14 콘도미니엄 156
4.5.15 기타 거래조건 157

5. 표시광고시 주의사항 157
6. 표시광고법상의 실효성 확보 158
6.1 중요정보 공개제도
6.2 임시중지 명령제도
6.3 광고실증제도
6.4 제재조치

7. 관련 사례 159

X.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처리 절차
1. 개요 160
1.1 심판기능으로서의 공정위 160
1.2 공정위 사건처리 절차 161
1.3 공정한 심결을 위한 주요 제도 162
1.4 불복절차 162
1.5 사전심사 청구제도 163
1.6 동의명령제도 163

2. 공정위 조사 절차 164
2.1 조사 주체
2.2 조사 단서
2.3 배당과 사전심사
2.4 사건번호 사건명 부여와 조사의 실시
2.5 심사보고서 작성 후 심사관의 조치

3. 공정위 심판절차 165
3.1 심판 주체
3.2 주심위원 지정과 심결보좌
3.3 심의기일 및 장소의 지정
3.4 합의
3.5 의결서 작성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Ver. 2023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1.1 의의

-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이해 증진 및 자율준수를 위하여 당사가 도입, 시행하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말한다.
- <자율준수 매뉴얼> 또는 <자율준수 편람>이란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제정·시행하기 위하여 당사가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1.2 이해당사자

-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으로서 최소 2개 이상의 회사로 구성된다.
- <계열사>란 당사의 계열사를 말한다.
- <경쟁업체>란 당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경쟁적인 상품을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업체를 말한다.
- <거래업체(거래상대방)>란 당사와 계약관계가 체결된 협력업체 및 공급업체를 말한다.
- <직원>이란 당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모든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 <공정위>라 함은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를 말한다.

1.3 CP란?

- 당사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 및 행동규범을 의미한다. CP의 핵심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시 수반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동규범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는 준법경영을 체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1.4 CP의 필요성

- 기업경쟁력과 공정거래 투명성 강화
- 법 위반에 따른 손실을 사전에 예방
- 대내외 신뢰도 제고
- 지속가능한 경영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
-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 <공정거래법>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지칭
- <하도급법>이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지칭
- <대리점법>이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지칭
- <대규모유통업법>이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지칭
- <공정거래관계법령>이란 상기의 법률과 시행령을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통칭
- <법> 또는 <법령>이라 함은 협의로는 해당 법률만을 지칭하나, 광의로는 해당 법률의 시행령, 수임기관의 지침 및 고시를 포함한다.

3. CP 7대 구성요소

3.1 CP의 도입 및 운영 방침의 수립

-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강한 의지와 관심이 중요하며, 공정거래관계법령의 엄격한 준수가 경영의 중요한 요소임을 공식적인 문서로써 대내외적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3.2 최고경영진의 지원

-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명확하고 충분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며, 조직 규모에 적합한 인적, 물적 자원이 제공되는 등 최고경영진의 전폭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3.3 자율준수 편람

- 회사는 자율준수 관리자의 책임 하에 세부지침서로서 활용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율준수 편람을 제작하여야 하고, 임직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배포하여야 한다.

3.4 교육훈련 프로그램

- 기업 내부에 자율준수 관행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령 전반에 관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최고경영자 및 임원(자율준수 관리자 포함), 그리고 법위반행위의 가능성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에게도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3.5 사전모니터링 시스템

-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은 법위반행위의 사전 예방이므로, 일상적인 업무에서 법위반 가능성을 상시적으로 감시·감독하고 법위반 발생시 이를 자율준수관리자 및 최고경영진 등에게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3.6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3.7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와 개선

1. 하도급법의 적용대상 및 위반시 제재

1.1 하도급법의 목적 및 입법취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 하도급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경제활동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수평적·협력적 관계를 통해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1.2 하도급법의 구조

- 하도급법은 목적 및 적용대상, 원사업자의 준수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발주자의 준수의무사항, 수급사업자의 준수의무사항,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내용 및 절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3 관련규정

(1) 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고시, 지침 등

-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부당특약 심사지침
-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 지침
-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선급금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
-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 용역업무 중 역무의 범위 고시
-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
-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 부당특약 고시
-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1.4 적용 범위

- 하도급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하도급법상 규정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하도급법상 규정된 위탁의 범위(제조, 수리, 건설, 용역)에 포함되어야 하며, 거래 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하도급법이 적용된다.

1.4.1 법 적용 대상 사업자

(1) 수급사업자 (법 제2조 제3항)

- 수급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을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도 포함
- 중소기업은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이고,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일정액 이하
-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제외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기업의 출자 지분이 30% 이상인 경우 제외
- 중소기업 해당 여부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검색 가능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규모 기준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1,50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식료품 제조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목재 및 내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그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1,000억원 이하
음료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그 밖의 제품 제조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수도업 제외), 원료재생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800억원 이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입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0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400억원 이하

(2) 원사업자(법 제2조 제2항)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
- 중소기업자 중 수급사업자보다 직전 연간 매출액이 많은 기업으로서 아래 요건 충족
  1) 제조위탁·수리위탁의 경우 :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
  2) 건설위탁의 경우 : 시공능력 평가액이 4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
  3) 용역위탁의 경우 :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	모든 중소기업
중소기업자 중 연간 매출액 일정액 이상 기업	원사업자보다 직전 연간 매출액이 적은 기업
대규모 중견기업 (연간매출액 2조원 초과)	소규모 중견기업 (대금 지급규정만 적용)

1.4.2 법 적용 대상 거래

-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용역위탁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고, 이를 위탁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하도급대금)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법 제2조 제1항 참조).
-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성을 고려하여 "그 업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경우를 하도급거래로 보고 있다. 업으로 한다는 의미는 경제적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해당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공정위 고시)

1.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 판매, 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

가. 제조, 수리, 판매의 대상이 되는 완제품. 단, 당해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는 제외한다.

나. 물품의 제조·수리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로서 규격 또는 품질등을 지정하여 주문한 원자재, 부품, 반제품등. 단 대량생산품목으로 샘플 등에 의해 단순 주문한 것은 제외한다.

다. 물품의 제조를 위한 금형, 사형, 목형등

라. 물품의 구성에 부수되는 포장용기, 라벨, 견본품, 사용안내서등

마. 상기 물품의 제조·수리를 위한 도장, 도금, 주조, 단조, 조립, 염색, 봉제 등 (임)가공

2. 사업자가 건설을 업으로 하는 경우

가.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부품 또는 시설물로서 규격 또는 성능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등에 따라 주문 제작한 것(가드레일, 표지판, 밸브, 갑문, 엘리베이터 등)

나.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로서 거래관행상 별도의 시방서등의 첨부없이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주문한 것(레미콘, 아스콘 등)

다. 건축공사에 설치되는 부속시설물로서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하여 주문한 것(신발장, 거실장, 창틀등)

[참고] 법 적용대상이 되는 건설위탁의 예시 (공정위 <부당특약고시>)

(1)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의 건설위탁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시공자격이 있는 공종에 대하여 당해 공종의 시공자격을 가진 다른 등록업자에게 시공위탁 한 경우

(나) 건설사업자가 시공자격이 없는 공종을 부대공사로 도급받아 동 공종에 대한 시공자격이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 한 경우

①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종합건설사업자가 전기공사가 주인 공사를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에게 전기공사를 시공하도록 의뢰한 경우는 시공을 위탁한 종합건설사업자가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아서 이는 "건설위탁"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전기공사가 부대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건설위탁"으로 본다.

② 토공사업에만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습식공사업에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에게 습식공사를 시공의뢰 한 경우에는 건설위탁으로 보지 않는다.

(2) 전기공사업자의 건설위탁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 한 경우

(3)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건설위탁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정보통신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한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 한 경우

(4) 소방시설공사업자의 건설위탁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한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 한 경우

(5) 주택건설 등록업자의 건설위탁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록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자격이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 한 경우

(6) 환경관련 시설업자의 건설위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업자가 그 업에 따른 해당 환경전문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자격이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 한 경우

(7) 에너지관련 건설업자의 건설위탁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등록업자,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시공자가 그 업에 따른 해당 에너지 관련 시설공사를 시공자격이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 한 경우

(8) 경미한 공사의 건설위탁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사업자 및 「전기공사업법」상의 공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를 상기 법령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9) 자체 발주공사의 건설위탁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파트신축공사 등 건설공사를 자기가 발주하여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참고]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공정위 고시)

1. 「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물류사업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물류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가. 「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업, 물류시설 운영업, 물류서비스업의 활동
   나. 「항만운송 사업법」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 및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용역업·물품공급업·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 및 컨테이너수리업의 활동
2.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양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분양업무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3.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6호의2 규정에 의한 건축물(주거용, 비주거용, 사업시설 포함)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가. 청소, 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 운반 등의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나.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 활동 (조경수 및 관목의 보호를 위한 활동 포함)
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가. 수요자의 요구에 의하여 컨설팅, 요구분석, 시스템통합 시험 및 설치, 일정기간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보프로그램(상용소프트웨어 포함)의 운영 및 유지·보수 활동 포함) 등의 활동
   나. 전산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서비스,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 또는 컴퓨터의 기억장치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이를 검색 또는 제공하는 등의 활동
5. 광고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가. 광고와 관련된 판촉, 행사, 조사, 컨설팅, (사진)촬영 등의 활동
   나. 광고와 관련된 편집, 현상, 녹음, 촬영 등의 활동
   다. 전시 및 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등의 활동
6. 「공연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공연 또는 공연의 기획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편집, 현상, 녹음, 촬영, 음향, 조명, 미술 등의 위탁을 하는 활동
7. 다음 각 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측량, 지질조사 및 탐사 등의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가. 「건축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설계
   나. 「엔지니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중 설계
   다. 측량, 지질조사 및 탐사, 지도제작
8. 상기 역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받은 역무의 전부/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행위

[참고]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공정위 고시)

1. 정보프로그램 작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 성과물을 위탁하는 경우
   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패키지 소프트웨어(게임소프트웨어 포함),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개발·공급 및 특정고객의 주문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데이터베이스 및 웹사이트 포함) 및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를 수반한 소프트웨어 설계·개발 포함),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제안서·마스터플랜, 시스템구축 관련 설계, 시스템개발
   나.「저작권법」제2조 제16호 규정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2. 영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영상·음성 또는 음향에 의하여 구성되는 성과물의 작성 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 성과물의 기획·편성·제작 등을 위탁하는 경우
   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
   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게임물
   다.「방송법」제2조 제17호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포함)
   라.「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음원,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
   마. TV, 홍보영상, 라디오, 신문, 잡지, 온라인광고 등의 광고제작·편집물 (콘티, 썸네일 등의 작업 및 편집, 음향 등 후반작업(Post Production)을 포함한다)
   바. 전자상거래 콘텐츠
3. 문자·도형·기호의 결합 또는 문자·도형·기호와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되는 성과물의 작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 성과물의 기획·편성·제작 등을 위탁하는 경우
   가.「디자인보호법」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디자인
   나.「상표법」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상표
   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 규정에 의한 지도
   라.「저작권법」제2항 제17호 규정에 의한 편집물 / 마. 설계도면
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 및 연구 및 개발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가. 기술시험(결과)서, 검사보고서, 분석보고서, 평가보고서 등의 작성
   나. 번역물 등의 작성 / 다. 시장 및 여론조사보고서 등의 작성
5. 상기 지식·정보성과물의 공급을 위탁받은 자가 위탁받은 역무의 전부/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1.5 하도급법 위반시 제재

제재 유형	내 용
행정적 제재	- 시정조치, 시정권고, 특약 삭제나 수정, 시정명령 -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 과징금 부과 :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법위반 금액 비율에 따라 산정) - 상습 법위반자 명단 공표(법위반 3회 이상 & 벌점 4점 초과) - 입찰제한(3년간 벌점 5점 초과), 영업정지 요청(3년간 벌점 10점 초과)
행정질서벌	- 과태료 부과 : 2억원 이하 - 허위자료 제출 : 사업자 1억원 이하, 개인 1,000만원 이하 - 조사 거부 : 사업자 2억원 이하, 개인 5,000만원 이하 - 서면실태조사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 사업자 500만원 이하
형사적 제재	- 하도급대금 2배 이하의 벌금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위반행위 -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정위의 시정명령 불이행 · 경영간섭 · 탈법행위 - 3억원 이하의 벌금 · 보복조치 - 원칙적 고발 (법위반 3회 이상 & 벌점 4점 초과) - 양벌규정 : 행위자 및 법인 처벌
민사적 제재	- 손해배상책임 -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최대 3배) · 부당단가인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및 감액 금지) · 부당발주취소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 부당반품 금지 · 기술자료 유용 금지 · 보복조치의 금지

■ 벌점부과

부과 기준	점수
경고 (서면 실태 조사)	0.25점
경고 (신고 및 직권 인지)	0.5점
시정권고나 법위반 자진시정 향후 재발 방지 명령	1.0점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2.5점
과징금 (부당한 대금결정, 감액금지, 기술자료 사용, 보복조치)	2.6점
고발	3.0점
고발 (부당한 대금결정, 감액금지, 기술자료 사용, 보복조치)	5.1점

■ 감경 기준

유 형	점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직전 1년간)	- 2.0점
하도급 특별교육 수강 (3시간 이상)	- 0.5점 (대표자) - 0.25점 (임원)
하도급거래 우수업체 표창 (위원회, 행정기관)	- 2.0점
현금(성) 결제비율 (직전 1년)	- 1.0점 (현금 결제 비율 100%) - 0.5점 (현금 80% 이상)
전자입찰 비율 (직전 1년)	- 0.5점 (80% 이상)
협약 평가 결과 (직전 1년, 동반성장협약 기준)	- 3점(최우수), 2점(우수), 1점(양호)

- **직전 3년간 법 위반 횟수 3회 이상 & 벌점 4점 초과 : 상습법위반자 발표**
- **직전 3년간 벌점 5점 초과 :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 **직전 3년간 벌점 10점 초과 : 영업정지 요청**

벌 금

① 다음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2배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서면의 사전 발급 및 서류보존 규정에 위반한 자
-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규정에 위반한 자
-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규정에 위반한 자
- 선급금의 지급규정에 위반한 자
- 부당한 수령거부 등의 금지 규정에 위반한 자
- 기성 및 준공검사 규정에 위반한 자
- 부당반품의 금지 규정에 위반한 자
-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 금지 규정에 위반한 자
- 물품구매대금 등의 조기 결제 청구의 금지 규정에 위반한 자
- 하도급대금의 지급 규정에 위반한 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규정에 위반한 자
-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규정에 위반한 자

②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규정에 위반한 자
- 보복조치의 금지 규정에 위반한 자
- 탈법행위의 금지 규정에 위반한 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과징금액 산정 단계

■ 1단계 : 기본 과징금

- 하도급 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 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 기준율(20%~80%, 다만 50% 미만인 부과율을 곱하여 도출된 기본산정 기준이 법위반행위로 인해 심의일 당시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산정 기준으로 함)을 곱하여 산정.
-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판단하되, 위반행위의 유형, 피해 발생의 범위,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 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60% 이상 8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40% 이상 60%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20% 이상 40% 미만

■ 2단계 : 조정 과징금 (행위자요소, 고의 과실 여부, 자진시정 여부 등)

- 1차 조정 : 기본 과징금의 20% 이내에서 가중 (위반행위 횟수, 피해수급사업자의 수)
- 2차 조정 : 위반사업자의 고의 과실 등에 따른 조정
  * 감경 : 위반행위 자진 시정 (10~20%), 조사 협조 (10~20%)
  * 가중 : 보복조치 (20%)

■ 3단계 : 부과 과징금

- 조정 과징금의 50%까지 감액 또는 면제
  (위반행위의 파급효과, 과징금 납부 능력, 시장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 거래단계별 법 위반 유형 및 업무시 유의사항

- 하도급거래는 계약체결, 계약이행, 대금지급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주요 준수의무사항과 금지사항은 아래와 같다.

거래 단계	준수의무사항과 금지사항
계약체결단계	- 서면교부 의무 (서류보존의무 포함) - 부당특약 금지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 계약이행보증 -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
계약이행단계	- 부당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 검사·결과 통지의무 - 부당반품 금지 - 감액금지 - 기술자료 제공 및 유용 금지
대금지급단계	-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 선급금 지급 의무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2.1 계약체결단계시 하도급법상의 규제 내용

2.1.1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의무

(1) 개념

- 서면 교부 의무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 발생시 사실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간 사후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부과된 의무이다.

(2) 서면교부의무의 내용

① 기재사항 : 중요 사항(법정 기재사항 6가지)을 기재한 서면 발급

② 발급시점 : 수급사업자가 위탁업무를 시작하기 전 서면 발급

③ 서류 보존기간 :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 (기술자료 관련 서류는 7년)

■ 법정기재사항

-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목적물의 내용 (수량, 단가 포함)
-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는 시기 및 장소
- 목적물의 검사 방법 및 시기 (역무 위탁은 제외)
-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대상 원재료, 연동조건, 기준지표, 산식 등)**
  *** 2023년 하도급법 개정으로 2023. 10. 4.부터 시행**

■ 발급대상 서면

단계	발급서면의 종류
거래 개시 **(하도급법 제3조)**	- 하도급계약서 (추가·변경계약서 포함) - 하도급계약 확인 서면 → 수급사업자로부터 구두 발주 내용에 대해 확인 요청을 받았을 경우, 인정 또는 부인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 -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거래 과정 **(하도급법 제8~16조)**	-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 검사 결과 통지서 - 감액서면 → 감액시 그 사유와 기준, 물량, 금액, 감액방법 등 기재 - 기술자료 요구서 → 기술자료 요구시 명칭 및 범위, 목적, 비밀유지, 권리귀속 관계, 사용기간, 반환 또는 폐기방법, 대가 등 기재 -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변경 내역(증액 또는 감액) 통지서

(3) 법위반 유형

-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또는 전부 누락된 서면을 교부한 경우 (불완전한 서면 교부)
- 추가 또는 변경된 위탁 수행 내용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의 다툼이 있어, 변경 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위탁 이후에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 등 서면을 지연 교부한 경우
- 하도급거래 당사자의 서명,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교부한 경우
- 실제 하도급거래와 상이한 서면을 교부한 경우

(4) 사전 서면발급의무의 예외 등

- 원사업자는 위탁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해,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
- 원사업자는 해당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 기본계약서를 발급하고, FAX, 이메일 또는 개별계약서 형태로 위탁일, 품명, 수량, 단가, 하도급대금, 납기 등 하도급법상 중요기재사항을 담은 서면을 발급하면 적법한 서면 발급이다.
- 빈번한 거래에서 계약서에 법정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 등으로 누락사항의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적법한 서면 발급이다.
- 2종 이상의 계약서가 존재할 때에는 실제 하도급거래 관계에 입각한 서면을 적법한 것으로 본다.
-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 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한 경우 적법한 서면 발급이다.
- 추가 공사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서면 미발급**이다.
- 시공 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 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의 정산에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서면 미발급**이다. (원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책임이 있음)
- 구체적인 계약서 형태를 갖추지 않았으나 원사업자의 현장관리자가 추가 공사에 대한 금액 산정이 가능한 약식서류 등을 제공한 경우, **불완전한 서면발급**이다.

(5) 서면발급의무 추정제도

- 원사업자의 구두 발주시, 수급사업자는 서면 통지로 위탁 내용(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일시, 원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만일, 원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통지 내용대로 하도급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한다.

(6) 업무상 유의사항

-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이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연장된 계약기간이 명시된 새로운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 업계 표준이나 거래 관행의 특성을 근거로 한 공정위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여 서면에 기재해야 할 항목이나 내용에 대해 표준화를 하여야 한다.
- 발주 서면에 하도급법상 정해진 사항이 기재되어 있거나 보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서면 교부시 미확정 사유에 대한 정당성이 존재하더라도, 그 내용이 정해진 경우 보충서면을 교부한다.
-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없는 불완전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야 한다.

(7) 관련 사례

서면 지연 교부 및 일부 누락 사례 (공정위 2018건하1299)

- D산업은 2015. 10. 7.부터 2017. 12. 27.까지 35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및 건설 위탁 등을 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고 4일 ~ 388일이 지난 후 발급하였다. 또한, 계약서면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중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또는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 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였다.
- **공정위 판단 : 불공정 하도급거래로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위반**

묵시적 계약 연장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8누2554 판결)

- S건설은 2004. 5. 1.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였고, 계약기간이 종료된 2005. 2. 1. 이후에는 이 사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따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 **법원 판단 : 거래기간 종료 후 동일한 내용으로 종전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연장된 계약기간을 명시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다.**

2.1.2 부당한 특약 설정 금지

(1) 개념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할 때 교부하거나 수령한 설계도면, 시방서, 유의서, 현장설명서, 제안요청서, 물량내역서, 계약 및 견적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특약조건, 도급업무내역서, 발주서, 견적서, 계약서, 협약서, 각서 등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정을 통해 설정한 계약조건으로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2) 위법성 판단 기준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체결한 하도급거래의 계약조건이 공정하고 타당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②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어긋나는지 여부

③ 관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④ 목적물 등의 내용 및 특성

⑤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3) 법위반 유형

① 서면에 없는 비용 전가

-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현장설명서 등의 서류에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발생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에 해당된다.

② 민원처리, 산업재해 처리비용 전가

-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③ 입찰내역에 없는 비용 전가

-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부당 특약에 해당된다. 단,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입찰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자료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견적 누락 또는 견적 착오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④ 인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전가

-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허가,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이다.

⑤ 설계나 작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비용 전가

- 원사업자가 설계를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으로 부당특약의 한 유형이다.

⑥ 재작업, 추가 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한 비용 전가

-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재작업, 추가 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이다. 단, 해당 작업이 수급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 여기서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란,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도급계약, 설계도면 등에 기재된 작업 공정, 품질·성능검사 절차 등을 철저히 준수한 경우를 말한다.

⑦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전가

-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이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면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은 3년으로 약정하는 경우 이에 해당한다.

⑧ 위탁 시점에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책임 전가

-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천재지변 또는 전쟁, 화재, 전염병, 폭동, 제3자의 전국적인 노조 파업, 매장문화재 발견,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을 말한다.

⑨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제한

- 수급사업자는 원재료의 가격변동 발생시 원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하거나 원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하도급계약기간 중 이러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

⑩ 법에 규정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는 일부 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받은 경우 원사업자에게 위탁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 보증을 받을 권리, 법위반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할 권리 등이 있는데, 이러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말한다.

⑪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자료·물건 등의 소유·사용 등의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을 말한다. 또한,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도 포함된다.

⑫ 수급사업자의 의무를 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 금액의 비율을 높이거나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 계약이행을 보증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계약책임·불법행위책임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는 약정을 말한다.

⑬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 목적물 등의 검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및 목적물 등의 검사 결과 통지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제기를 제한하는 약정을 말한다. 또한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도 포함된다.

⑭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 계약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 내용을 원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약정
-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조건이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기로 하는 약정
- 원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관계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한 약정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재, 장비, 시설 등이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자재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 계약해제·해지의 사유를 원사업자의 경우 관계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수급사업자의 경우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재 등의 인도지연, 수량 부족, 성능미달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 지체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업무상 유의사항

- 부당한 특약은 수급사업자와 합의가 있어도 내용이 부당하면 처벌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 수급사업자에게 특약을 사전에 송부하여 검토 시간을 충분히 주고, 수급사업자가 특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 원사업자의 사정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운임비용 또는 보관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임비용 또는 보관비용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책임 분담에 관해 편향적인 보상 조항(원사업자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조항)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고객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무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약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

2.1.3 건설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1) 개념

-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보증(계약금액의 10%)을 해야 한다.

(2) 보증금액

- 공사기간 4개월 이하 : 계약금액 – 선급금
- 공사기간 4개월 초과, 기성주기 2개월 이내 : [(계약금액 – 선급금)/공사기간(월수)] x 4
- 공사기간 4개월 초과, 기성주기 2개월 초과:
  [(계약금액–선급금)/공사기간(월수)] x 기성주기(월수) x 2

(3) 보증면제

- 1건 공사금액 1,000만원 이하
- 2개 이상 신용평가 전문기관의 회사채 평가 A0 이상
-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 직접 지급 합의한 경우

* 공동이행방식(공동도급)의 공동 도급사업자는 지분 비율에 의해 보증금액이 결정되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는 수급사업자와의 합의로 면제되지 않음

2.1.4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1) 판단 기준

-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① '부당하게'라 함은 하도급대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하도급의 내용, 수단 및 방법, 절차 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 공정하고 타당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②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 은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늦은 수준인지 여부이다. 단,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는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이 되며, 신규 개발품의 경우는 해당 목적물 등의 제조원가 + 해당 원사업자가 거래 중에 있는 같거나 유사한 업종에 속하는 수급사업자들의 전년도 평균 영업이익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대가를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로 본다.

(2) 법위반 유형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 인하

-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단가 인하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② 협조 요청 등을 통한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금액 할당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협조 등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하여 그 금액만큼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사업자를 차별 취급

- 정당한 사유 유무는, 수급사업자별 경영상황, 생산능력, 작업의 난이도, 거래 규모, 거래의존도, 납기, 대금지급조건 등의 거래조건, 거래기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존부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차별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④ 거래 조건의 착오를 일으키는 등의 방법

-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다.
- 원사업자가 협상 과정에서 종전 계약보다 발주량이 늘어날 것처럼 수급사업자에게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⑤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및 이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의사표시의 자율성을 제약받지 아니한 상태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단가 결정에 객관적이고 타당한 산출 근거가 없다면, 합의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⑥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

-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이다. 여기서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금액에는 재료비, 직접 노무비, 경비(재료비 및 노무비 이외의 제조원가 요소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미를 말함. 다만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 및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법정 경비는 제외) 등이 포함된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사 현장의 여건,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⑦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

- 최저가 낙찰금액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협상을 할 경우, 법위반이 되지 않으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 최저 입찰금액이 원사업자의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재입찰한다는 점을 사전에 공지하여 입찰참여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주어야 한다. 이 때 입찰 예정가격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 낙찰자를 선정한 후 일방적으로 낙찰자를 변경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⑧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 계속적 거래계약 기간 중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는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게 된 사정이 원사업자나 외부 환경의 변화 등 (예를 들면 경영 적자, 임금 인상이나 노조 파업, 판매부진, 경쟁 심화에 따른 판매가격 인하, 글로벌 가격 경쟁 심화나 환율 변동 등)에 있고, 수급사업자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3) 업무상 유의사항

-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거래규모, 경영상황, 작업 난이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출된 근거에 따라 단가를 조정해야 한다.
- 경쟁입찰로 계약의 당사자를 선정할 경우 최저 입찰가가 예정가를 초과하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다면, 최저가 낙찰자와 추가 협상을 통해 금액을 더 낮은 금액으로 결정할 경우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한다.
- 예정가격 자체를 미리 공개할 필요는 없으나, 예정가격이 사전에 정하여져 있음을 회사 내부 자료 및 기안문서로 남기거나 공증을 받아야 추후 분쟁 소지를 방지할 수 있다.
- 예정가격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사업자가 진다.
-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 협의한 문건은 보관하여야 한다.
- 경영상의 위기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동안 낮은 단가 설정을 요구한 경우, 기간 종료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낮은 단가를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거나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 어떠한 명목으로든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4) 관련 사례

직접공사비 항목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례 (공정위 2013전사0590)

- K건설은 신고인으로부터만 견적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2012. 10. 5. 신고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한바, 도급내역서상 직접공사비 항목을 합한 금액보다 9,6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 결정

- **공정위 판단 : 신고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특허공법을 보유하는 등 기술력이 우월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바, 직접공사비 합계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6호 위반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례 (공정위 2012제하1077)

- H사는 13개 품목의 제조부품을 위탁하기 위하여 8개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심의입찰을 실시하였고, 최고 점수 또는 차순위 업체를 선정하면서 최저 입찰가보다 0.6~10% 낮게 낙찰가를 결정

- **공정위 판단 :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그 대가가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지 여부를 별도로 따질 필요 없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한다.**

2.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2.2.1 부당한 위탁(발주)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1) 유형

① 부당한 위탁취소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제조 등의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위탁을 할 때 정한 발주량 또는 사양 등 위탁한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여기서 위탁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아래 세 가지 유형을 포함한다.

  ***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른 서면에 기재된 위탁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당초 위탁 내용과 다른 작업을 시키는 경우**

  *** 목적물 등의 수령 후 추가적으로 재작업을 시키는 경우**

- 위탁 취소시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위탁 취소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고 위탁을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다.
- 위탁 취소에 대한 합의서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합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토하여 진정성이 없는 경우 부당한 위탁 취소가 될 수 있다.

② 부당한 수령거부

- '수령'이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것으로, 검사의 유무와 관계없이 수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목적물을 이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검사를 시작하는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
- 부당한 수령거부의 판단 기준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시 정한 납기 및 장소에서 목적물 수령을 거부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위탁 약 체결 및 수령거부의 경위, 위탁계약의 내용, 수령거부한 목적물 등의 범위, 계약이행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아래 사유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

  *** 수급사업자가 직접 조달한 원재료의 품질 불량으로 하자가 있는 목적물 납품**

  *** 수급사업자가 생산 또는 운송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훼손된 목적물 납품**

(2) 업무상 유의사항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거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3배)의 대상이 된다.
- 발주 취소를 할 경우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충분히 남겨두어야 한다.
-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위탁 취소와 관련된 협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위탁 취소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 발주 취소 사유가 사전에 서면의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고지되어야 한다.
- 발주 취소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투입한 비용이 있다면 정산하고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작업을 중단하였으나, 작업 중단 전에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작업을 대신하도록 하였고 작업 중단에 대해 원사업자가 시정 요구 및 이의제기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
- 원사업자가 제공한 사급자재의 공급이 지연된 경우, 수급사업자의 납기 미준수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

(3) 관련 사례

발주자와의 용역계약 해제를 이유로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한 사례 (공정위 2014서제3288)

- C운송사는 2014. 4. 4. 수급사업자와 500톤 크레인을 브라질 조선소까지 해상운송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발주자와의 용역 계약 해제를 이유로 2014. 6. 13. 수급사업자와의 계약 취소

- **공정위 판단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와의 계약 해제를 이유로 용역 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경우이므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 위반이다.**
  → 부당 취소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되어,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 청구 근거가 됨

일방적 계약 해지 사례 (공정위 2012광사2395)

- (유)H건설은 공군에서 발주한 태풍피해공사 중 시설물 유지관리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보완 대책 미제출, 공사 준비 미흡, 공사 관련 업체에 외상대금 미지급으로 자재 설비 공급 거부, 공사 부진으로 준공기한 내 준공 불가능 등 사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함

- **공정위 판단 : 사실 확인 결과, 공사 지연은 발주자의 착공 연기 요청 및 원사업자의 선행공사 지연, 기상 악화 등에 기인한 것이므로,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 부당한 위탁 취소에 해당함.**

2.2.2 부당반품의 금지

(1) 개념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에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에 상관없이 수령한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반품의 예외 사유

- 수급사업자의 책임에 따른 반품은 가능하다.
- 발주한 목적물과 다른 물품 등이 납품된 경우
- 오손·훼손 등 하지 있는 물품이 납품된 경우 등

(3) 법위반 유형

① 불명확한 검사 기준에 의한 반품

- 검사 기준 및 방법을 정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상황에서, 원사업자가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검사 기준을 적용하거나 일방적으로 검사 기준을 적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공정하지 않은 검사 기준 및 방법을 사용하여 목적물 등을 불합격 판정하고 반품하는 경우 부당 반품이다.

②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 수급사업자가 위탁 내용대로 납품한 목적물에 대해, 원사업자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반품하는 것을 말한다.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발주 중단 또는 클레임**

*** 원사업자의 생산 계획 변경, 사양 변경, 모델 단종, 판매부진, 재고증가, 보관 장소 부족**

*** 소비 위축, 경제상황 변동 등**

③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 불량

- 검사 결과 목적물 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된 이유가 수급사업자의 책임보다는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 등 원재료의 품질 불량 때문인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반품하는 행위는 부당 반품에 해당된다.

④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

- 원사업자가 공급하기로 한 원자재 등을 지연 공급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납기 내 납품이 곤란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반품하는 것은 부당한 반품이다.

⑤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는 부당 반품에 해당된다.

⑥ 납기 지연을 용인한 객관적 사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납기 지연을 용인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었음에도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납기 지연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행위는 부당 반품이다.

⑦ 하자 책임 소재 불분명

-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반품할 경우, 부당 반품에 해당된다

(4) 업무상 유의사항

-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의 납품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반품해서는 안 되며,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3배)의 대상이 된다.
- 발주 착오로 인한 반품, 원사업자의 운송이나 보관상의 실수로 인한 하자를 이유로 한 반품, 가공이나 조립단계에서 발생한 손해를 이유로 반품하는 경우 등은 부당한 반품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 반품 사유를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전에 설정하여야 한다.
- 클레임 약정서는 사전에 교부되어야 한다.
- 사전에 약정된 계약 규정대로 반품을 하되, 반드시 검사 결과를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
- 검사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반품해서는 안 된다.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당사가 공급한 자재 등의 품질 불량 또는 공급 지연 등을 이유로 반품해서는 안 된다.
-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해서는 안 된다.
- 수급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해서는 안 된다.
- 수급사업자의 납기 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 공정지연을 이유로 반품해서는 안 된다.

(5) 관련 사례

과다 발주를 이유로 반품한 사례 (공정위 2009하개1116)

- A사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사출물을 두 차례 납품받은 후, 납품받은 날로부터 2~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발주하였다는 이유로 반품하였음. 직원 실수로 인한 과잉 발주가 인정되며, 검사 결과도 통보한 적이 없음

- **공정위 판단 :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부당 반품이며, 반품하고 감액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상당액을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시정명령 부과**

발주자의 가공 과정에서 불량 발생을 이유로 반품한 사례 (심결례 미발간)

- S사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정상적으로 유압기 부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9월부터 2013년 12월 기간 중 발주자의 가공 과정에서 불량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400만원 상당의 유압기 부품을 반품

- **공정위 판단 :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품한 행위호서 하도급법 제10조 제1항 위반이다.**

2.2.3 검사 및 검사 결과 통보 의무

(1) 원칙

① 검사 기준의 결정 방법

- 검사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일방적으로 결정될 경우, 목적물 완성 및 납품 여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하도급법에서는 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당사가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객관적 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사자 협의하에 제3의 공인기관 등에 의하여 검사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 검사 기준 및 방법은 객관적이고 공정 타당하여야 한다. 다만, 객관성 공정성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② 검사결과의 통지의무

- 통지기간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
- 예외 : 10일 이내 검사 곤란한 경우(물품 과다), 검사기간 연장에 명백한 합의 있는 경우
- 통지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 :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 없는 경우, 검사 합격 간주

③ 검사비용 : 원칙적으로 원사업자 부담

(2) 법위반 유형 (검사의무와 관련된 하도급법 위반 리스크)

- 검사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부당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 목적물 수령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서면 미발급)
- 검사 기준이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위탁 취소, 수령거부, 반품, 대금감액, 대금미지급 등을 하는 경우

(3) 업무상 유의사항

-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않는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검사 기준 및 방법을 객관화시켜야 한다.
- 검사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수급사업자와 명백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연장과 관련한 정당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 검사 결과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 법정 검사기일(10일)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검사에 불합격하였다는 이유로 반품하거나 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
- 검사 결과 통보는 서면 통지가 원칙이며, 구두 통지는 법위반이다.

(4) 관련 사례

검사 결과 미통지 후 하자를 이유로 대금 미지급한 사례 (공정위 2014서제2223)

- N사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다운점퍼를 수령한 후 대리점 판매 과정에서 오리털 빠짐 현상으로 인해 소비자로부터 반품 및 클레임이 제기되자, 이후 검사 기관에 다운점퍼에 대해 깃솜털 투과성 검사를 의뢰한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 수급사업자에게 A/S를 요구하였으나 수급사업자가 거부하여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였다.

- **공정위 판단 : 다운점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물품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물품은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된다. N사가 목적물 수령 후 1개월 경과 시점에 물품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 N사가 주장하는 물품의 하자는 별도의 민사 절차로 다투어야 할 부분이며, 이를 이유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2.4 하도급대금 감액행위 금지

(1) 원칙

-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발주시에 결정한 하도급대금을 발주 후에 감액하는 것은 금지된다. 감액의 명목과 방법, 금액의 다과에 상관없이 일체의 감액행위가 금지된다.

(2) 감액의 정당성 판단 기준

- 하도급대금 감액의 정당성 여부는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감액의 경위, 계약이행 내용, 목적물의 특성과 시장 상황, 감액된 하도급대금의 정도, 감액방법과 수단,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 감액의 정당성은 원사업자가 입증해야 하며, 감액의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판단된다.

(3) 법위반 유형

① 소급단가 적용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단가 인하에 합의하였는데, 합의일 이전에 위탁한 목적물에 대해 인하된 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대금감액이다.

② 원사업자의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의 발주 취소

-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 감액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해서는 안 된다.

③ 현금지급이나 조기 지급을 이유로 한 감액

-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④ 원사업자의 손해방생에 영향이 없는 수급사업자의 과오

- A사는 B사에게 조립용 부품을 제조 위탁하였다. 이후 B사는 A사의 검사에서 합격된 조립용 부품을 A사의 보관 창고로 운송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포장지의 일부가 훼손된 경우에도, 원사업자의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이 없다면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

⑤ 원사업자로부터 위탁 수행에 필요한 물품 구입

-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원사업자로부터 구매 또는 사용하게 하면서 적정 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⑥ 납품 시점에 떨어진 물가나 자재 가격

-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 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부당 감액이다.

⑦ 경영 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 경영 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는 부당감액으로 본다.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는 원사업자의 경영 실책이나 가격경쟁력 상실 등 자신의 귀책사유에 따른 손실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과 같이 감액 이유 및 방법이 타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⑧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

- 관계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경비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도 부당감액에 해당된다.

(4) 업무상 유의사항

-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미리 교부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때 발급하는 서면에는 아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감액 사유와 기준**
*** 감액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 감액 금액**
*** 공제 등 감액 방법**
***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사항 등**

- 감액시 공정위가 정한 표준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 견적시 수량 없이 단가만 확정한 후, 발주시 소량 발주하는 경우는 발주 이후에 단가를 인하한 것이므로 하도급대금의 감액으로 본다.
- 감액 합의는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여야 한다.
- 감액 약정이 수급사업자의 자발적인 동의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수급사의 거래의존도, 거래관계의 지속성, 거래의 특성과 시장상황, 거래상대방의 변경가능성, 당초의 대금과 감액된 대금의 차이, 수급사업자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한 시기와 원사업자가 대금 감액을 요구한 시기와의 시간적 간격, 대금 감액의 경위, 대금 감액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상관습 및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5) 관련 사례

일률적 단가 인하 및 감액 사례 (공정위 2014부사0457)

- P사는 2012년 4월경 부산 소재 사업장에서 발주자의 단가 인하 요구, 제조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선박블록을 제조하는 5개 수급사업자에게, 5개 수급사업자의 작업 내용, 거래 규모, 기존 작업 단가 등에서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씩 동일한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였다.

- **공정위 판단 : P사는 발주자의 단가 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였으므로, 부당 감액한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고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일방적 위탁 취소 및 대금 감액 사례 (공정위 2015부사1907)

- J사는 2012. 1월부터 2013. 6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①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② 생산성이 낮은 자신의 생산라인 운영 요청에 대하여 수급사업자가 이를 거절하자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였으며, ③ 자신의 납품처 위치 변경에 따른 물류비 증가분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분합하게 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650만원을 감액하였다.

- **공정위 판단 : 중소기업청장은 본 사안을 심각하게 판단하고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였으며, 공정위는 고발 요청을 수용함.**
  → J사의 부당한 위탁 취소 및 감액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약 2억원의 피해를 입었고, J사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거래의존도가 100%인 상황에서 위탁 취소로 인하여 경영난을 겪고 폐업한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

2.2.5 기술자료제공요구 및 유용행위 금지

(1) 기술자료의 개념

- 기술자료란 수급사업자의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자료를 말한다.

  *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

  *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 생산,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 기타 사업자의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 생산,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2) 기술자료제공 요구

- 기술자료 제공 요구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의 제출, 제시, 개시, 물리적 접근 허용(전자파일 접속, 열람 허용), 기술지도, 품질관리 등 그 방법을 불문하고 기술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 정당한 사유로 인해 기술자료가 제공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2021년 조항 신설)

  1)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2)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3)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4)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의무
  5)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6) 제4호 또는 제5호의 위반에 따른 배상
  7) 기술자료의 반환·폐기 방법 및 일자

(3) 기술자료 유용행위

- 기술자료의 유용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그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를 벗어나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원사업자가 '취득'한 기술자료 뿐만 아니라 '열람' 등을 통해 파악한 기술자료를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도 규제 대상이 된다.
-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유용한 행위도 규제 대상이 된다.
- 기술자료 공개 요구시 사전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제시된 기술자료의 사용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면, 위법한 유용행위이다.
-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기술자료 사용의 부당성 여부**
***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서면 협의를 거쳤음에도 그 합의를 벗어나 사용하였는지 여부**
***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으로 수급사업자의 사업 활동이 곤란하게 되었는지 여부**
***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나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나 수단 등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4) 손해배상책임

-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출을 사전에 서면 동의 없이 강제로 요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배상해야 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정당한 대가 지급 없이 유용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 다만, 기술요구 또는 유용의 경우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5) 법위반 유형

① 기술자료제공 강요행위

-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비밀유지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거나, 원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정당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법 제12조의 3 제2항에 따른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제안서 등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재료 가격, 납품단가 구성내역 원가 등이 포함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술지도, 품질관리를 명목으로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들과 재계약시 기술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여 기술자료 제공을 유도하는 경우

② 취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기술이전계약(기술사용계약 등 포함)을 체결하고 기술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필요한 기술을 취득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 종료 후 위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하여 그 기술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제품을 상용화하거나 무단으로 다른 기업에 기술을 공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 관련 기술자료를 넘겨받아 다른 경쟁사업자에게 제공하여 가격 경쟁을 유도한 후 그 수급사업자에게 납품 가격의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하면서 수급사업자의 핵심 기술을 탈취한 후 공동개발을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출원을 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선출원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 등을 선점하는 경우

(6) 업무상 유의사항

-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발급하는 서면에는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방법, 기술자료의 권리귀속관계, 대가 및 대가 지급방법,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 방법, 요구 대상, 사용기간, 반환 또는 폐기 방법, 기타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 기술자료 제공 요구 서면과 별개로, 하도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비밀유지계약'도 수급사업자와 체결해야 한다.
- 비밀유지계약에는 1)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2)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3)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3)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의무, 5)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6) 의무위반에 따른 배상, 7) 기술자료의 반환·폐기 방법 및 일자가 명시되어야 한다.

(7) 관련 사례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 미발급 사례 (공정위 2019기감1114)

- L사는 2015. 6. 9.부터 2018. 12. 14.까지 오븐 및 냉장고 관련 부품을 공급하는 5개 수급사업자에게 승인원, 도면, 품질 관련 자료 등 16건의 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에서 규정한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미리 협의하여 정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음

- **공정위 판단 : L사가 요구한 자료들은 비밀관리성이 인정되고 내용상으로도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L사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는 자신이 위탁한 제조물의 사양, 성능 등에 대한 준수를 검수할 수 있고, 하자 발생시 책임 소재 판단의 기준이 되며, 다른 부품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는 인정된다. 다만, 기술자료 요구시 하도급법에서 정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으므로 하도급법 위반이다.**

- **조치 : 시정명령 및 과징금 4,400만원 부과**
  → 기술자료 요구가 정당하더라도, 서면 미발급만으로 과징금 부과될 수 있음에 주의

제작도면 제3자 제공 사례 (공정위 2018제하0053)

- H사는 하네스 제조업체인 A사에게 하네스의 납품가능성을 타진하고자 2016. 1. 6.부터 2016. 1. 22. 까지 총 3차례 회의를 가지면서 기존 수급사업자들의 하네스 제작 도면을 A사에게 제공하였다. 그러나 A사의 견적 가격이 기존 수급사업자들보다 높아서 A사와의 거래는 결렬되었다.

- **공정위 판단 : H사는 기술자료를 그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범위를 벗어나 수급사업자의 경쟁사업자에게 제공하였고, 이는 납품단가 인하 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자신의 이익을 위한 유용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를 함에 있어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어긋나고 법 위반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므로 고발 조치함.**

금형 상세도면 요구 사례 (공정위 2013제하3664)

- L사는 2003년부터 수급사업자와 거래하면서 대부분 자신이 설계한 금형 설계 도면을 제공하면서 금형 제작을 위탁하여 납품받았으나, 15개 금형의 제작을 위탁할 때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품 도면만을 제공하고 금형은 수급사업자에게 스스로 설계하여 제작하도록 한 후, 금형 수정 보완 및 유지 보수 등을 이유로 관련 상세 도면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 **공정위 판단 : L사는 시험생산 과정에서 금형을 수정 보완하거나 하자 발생시 유지 보수를 위해서는 설계도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L사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설계 도면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비밀 유지 관련 사항 등을 협의하지 않고,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하도급법 제12조의 2 제2항 위반이다.**

라벨 제조 관련 기술자료 유용 사례 (공정위 2013서제3358)

- C사는 2013년 3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수급사업자로부터 배터리 라벨 제조 관련 기술자료를 취득하여 자신의 해외 자회사에 라벨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라벨을 제조하는 데 활용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하였다.

- **공정위 판단 : C사는 2013년 3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기간 중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여 취득한 라벨 제조 관련 기술자료를 사용하였음에도 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취득한 라벨 제조 관련 기술자료를 활용하여 자회사로 하여금 라벨을 생산하도록 함에 따라 자회사와 거래하던 수급사업자는 거래가 중단되어 사실상 폐업 상태에 이르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C사를 검찰에 고발 조치함.**

2.2.6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전속거래 강요 및 경영정보 요구 금지)

(1) 개념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18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본다.
  *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 전속거래 강요 행위 금지
  *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2)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금지

- 경영상의 정보 유형
  *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납품을 위해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 (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원가명세서, 원가산출내역, 재료비, 노무비 등 세부지급 내역)
  *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매출 관련 정보 (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등)
  * 수급사업자의 경영전략 관련 정보(제품 개발• 생산 계획, 판매 계획, 신규투자 계획 등에 관한 정보 등)
  * 수급사업자의 영업 관련 정보(거래처 명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납품조건에 관한 정보 등)
  *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3) 업무상 유의사항

-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인상협의시 하도급대금의 인상폭 결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원재료의 원가 비중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 입찰시 발주처에서 수급사업자의 원가 정보를 필수 제출자료로 지정하여 원가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 계약의 특성상 실비를 정산하는 것이 적절한 항목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항목의 실비 정산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 다른 법령에 의해 원사업자에게 부여된 수급사업자 관리 및 감독 의무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 원사업자가 상생협력과 공정거래협약 이행을 위해 하도급업체에 경영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 산재보험료 산출을 위해 임금대장 등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고, 협약 체결에 따른 실적 확인을 위해 수급사업자와의 협약 체결 내역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인건비, 복리후생비, 금융비용 등을 지원하고 그 범위 안에서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게 지원하도록 요청하고, 지급내역을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 수급사업자의 효율성 증진,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수급사업자가 컨설팅 받고자 하는 경영전략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업교육 채용박람회 실시 및 채용연계 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채용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 주의

- 협력사에 대해 거래단절, 물량 축소 등 불이익을 제공할 것을 거래 조건으로 내걸면서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자신의 특허로 개발한 부품이 아닌 일반 부품의 제조를 협력사에 위탁하면서, 해당 부품을 자신에게만 납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수급사업자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수급사업자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원가내역 ,생산과정, 투입인력, 재료배합 등을 실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관련 사례

재하도급 거래 관련 부당한 경영간섭 사례 (공정위 2008하개2356)

- W사는 21개 1 차 수급사업자에게 공기청정기, 비데 등의 부품 제조를 위탁함에 있어, 이들 수급사업자들의 2차 수급사업자와 직접 재하도급 단가를 결정한 후 동 단가대로 거래하도록 함으로써 1차 수급사업자들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하였다.

- **공정위 판단 :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재하도급 거래시 단가, 물량 등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음에도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 단가결정에 직접개입하였다. 이는 하도급 납품단가 결정이 경영의 본질적인 사항임을 감안할 때 1차 수급사업자의 2차 수급사업자에 대한 자율적인 납품가격 결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써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로 인정되며, 피심인이 제품의 품질유지, 기술 및 자금지원 등의 이유로 1 차 수급사업자와 2차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거래 조건에 개입하는 행위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부당한 경영간섭 사례 (대법원 2010두8522 판결)

- A사는 전자가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승인원(Specification Sheet)을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그 승인원에는 회로도, 부품의 종류와 구체적 기능, 동작 원리뿐 아니라 원자재 구매처 및 제조공정 등 구체적인 조립방법까지 기재토록 하였다. 그리고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2차 벤더 관리담당 인력을 선정하게 하고 위 인력의 주요 역할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또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2차 벤더 관리 전담 인력을 선정하여 운용하도록 하며 위 인력으로 하여금 2차 벤더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 **대법원 판단 : 품질 유지 목적을 벗어나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 거래 내용을 간섭한 행위로 보아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로 판단함.**

2.3 대금지급단계의 하도급법상 규제 내용

2.3.1 하도급 대금지급 의무

(1) 개념

① 원칙

- 하도급대금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 원칙적으로, 제조위탁의 경우 목적물 수령일이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산정시 기준일이 된다. 여기서의 목적물 수령일이라 함은 이동이 가능한 물건의 경우 원사업자에게 납품한 날(사실상 원사업자의 지배에 두게 된 날)을 의미하고, 이동이 불가능한 물건의 경우에는 검사를 개시한 날을 의미한다.

② 유형별 기산점

- 일괄 마감제도를 채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일로 본다. 즉, 목적물의 납품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업무의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그 정한 날을 목적물 수령일로 본다.
- 추가공사 및 공사중단, 계약해지 등으로 정산이 되지 않아 하도급대금을 확정하기 못한 경우의 목적물 인수일은 정산 시점에 불구하고 추가공사의 완료일, 공사중단일, 계약해지일 등을 목적물 인수일로 본다.

③ 15일 이내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대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기간의 계산

-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기간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거래일에 기간이 만료하는 것으로 본다.

(3) 지연이자 지급의무

-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연이자(연 15.5%)를 지급해야 한다.

(4) 어음할인료 지급의무

-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연 7.5%)를 수급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 지급의무

- 어음대체 결제수단은 하도급대금 지급시 어음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결제 수단으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을 말한다. 특히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상환기일까지 해당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수수료율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과 사전에 체결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6)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

-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의 지급 수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다. 따라서 하도급대금은 현금 외에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7) 법위반 유형

-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까지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결제되는 장기 어음으로 지급함에 따라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하는 경우
- 발주자로부터 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도록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8) 업무상 유의사항

- 하자 이행을 목적으로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지급 유보하는 것은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에 해당한다.
- 수급사업자의 대금 청구 지연을 이유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9) 관련 사례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사례

- D사는 '충주댐 치수능력 증대 건설공사' 관련 4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물문화관 설비공사 ' 등 5건의 건설 위탁을 한 후 2017. 12. 12. 목적물 등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493백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D사는 2015. 6. 16.부터 2018. 5. 31.까지 245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상환기일이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0일 초과일부터 상환기일까지의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790백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공정위 판단 :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제7항 위반으로서 위법하다.**

본 계약의 미완성을 이유로 추가개발 용역대금을 미지급한 사례 (공정위 2013서제2966)

- H사는 2건의 추가개발 용역에 대한 하도급대금 미지급 건과 관련하여, '추가개발 용역은 본 계약인 시스템 구축 용역과 연계된 것으로서 수급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용역수행을 중단하여 본 계약 용역이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와 연계된 추가개발 용역 건도 용역 수행을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 **공정위 판단 : ① 추가개발 용역 건은 발주사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H사는 발주자로부터 추가계약에 따른 계약금액 50백만원을 수령하였고, ② H사는 추가개발 용역 건을 위탁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며, ③ 본 계약 구축 용역과는 별건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완성물에 양측 담당자 협의를 통해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이 있다. 또한, ④ 본 계약 용역 개발일정 및 진척관리도를 보면 2012. 5. 1. 개발을 시작하여 2012. 5. 24.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기재되었으며, 검사기록 내역에서 용역 완료 여부란에 'Y'라고 기재된 등을 고려하면, H사는 용역 위탁 건에 대해 목적물을 수령하고 검사까지 마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계약 시스템 구축 용역의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민원보상비와 지체상금이 하도급대금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대금을 미지급한 사례

- A사는 건설 공사 일부를 B사에게 위탁하였고 목적물을 인수하였으나, B사의 부실시공으로 인근 가옥에 균열이 생기는 등 민원이 발생하여 보상비가 들었고, 공사중지명령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보상비와 지체상금 합계가 하도급대금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대금을 미지급함.

- **대법원 판단 : 공정위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하도급법 위반으로 보고 제재하면 충분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만한 미사적인 권리가 있는지 여부까지 판단할 필요는 없다(A사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임). (대법원 94누10320)**

2.3.2 선급금 지급의무

(1) 개념

- 하도급대금은 물품 등의 납품 또는 시공을 완료한 다음 그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것을 기성금이라고 한다. 경우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 착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 중 일부를 미리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하도급법상 선급금이라고 한다.

(2) 선급금 지급기간 =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만약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지급 방법 (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산정)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액에 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4) 준수의무

- 선급금은 선지급한 하도급대금의 일부이므로,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지급시 하도급법에서 정한 어음만기일 유지의무나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 지연 지급시 지연이자 지금의무 등이 존재한다.

① 현금결제비율 유지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 어음만기일 유지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도 교부받은 어음의 만기일을 초과하지 않는 어음을 지급해야 한다.

③ 지연이자 지급의무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지 15일이 지난 이후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연15.5%)를 지급해야 한다.

(5) 법위반 유형

-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경우
- 선급금을 법정 지급기일 내에 어음으로 지급하고 어음만기일이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하였으나, 이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경우
-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실제 지급한 날가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경우

(6) 업무상 유의사항

- 발주자가 선급금의 사용 용도, 지급대상 품목 등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지급한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용도에 한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면 된다.
- 발주자가 선급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전체 대금 중 하도급대금 계약금액의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원사업자의 선급금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 계약서상 선급금 지급에 대한 규정에 없어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지급보정서를 지연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지연일수만큼 선급금 지연 지급이 가능하다.
- 선급금 지급시 어음만기일 유지의무나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하도급법상 선급금은 장차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기성률에 맞추어 공제해야 한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고 다음 기성에서 선급금 전체를 일괄적으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관련 사례

계약 규정을 이유로 선급금을 미지급한 사례 (공정위 2015부사2592)
• K사는 2013년 1월 '3차 화학용품 및 암모니아 열교환기 제관 제작'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였다. K사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선급금 없음'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법정 지급기일인 15일이 경과하도록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공정위 판단 :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선급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3.3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1) 조정절차

① 조정내역 통지

- 원사업자는 설계변경 등에 의해 하도급대금이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 해당 하도급대금 조정내역을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별도로 통지할 필요가 없다.

② 변경계약 체결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과 관련된 변경계약을 해야 한다.

③ 조정금액 지급

- 원사업자가 추가금액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수수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2) 조정 기준

① 분명한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

- 설계변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 불분명한 추가금액의 내용

-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평균 비율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③ 총액지급 방식

- 총액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평균 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면 된다.
- 언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 각각에 해당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증액시켜주는 경우에는 적법하나, 수급사업자 각각에 해당하는 비율 미만으로 증액시켜주는 경우에는 위법하다.

(3) 조정 방법

- 총액조정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발주자가 품목별 조정방법을 택한 경우 해당 공종별로 발주자로부터 인정받은 내용과 비율로 조정해야 한다.

(4) 법위반 유형

- 발주자로부터 물가 변동으로 추가금액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와 약정이나 국가계약법(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않고 물가변동률이 5% 미만이면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이유로 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하다.
- 설계변경 등에 의해 도급대금이 증액 도는 감액된 경우,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동 또는 물가연동 금액을 수령하고도 이를 미지급하거나 또는 받은 비율이나 내용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는 법위반이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물가연동 금액을 조정받고도 30일을 초과한 날까지 조정하지 않거나 30일을 초과하여 지연 조정하는 경우는 법위반이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금액 또는 물가연동 금액을 수령하고도 15일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거나 15일을 초과하여 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것으로서 법위반에 해당한다

(5) 업무상 유의사항

- 설계변경 등에 의해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하고, 30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이 이루어져야 한다.
- 설계변경 또는 물가 연동으로 증액 또는 감액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조정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협의를 완료하고 조정 절차를 마무리하여야 한다.
- 협의 절차가 지연되어 30일이 초과되어 합의가 된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는 일수만큼 지연이자 또는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설계변경 또는 물가 연동에 따른 조정을 특약으로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6) 관련 사례

발주자로부터 증액을 받고도,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은 사례 (공정위 2012건하2320)
• S사는 공사 건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물가 변동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기한인 30일을 59일 내지 437일을 초과할 대까지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았다. • **공정위 판단 : 하도급법 제16조 제3항 위반. 시정명령 부과.**

2.3.4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금지

(1) 개념

-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계약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아래 행위는 금지된다.

① 해당 목적물 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전에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② 자기가 구입,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 사전에 물품구매대금 등의 결제를 사전에 요청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음을 원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업무상 유의사항

- 계속적인 하도급거래에 있어 원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한 경우, 실제 투입한 물량에 대한 가액 이상으로 차감하지 말아야 한다.
- 자신의 장비를 사용하도록 함에 있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대가를 과다하게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2.3.5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 금지

(1) 개념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업무상 유의사항

- 원사업자의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면 안 된다.
- 하도급거래 개시 또는 물량 확대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2.3.6 보복조치 금지

(1) 개념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 아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 정지,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하도급법 제19조)

①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②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③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업무상 유의사항

- 법위반 사실을 관계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정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포기각서 제출을 강요한 후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관련 사례

지급한 어음할인료를 회수하거나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사례 (공정위 2016제하0961)
• H사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였던 어음할인료 27백만원을 3회에 걸쳐 H사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회수하였다. • **공정위 판단 : 피심인이 위원회가 실시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미지급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한 후 그 시정 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하여 경미한 경고 조치를 받았으나, 그 후 동일한 금액을 수급사업자로부터 다시 회수한 행위는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위법하다.**

2.3.7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1) 수급사업자의 조정 신청

- 수급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거나,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의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공급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제조, 수리, 시공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 공급원가 외의 비용은 재료비, 노무비분만 아니라, 관리비 등이 추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고,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추가금액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수급사업자는 별도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2) 원사업자의 협의 개시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 구체적인 조정 대금은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3)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조정신청일부터 10일 경과 후에도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 조정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 (Fast Track) 협의 개시 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써 ① 협의 중단 의사를 밝힌 경우, ② 조정금액이 상호간 2배 이상 차이나는 경우, ③ 합의 지연시 영업활동의 심각한 곤란 등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

(4) 업무상 유의사항

- 원재료 등의 가격 변동 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요건, 방법, 절차를 사전에 하도급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 요청이 있으면,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 협의 개시 통보 후에는 회의 개최, 의견 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시장 조사, 원가 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수급사업자가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해서 제시하여서는 안 된다.

2.3.8.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2023. 10. 4. 시행)

(1)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100분의 10 이내에서 협의한 비율 이상) 변동하면**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 대로 그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주요 원재료** :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2) 하도급대금 연동 적용 대상 거래 : 하도급거래

- 연동제는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건설/용역 등을 위탁하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수행하여 납품/인도하는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에만 적용**된다.

(3)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의 절차

①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의 작성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연동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경우, 연동 대상 하도급거래에 대한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에 부수하여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작성

② 변동률 확인 및 납품대금 산출·조정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연동계약서에서 정한 연동일마다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그 변동률이 연동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에 따라 납품단가(또는 하도급대금)을 조정

③ 납품단가 변동표 작성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이 연동된 경우 '납품단가 변도표'에 반영시점, 원재료 기준가격 및 조정된 납품단가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④ 조정된 하도급대금의 지급

- 연동을 통해 납품단가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반영시점 이후에 납품되는 목적물 등에 대하여는 조정된 납품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후 대금지급일에 해당 단가를 적용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⑤ 서류의 비치

(4)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별첨] 작성 예시

【첨부 1】

하도급대금 연동계약표(별첨)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계약에 관한 하도급대금 연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기재사항
1. 목적물등의 명칭	
2. 대상 원재료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4. 연동요건	
5. 연동요건 판단의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비교시점:
6. 연동주기	
7. 연동일	
8. 반영시점	
9.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	
10. 기타사항	

(4)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별첨] 작성 예시

【첨부 2】

납품단가 변동표

◇ 대상 하도급계약 : (명칭) (체결 일자)

◇ 연동계약 체결 시 목적물등의 납품단가* :

◇ 연동계약 체결 시 대상 원재료 기준가격 :

반영시점	원재료 기준가격	조정된 납품단가*	원사업자 확인	수급사업자 확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1. 공동행위(담합)의 개요

1.1 개념

- 2 이상의 사업자간 계약, 협정 결의 등의 방법으로 상품 도는 용역의 가격, 거래조건, 거래량, 거래상대방 도는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이다.

1.2. 규제 현황

- 담합은 '공모'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가장 심하며, 가장 큰 피해를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유발하므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주요 법위반 행위로 규제하고 있다.

1.3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요건

1.3.1 사업자간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의 존재

-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이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인 합의까지도 포함된다.
-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가 없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해 합의한 경우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법원은 합의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 합의가 존재하는 이상 그 합의내용에 다른 실행행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된다.

1.3.2 경쟁제한성

-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이 과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사업자간 합의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가 금지의 대상이 된다.
- 가격담합, 입찰 담합은 합의의 존재만 입증되면 추가적인 경쟁제한성에 대한 입증, 분석 없이 곧바로 위법성이 인정된다.

2. 합의추정제도

2.1 개념

- 명시적 합의와 같은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카르텔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정황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를 추정하여 제재할 수 있다.
- 공정거래법 제40조 제5항에 의하여 합의가 추정되는 경우, 사업자는 그 행위가 합의에 기한 것이 아님을 입증함으로써 추정을 복멸할 수 있다.

2.2. 정황증거의 예시

① 직간접적인 의사연락이나 정보 교환 등의 증거가 있는 경우

- 해당 사업자간 가격인상, 산출량 감축 등 비망록 기입내역이 일치하는 경우
- 모임을 갖거나 연락 등을 하고 그 이후 행동이 통일된 경우
- 특정 기업의 가격, 산출량 등 결정을 위한 내부 업무보고 자료에 다른 경쟁기업의 가격, 산출량 등에 대한 향후 계획 등 일반적으로 입수할 수 없는 비공개자료가 포함된 경우
- 특정기업이 가격인상 또는 산출량 감출 의도를 밝히고 다른 경쟁기업들의 반응을 주시한 후 그 반응에 따라 가격인상 도는 산출량 감축을 단행한 경우

② 공동으로 수행되어야만 당해사업자들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수행되었다면 당해 사업자 각각의 이익에 반하리라고 인정되는 경우

- 원가 상승 요인도 없고 공급과잉 또는 수요가 감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동일하게 인상하는 경우
- 재고가 누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동시에 인상된 경우

③ 당해 사업자들의 행위의 일치를 시장 상황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

- 수요 공급 조건의 변동, 원재료 공급원의 차이, 공급자와 수요자의 지리적 위치 ed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동일하고 경직되어 있는 경우
- 원재료 구입가격, 제조과정, 임금인상률, 어음할인금리 등이 달라 제조원가가 각각 다른데도 가격변동 폭이 동일한 경우
- 시장상황에 비추어 보아 공동행위가 없이는 단기간에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 없는 경우

④ 당해 산업구조상 합의가 없이는 행위의 일치가 어려운 경우

- 제품 차별화가 상당히 이루어진 경우에도 개별 사업자들의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
- 거래의 빈도가 낮은 시장, 수요자가 전문지식을 갖춘 시장 등 공급자의 행위 일치가 어려운 여건에서 행위의 일치가 이루어진 경우

3.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유형

3.1 가격을 경정, 유지, 변경하는 행위

3.1.1 판단기준

-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 여기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도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
-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율을 결정하거나, 일정 수준으로 가격을 유지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된다
- 평균가격, 기준가격, 표준가격, 최고 및 최저가격, 금리협정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가격설정의 기준을 정하는 행위
- 할인율, 이윤율 등 가격의 구성 요소에 대해 그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거나 일률적인 원가 계산의 방법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 유지, 변경하는 행위

3.1.2 관련 사례

공동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유지한 사례 (공정위 2014국카1530)

- 피심인들은 1998. 1.1 .부터 2011. 8. 25.까지 영업책임자 등 간에 수십번 의사 연락을 통해 국내 주요 철강사에 납품하는 철강용베어링의 수주물량을 배분하고 견적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할 것을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다. 기본적인 합의 내용은 기존 점유율을 존중한다는 전제 하에 ① 오리지널 베어링을 수주한 피심인이 보수용 베어링을 우선 수주하고, ② 피심인들이 납품하고 있지 않은 신규 입찰에 대해서는 각각 50%씩 수주한다는 것이었다.

- **공정위 판단 : 피심인들이 국내 철강용 베어링 시장에서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약 14년여의 기간동안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각 사별로 수립된 독자적인 영업과 판매전략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철강용 베어링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실행함으로써 국내 철강용 베어링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음이 인정된다.**

육계 출고량과 판매가격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유지한 사례 (공정위 2017카조2009)

- 피심인들은 2005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유통업체 대상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인상, 할인율 축소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였다. 피심인들은 ① 축산업계 수급안정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법령상 정당한 행위이며, ② 화물연대의 운송료 인상요구에 대응한 가격인상은 담합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③ 참여 빈도가 적은 중소업체는 의사 결정권도 없고 회의 결과를 통지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공정위 판단 : 피심인들 16개 회사는 국내 육계 신선육 판매 시장에서 7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본건 담합을 통해 경쟁 제한 효과만 발생시켰을 뿐 효율성 증대 효과는 없었다. 한편, 피심인들의 반박에 대해서는 ①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의 회의 참석 및 행정지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담합을 행정지도한 것은 아니고, 장기간의 담합을 정당화할 수도 없으며, ② 화물연대의 운송료 인상 요구가 있든 없든 판매가격 인상하는 구조는 동일하였고, ③ 회의에 참석 안 한 중소업체도 회의 결과를 통지받고 실행하였으며 담합에 따른 이익을 공유한 점 등을 근거로 그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 **공정위 결정 : 16개 사업자에게 과징금 합계 1,731억원 부과**

해상운임에 대한 담합 사례 (공정위 2018카조3210, 2021국카0957, 2020국카0343, 2022국카0537)

- 피심인들은 한-동남아, 한-일 항로에서 컨테이너 해상물류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해상운송 서비스의 로컬화물에 대한 가격 인상·유지를 위하여 피더화물에 대한 가격 인상·유지도 함께 합의하였고, 최저운임 가이드라인 설정, 각종 부대운임의 도입 및 인상 등을 주기적으로 합의하였으며, 상호간 합의 준수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함 (다만, 해운업계에서는 100년 이상 국제적으로 공동행위가 허용된 부분이며, 해양수산부가 문제 없다고 유권해석한 부분이라며 반박함)

- **공정위 판단 : 해운법에 의한 정당한 행위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바, 피심인들의 담합행위 중 해양수산부에 신고된 건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그 신고된 내용조차도 실제 공동행위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 및 피심인들의 가격 인상 유지 행위 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심인들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가격 담합행위이다.**

- **공정위 결정 : 한-동남아 항로 23개 사업자에게 과징금 합계 964억원 부과, 한-일 항로 15개 사업자에게 과징금 합계 803억원 부과**

3.2 상품의 생산, 출고, 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3.2.1 판단기준

-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 출고, 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 사이에 각 당사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축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 및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 구입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 출고 수송을 제한하는 행위, 특정 회사를 통해서만 공급하는 등 공급방식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있다.

3.2.2 관련 사례

판매가격, 거래량 및 거래상대방 등으로 공동으로 결정한 사례 (공정위 2014국카3037)

- 피심인들은 반응개시제 제조 판매업체로서, 기본 합의에 따라서 수시로 영업담당자 간의 회합, 전화 연락 등을 통하여 수요처 입찰이 있을 때마다 수요처별 낙찰자 또는 납품업체를 미리 정하는 방식으로 상호간에 거래처 또는 거래물량을 침범하지 않기 위한 합의를 지속하였다. 또한 견적가격을 미리 정하거나 상호 교환하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하였다.

- **공정위 판단 : 이 사건 공동행위는 그 내용이 가격의 공동결정, 거래수요처 분할, 수요처별 물량 분할이고, 그 유형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킬 뿐 어떠한 효율성 증대효과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또한, 이러한 합의는 그 목적이 경쟁으로 인한 피심인들 각 사의 이익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외에 다른 의도나 목적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투찰 물량을 상호 배분 등을 통해 공동으로 결정한 사례 (공정위 2013부사0983)

-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의 2012년도 폐화석비료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2011년 11월 농협중앙회에서 개최된 설명회에 참석한 후 다음 날의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 인근에 소재한 호텔에 투숙하였으며, 모임을 갖고 투찰 물량을 배분하였다.

- **공정위 판단 : 농협중앙회의 폐화석비료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투찰 물량을 상호배분함으로써, 농협중앙회 폐화석비료 구매 입찰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로 판단된다.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3.3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3.3.1 판단기준

-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 중 시장분할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 간에 거래지역을 공동으로 정하여 상호간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특정한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특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들의 개별 수주활동을 제한하고 공동 수주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 공동으로 수주하도록 합의하거나, 입찰 또는 수주의 순위, 자격 등을 합의하는 경우
-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 간에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하거나,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공동으로 정하여 상호간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
- 특정한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경우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특정한 사업자를 우량업자 또는 불량업자로 구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3.3.2 관련 사례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도록 공동으로 결정한 사례 (공정위 2011시감0341)

- 석유제품 제조 판매업체인 피심인 각 회사의 영업담당자들은 2000년 3월 초 여의도 소재 일식당에서 개최된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대책반' 모임에서 정유사가 다른 정유사를 원적으로 하는 주유소('원적주유소')를 자기의 거래상대방으로 유치함에 있어 원적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원적 관리를 통하여 주유소 유치경쟁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아울러 정유사가 원적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원적주유소를 유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대응 유지를 수용하도록 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또한 주유소 확보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적 관리 원칙을 합의하고, 이에 기초하여 경쟁사의 원적주유소에 대해 거래를 거절하거나 피심인들간 자기의 원적주유소를 서로 맞교환하였으며, 맞교환이 어려운 경우 동일 또는 유사 수준의 다른 주유소를 교환하는 등 원적 관리 합의를 실행하였다.

- **공정위 판단 :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들이 거래상대방인 주유소에 대한 유치경쟁을 자제함으로써 피심인별 계열 주유소의 점유율을 고착화시키고, 정유사간 주유소 유치 경쟁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주유소의 거래조건 개선을 차단함으로써 석유제품 도매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3.4 가격, 생산량 등 정보교환 행위

3.4.1 신규 규제 도입 배경

- 과거에는 정보 교환 자체만으로는 담합으로 규제하지 않았으나, **2020. 12. 29. 개정 공정거래법에서는 일부 유형의 정보 교환을 담합 행위 유형으로 규정**
- 입법 배경 : 법원은 다수 사건에서 가격 정보 교환에 대해 경쟁제한적 행위라고 보면서도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자는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바, 이 부분에 대한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함 (공정위 2020. 12. 9.자 보도자료)

3.4.2 교환 정보의 내용 (법 제40조 제1항 제9호, 시행령 제44조 제2항)

1) 가격, 생산량
2) 원가
3) 출고량, 재고량 또는 판매량
4)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의 지급조건

3.4.3 경쟁제한성

- 모든 정보교환이 규제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주고 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 본 조항의 효력은 2021. 12. 29.부터 발생하고, 현재 규제된 Case가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규제되는 정보 교환의 범위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으나, **과거에 비해 관련 업계 사업자간 정보 교환에 있어서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4. 공동행위 적용 제외 요건

4.1 불황 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공동행위를 인가받을 수 있다.

가. 해당 산업 내 상당수 기업이 불황으로 인해 사업활동에 곤란을 겪을 우려가 있을 것

나. 해당 산업의 공급능력이 현저하게 과잉상태에 있거나 생산시설 또는 생산방법의 낙후로 생산능률이나 국제경쟁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을 것

다. 기업의 합리화를 통해서는 상기 상황을 극복할 수 없을 것

라.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산업구조조정의 효과가 더 클 것

4.2 연구·기술 개발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연구·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행위를 인가받을 수 있다.

가. 해당 연구・기술개발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필요하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

나. 연구・기술개발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울 것

다. 연구・기술개발 성과의 불확실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해 필요할 것

라.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연구・기술개발의 효과가 클 것

4.3 거래조건의 합리화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를 인가받을 수 있다.

가. 거래조건의 합리화로 생산능률의 향상, 거래의 원활화 및 소비자의 편익증진에 명백하게 기여할 것

나. 거래조건의 합리화 내용이 해당 사업분야의 대부분의 사업자들에게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할 것

다.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거래조건의 합리화의 효과가 클 것

4.4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 아래 요건 모두 갖춘 경우,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동행위를 인가받을 수 있다.

가. 공동행위에 따라 중소기업의 품질・기술향상 등 생산성 향상이나 거래조건에 관한 교섭력 강화가 명백할 것

나. 공동행위에 참가하는 사업자(이하 "참가사업자"라 한다) 모두가 중소기업자일 것

다. 공동행위 외의 방법으로는 대기업과 효율적으로 경쟁하거나 대기업에 대항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할 것

4.5 공동행위의 허용 한계

- 공동행위 허용 요건을 갖춘 경우라 할지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행위 인가를 해서는 안 된다.

1) 해당 공동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
2) 수요자 및 관련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참가사업자 간에 공동행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차별이 있는 경우
4) 해당 공동행위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4.6 공동행위 인가 신청 서류

- 신청서 :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동행위대표사업자'를 선정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명칭 및 소재지(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2) 공동행위의 내용
3) 공동행위의 사유
4) 공동행위의 기간
5) 참가사업자의 수, 사업내용, 명칭 및 소재지(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포함)

- 첨부서류 : 위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공동행위 허용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공동행위 불허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의 영업보고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4) 공동행위의 협정 또는 결의서 사본
5) 그 밖에 공동행위 인가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한 서류

4.7 공동행위 인가 절차

- 공정거래위원회는 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일부터 30일(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위한 공시기간은 제외)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인가 신청의 내용 또는 인가의 효과 등에 비추어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인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인가 신청 내용을 공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행위의 인가를 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인가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5.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시 제재

5.1 행정적 제재

- 시정조치 : 법위반행위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
- 관련 매출액의 10% 한도에서 과징금 부과

5.2 형사적 제재

- 공동행위 사업자에 대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양벌규정(공정거래법 제128조)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 외에도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이 가능하다.

5.3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최대 3배)

- 공동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제3자나 소비자는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공정거래법 제109조 제2항). 여기서 손해라 함은 공동행위로 설정한 가격과 경쟁시 형성되었을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의미한다.

6. 입찰담합금지

6.1 개념

- 입찰담합은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계약, 협정, 결의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낙찰의 비율, 설계 또는 시공 방법 등을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 입찰담합은 가격담합, 시장분할 등과 같은 경성카르텔의 일종으로 미국, EU, 우리나라 등 모든 나라에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서의 담합은 국가 재정의 낭비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중점적으로 규제하는 분야이다.

6.2 입찰담합의 유형

6.2.1 입찰가격담합

(1) 판단기준

-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최저입찰가격(계약 목적에 따라서는 최고입찰가격), 수주예정가격 또는 그와 비슷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법위반이다.
- 가격은 사업자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형성되어야 하며,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 결정에 관한 활동을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위법 소지가 높다.
- 결정은 명시적 결정에 한정되지 않고, 최저입찰가격 등에 관해 암묵적인 이해 또는 공통적 의사가 형성되는 것으로 족하다.
- 타당한 가격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대상이 되는 제조위탁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거나, 부당한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 등으로는 입찰가격담합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2) 관련 사례

시스템에어컨 정부조달계약 관련 사례 (공정위 2010카총2249)
• 피심인들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조달청과 시스템에어컨 연간 조달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조달청과 단가협상 전에 조달단가를 인상 도는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 **공정위 판단 : 피심인들은 조달청과의 협상에 있어 조달단가 및 품목을 합의하여 정부조달시장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이다. 직접 접촉, 유무선 전화통화, 이메일 교환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정부조달계약에 있어 공개되지 아니한 내부협상안이나 원가자료 등 정보를 교환해서는 안 된다. (시정명령 및 과징금 176억원 부과)**

들러리를 이용한 입찰 가격 담합 사례 (공정위 2013카총2367)
• 피심인 5개 사업자 영업담당자들은, 2004년 2월 신고리 신월성 1,2호기 및 신고리 3,4호기 원자력 발전용 케이블 입찰 관련하여, 각 품목별로 낙찰자를 사전에 협의, 결정하고 투찰가격과 낙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1차 기본 합의). 또한 피심인들은 2004년 8월 물량 배분 등 위 기본합의의 큰 틀 속에 6번째 사업자를 참가시키기로 합의하면서 신한울 1,2호기의 일부 품목에 낙찰자를 사전에 협의, 결정하였다. (2차 기본 합의) • **공정위 판단 : 피심인들이 원자력 발전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성립된 합의에 따라 케이블 종류별로 나뉘먹기식으로 낙찰받았고, 사전에 합의하여 품목별로 물량을 배분하여 낙찰자를 협의, 결정하고 각 입찰별로 들러리를 세워 입찰에 참가한 행위는, 원자력 발전용 케이블 입찰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이다. (총 63억원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6.2.2 낙찰예정자의 사전 결정 (수주자 선정에 관한 행위)

(1) 판단기준

-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 또는 낙찰예정자의 선정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입찰 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상품 및 용역거래에 관한 경쟁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법위반이다.
- 입찰 관련 수주예정자 또는 수주예정자의 선정 방법 결정은 입찰시 사전에 수주받아야 할 자를 특정해 그 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수단이나 방법에 제한은 없다.
- 결정은 명시적 결정에 한정되지 않고, 수주예정자 도는 수주예정자 선정 방법 등에 관해 암묵적인 이해 또는 공통적 의사가 형성되는 것으로 족하다.
-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질 확보, 수주의 균등화 도모, 각 사업자의 영업 활동이나 기존 수주와의 계속성 존중 등 사유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 제3자가 수주예정자에 대해 추천이나 권장을 하고, 사업자가 공동으로 그 추천이나 권장을 따를 것을 결정한 경우 이 역시 수주예정자의 결정에 해당한다

(2) 원칙적 위반이 되는 경우

① 수주 의욕의 정보교환 등

-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가 당해 입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수주 의욕, 사업활동 실적, 대상 물건 등에 관련한 수주 실적 등 수주예정자의 선정과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사업자들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

② 지명회수, 수주 실적 등에 관한 정보의 정리, 제공

- 사업자가 공동으로 과거 입찰에 있어서 개별 사업자의 지명회수, 수주 실적 등에 관한 정보를 이후의 수주예정자 선정의 우선 순위 기준으로 하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정리하여 입찰참가자들에게 제공하는 것

③ 수주예정자 또는 수주예정자의 선정 방법의 결정

- 수주예정자로부터 입찰 가격에 관한 연락, 지시 등을 받은 상태에서 수주예정자가 수주받을 수 있도록 각각의 입찰가격을 설정하는 것

④ 다른 입찰참가자에 대한 이익 공여

-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주예정자에게 다른 입찰참가자 등에게 업무발주, 금전지급 등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⑤ 수주예정자 결정에 대한 참가의 요청, 강요 등

-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참가를 예정하는 사업자에 대해 수주예정자의 결정에 참가할 것 또는 결정의 내용에 따를 것을 요청 내지 강요하고, 결정에 협력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거래거절, 차별취급 등으로 입찰 참가를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3) 위반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입찰 참여 사업자간에 각 사업자에 대해 지명경쟁입찰에 관한 지명을 받은 것과 입찰 참가의 예정에 대해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
- 공동기업체(컨소시엄)로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체로 당해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간에 당해 입찰 참가를 위해 공동기업체의 결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4) 원칙적으로 위반이 되지 않는 경우

① 발주자에 대한 입찰참가 의욕 등의 설명

- 사업자가 지명경쟁입찰에서, 지명 이전 단계에서 제도상 정해진 발주자로부터의 요청에 따라, 다른 사업자와 연락이나 조정 없이, 자신의 입찰 참가 의욕, 기술정보(유사 업무의 실적, 기술자의 내용, 해당발주 업무의 수행 계획) 등을 발주자에 대하여 설명하는 경우

② 자기 판단에 의한 입찰 사퇴

- 지명경쟁입찰에서 지명을 받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연락 조정 없이 자기의 사업경영상의 판단에 이해 입찰을 사퇴하는 경우

(5) 관련 사례

수주예정자의 참가 및 요청으로 인한 입찰 담합 사례 (공정위 2011부사0931)

- 피심인들은 2009년 3월경 지자체가 조달청 쇼핑몰을 통해 제안 요청한 파형강관 납품 입찰에 대하여 A사가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A사 회의실에서 관계자와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A사는 다른 피심인들에게 자신이 조달청과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한 품목의 합계액의 9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투찰할 것임을 알려주면서 자신이 낙찰받도록 협조 요청하였고, 다른 피심인들은 A사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 **공정위 판단 : 파형강관 납품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부과**

수주예정자의 결정과 관련된 사례 (공정위 2009카총4382)

- 피심인들은 지자체가 발주한 도로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 입찰에 참가하면서 A사가 낙찰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 입찰이 유찰되지 않도록 B사가 본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가하기로 사전에 합의하였다. A사는 B사에게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BIS사업 컨소시엄 구성을 제안하였고, B사는 컨소시엄을 통해 BIS 사업의 수주 확률이 더 높다고 판단하여 단독입찰을 포기하고 A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 **공정위 판단 : 피심인들은 도로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 입찰에 참가하면서 경쟁업체와 합의하여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관련 입찰이 유찰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경쟁업체의 설계도서 등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26억원 부과**

6.2.3 경쟁입찰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유도

-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수의계약에 의해 계약할 수 있도록 결정, 유도하는 것은 자유로운 경쟁을 배제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법위반이다.

6.2.4 수주물량 등의 결정

(1) 판단기준

-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관련된 수주 물량 결정과 이러한 수주 물량을 나눠 갖기 위해 입찰 참가자간 배분 등을 결정하는 행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법위반이다.
- 결정은 명시적 결정에 한정되지 않으며, 수주 물량, 비율 등에 관해 암묵적인 이해 또는 공통의 의사가 형성되는 것으로 족하다.

(2) 관련 사례

들러리를 활용한 담합 사례 (공정위 2012카조0917)
• 피심인들은 조달청의 1999년도 포스팜 입찰이 있기 직전인 1998년 12월경 서로 전화 통화를 갖고 2리터 규격의 포스팜 입찰에서는 A사가 들러리로 참여하고, 4리터 규격의 포스팜 입찰에서는 B사가 들러리로 참여하여 각각 예정가액보다 높은 금액을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피심인들은 조달청의 포스팜 입찰시에 2리터와 4리터 규격 제품의 입찰 물량에 차이가 있을 경우, 입찰 물량이 더 많은 규격의 제품을 낙찰받은 업체가 그렇지 않은 업체에게 일정 물량을 임가공 의뢰함으로써 양사가 낙찰 물량을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기로 합의하였다 • **공정위 판단 : 조달청이 발주하는 농약제품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사업자와 낙찰 물량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안 된다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6억원 부과**

6.2.5 경영간섭 등

-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가 공동으로 당해 입찰에 관련된 사업자의 활동에 대해 지도를 행함에 있어서 입찰가격이나 수주예정자 결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경쟁제한적인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법위반이다.

6.3 업무상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산출내역서를 복사 또는 대신 작성하여 주는 방법에 의해 입찰을 해서는 안 된다.
- 공동으로 지명회수, 수주실적 등을 정리하여 낙찰예정자 선정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들이 이에 협조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산출내역서를 전문적으로 작성해주는 용역업체에 다른 사업자의 산출내역서 작성을 의뢰하고 이를 참여사업자에게 배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낙찰자 선정에 협조한 대가로 낙찰사업자에게 사례금 또는 특별회비, 부과금 등을 징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물량에 대해서만 응찰하여 다른 사업자와의 공동 수주를 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공동으로 객관적 기준 없이 특정한 사업자를 입찰 계약과 관련하여 부당업자 또는 불량업자로 구분하여 발주처에 통보하거나 대외공표함으로써 입찰참여를 방해한 후 수의계약을 유도하여서는 안 된다.

6.4 위반시 제재

6.4.1 시정조치

-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담합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공정거래법 제42조).

6.4.2 과징금

- 관련 매출액의 20%(매출액이 없을 경우 40억원) 범위 내에서 부과 가능하다(공정거래법 제43조).
- 관련 매출액이란 법위반 사업자가 위반 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 입찰담합에 있어 관련매출액은 ① 낙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②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③ 낙찰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금액(또는 응찰금액)으로 본다.

6.4.3 벌칙

- 공정위의 고발에 의해 입찰담합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징역과 벌금은 병과 가능)
-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기타 형벌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에 의한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6.4.4 손해배상청구

- 발주기관은 입찰담합을 한 사업자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공정거래법 제109조, 민법 제750조)

6.4.5 손해배상액 예정 제도

- 입찰참여시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배상하도록 청렴계약서 등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 공정위는 손해배상액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에 손해배상액 예정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6.4.6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를 한 당해 사업자에 대한 조치 외에 필요한 경우 법위반 행위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국가계약법 제27조, 시행령 제76조).
-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해야 한다.
- 과거 5년간의 기간 산정은 당해 입찰담합에 대한 위원회 시정조치일로부터 과거 5년으로 역산하되 초일은 산입한다.
- 1개의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가 병과된 경우에는 최상위 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

유형	점수
경고	0.5점
시정권고	1.0점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2.5점
고발	3.0점

6.4.7 경매입찰방해죄 (형법 제315조)

-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입찰담합은 입찰담합에 대한 합의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반면, 형법상의 경매입찰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실제 경매 또는 입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6.4.8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공정을 해치는 건설업자들을 강력하게 규제하기 위해 형법 제315조의 특별법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6.4.9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 부정당업자의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게 된다.

6.5 공정위의 입찰담합징후 분석 시스템 운영

-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전송받아 낙찰률 및 참여업체 수 등 입찰담합 징후를 계량적으로 자동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입찰담합 관련 정보에 가중치를 두어 담합 징후를 점수화하고, 순번제 입찰담합 등을 포착할 수 있는 검색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 입찰 발주기관은 입찰 공고를 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때에는 의무적으로 공정위에 입찰 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 입찰정보 전송 기관 : 조달청, 한국전력공사 등 12개 공공기관

6.6 자진신고에 대한 감면제도(리니언시) 운영

- 리니언시(Leniency)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기업이 그 사실을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 제재의 수준을 감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 첫번째 자진신고자는 공정위가 부과하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완전 면제받게 되며, 두번째 신고자는 과징금 50% 감경 및 시정조치를 감경받을 수 있다.
- 엠네스티 플러스(Amnesty Plus) 제도는 진행 중인 담합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사업자가 다른 담합에 대한 증거를 첫번째로 제공하면 현재 조사 중인 담합에 대해서도 감면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도는 과징금의 감면 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에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이를 제출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자진신고 감면신청 접수처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
- 전자우편 : Leniency@korea.kr
- 팩스 : 044-200-4444
- 문의처 : 카르텔총괄과 044-200-4535

7. 문서 작성 및 정보보안 관련 가이드라인

① 회사가 독자적으로 사업판단을 하고 상품 관련 조건을 결정한 경우 그러한 내용이 문서 내용에 분명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경쟁사가 유사한 시기 또는 내용으로 상품 내용을 결정 또는 변경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② 회사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의 사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 **주의해야 할 표현 (*)**

- ***동업사 협력 강화***
- ***업계 공동대응 예정, 업계 차원의 검토***
- ***타사와 정보 공유***
- ***A사는 2023. 1. 1.부터 추진 예정, B사 5% 결정 예정***
- ***경쟁 자제, 경쟁지양,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시장안정화 협조, 시장 정화 방안, 시장질서 유지 필요***
- ***업계간 공조, 협조 체제***
- ***당사의 지역, 타사 지역***
- ***경쟁사의 조건은 당사 조건과 동일 (2023. 0월 시행 예정)***
- ***L사 28%(당사 조정시 인하 예정), 월 0회 정기적인 교류 활동***
- ***상위사와 하위사가 시차를 두고 폐지하기로 합의***

③ 문서 규정의 보존기간을 준수하고,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의 메일, 기록, 메모를 작성하거나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④ 회사의 중요 정보는 주관부서에서 자체 관리 및 정보보안을 철저히 하고, 담당자 외에는 보관하지 않도록 한다.

⑤ 당사의 가격이 사업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다른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듯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⑥ 문제가 될 만한 용어를 사용하거나 지배력을 의미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⑦ 회사의 중요 정보에 대한 자료를 회의 등의 사유로 배포시, 회의 종료 후 필히 회수하고, 메일 형식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지양하여야 한다.

⑧ 내부 또는 외부 문서 작성시 해당 문서가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가장 최악의 내용으로 해석될 가능성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7. 업계 모임 참여시 행동요령

① 업계 모임이 공정거래 법규를 위배하거나 위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부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담당자를 통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판매, 공급 등 모든 가격, 거래조건 등 공정거래법에서 담합을 금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③ 담합의 합의 사항의 시행 없이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므로,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협의나 결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불참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한다. 법위반 가능성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자율준수 전담 부서의 자문 또는 협의를 받아야 한다.

④ 불가피하게 참석하게 되는 경우, 적극적인 찬성을 표시하지 않고 침묵하여도 해당 행위가 참가로 간주되므로, 반대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의사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명기 요구), 즉시 그 장소를 이탈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거부 의사를 명확히 알린다.

⑤ 업계 모임에서 실제로 협의가 없었던 사항이나 일부 참석자가 단순한 의견 개진한 것에 불과한 경우, 회의록, 정보보고, 활동보고 등 형식으로 마치 협의가 있었던 것처럼 작성하면 담합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사실에 입각하여 기록하고 허위의 보고를 하지 않도록 한다.

⑥ 업계 모임에 참여하는 임직원은 그 내용이 공정거래법상 담합금지 조항에 해당하거나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대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 그 장소를 이탈하여야 하며, 즉시 해당 부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담당자를 통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개요

- 1996. 12. 30. 공정거래법에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이 도입된 이후,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부당한 지원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 이후 공정거래법은 2013. 8. 13. 대기업집단의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사업기회 유용 또는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 규정을 신설하였다.

구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부당지원행위
조항	- 공정거래법 제47조	- 공정거래법 제45조 1항 9호
규제대상	- 총수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	- 모든 사업자
지원객체	-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친족에 한정) 또는 특수관계인이 2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자회사	-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 (계열사에 한정되지 않음)
규제목적	- 대기업집단 특수관계일(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금지	- 공정거래저해성(경쟁제한성) 있는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제내용	- 상당히 유리한 조건 거래 - 사업기회의 제공 -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과정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일감 몰아주기)	- 상당히 유리한 조건 거래 - 상당한 규모의 거래 - 통행세
안전지대	-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 거래 조건 차이 7% 미만 & 연간 거래금액 50억원(상품 용역의 경우에는 200억원) 미만인 경우 - 상당한 규모의 거래 : 연간 거래 총액이 200억원 미만이고, 거래상대방 평균 매출액이 12% 미만인 경우	- 해당 없음
위반시 제재	- 시정조치 : 부당지원행위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 기타 필요한 조치 - 과징금 :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의 10% 이내 또는 매출액이 없는 경우 40억원 이내 과징금 부과 - 공정위 고발에 따른 형사제재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양벌규정 : 행위자 및 법인 처벌	

2. 일반 부당지원행위의 금지(법 제45조 1항 9호)

2.1 개념

(1) 부당한 지원행위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 또는 특수관계인 등과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 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 등을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

- 경제적 급부의 가격이 지원받는 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를 말한다.
- 지원행위 여부 판단 기준인 '정상가격'이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을 의미한다.
-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 사이의 거래가격은 정상가격으로 추정된다.
- 특수관계자 간 거래 가격의 경우, 지원의도가 추정되는 정황증거가 있거나 제3자간 거래라면 나타나지 않을 협상 또는 거래방식이 있을 경우, 회사 측에서 정상가격임을 소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의 부당성 판단 기준
  *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 유지 강화할 우려
  * 경쟁사업자 배제 우려
  * 경쟁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경우
  * 지원객체의 퇴출이나 다른 사업자의 신규 시장진입 저해
- 단순한 사업경영상 필요 또는 거래상 합리성 내지 필요성만으로 부당지원행위 성립요건으로서 부당성 도는 공정거래 저해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2.2 유형

2.2.1 자금지원행위

(1) 지원행위 여부 판단 : 정상금리를 기준으로 함

- 정상금리는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개별정상금리)를 기준으로 한다.
- 개별정상금리 산정이 어렵고 개별정상금리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평균 당좌대출금리(일반정상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경우, 일반정상금리를 기준으로 함
- 적용금리와 정상금리의 차이가 후자의 10% 미만, 지원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유형

- 계열 금융회사가 계열회사의 약정 연체이자율을 받지 않고 비계열사의 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 계열회사에 대한 저리자금 대여, 저리자금 예치, 선급금 명목의 자금 제공, 기업어음, 사채 저리인수, 후순위사채 매입, 전환사채 인수 및 전환행위
- 대여금, 용역대금을 변제기 이후에 회수하지 않는 경우
- 출자행위 성질을 갖는 신주인수행위를 하는 경우

(3) 업무상 유의사항

- 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단순대여금 등 지원 시점에 만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객체의 월별 평균 차입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보아야 한다.
- 지원금액의 산정에 부가가치세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한다.
- 대여금, 용역대금을 변제기 내에 반드시 회수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변제기를 도과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 적용 금리와 개별정상금리의 차이가 10% 이상 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상품 용역 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으로 계열회사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4) 관련 사례

개별정상금리를 산정하지 않고 일반정상금리를 기준으로 과징금 산정하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3두4255)

- W사가 우리은행으로부터 621억원을 차입함에 있어 W홀딩스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의 예금 600억원과 주식 100만주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W사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무담보 대출금리보다 낮은 대출금리인 5.50~5.87%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공정위는 개별산정금리의 산정이 곤란함을 이유로 일반정상금리인 6.83~7.07%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 **대법원 판단 : 사안에서 개별정상금리를 산정하기 어려웠다거나 개별정상금리가 일반정상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단지 우리은행이 W사 또는 W사와 신용등급이 비슷한 회사와 무담보 대출 거래를 한 실제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일반정상금리인 6.83~7.07%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2.2.2 자산지원행위

(1) 지원행위 여부 판단 : 정상가격(시가) 기준으로 함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당해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상증세법 제4장(재산의 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4장(재산의 평가)에서 정하는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2) 유형

- 비상장주식을 저가 매도한 경우
- 임차한 건물을 계열사에 저가로 전대한 경우
- 계열사로부터 임대료 수령을 지연한 경우
- 단독 또는 계열회사와 공동개발한 무체재산권을 계열회사에 양도하여 단독 특허 출원하도록 한 경우

(3) 업무상 유의사항

- 지원객체에 대하여 기존에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그 채무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객체의 채무를 인수하는 등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의 지원은 가능하다.
- 계열사간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아야 한다.

(4) 관련 사례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고 산 주식을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매각한 사례 (대법원 2005두5963)

- H사가 2001년 2월 자신과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들인 C캐피탈 주식회사 등 계열회사 5개로부터 H제철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6.82%에 해당하는 830만주를 경영권을 취득하는 대가로 전일 증권거래소 종가보다 6.25% 높은 가액에 장외에서 매입하였다. 이로써 자신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H제철 발행주식 4.70%와 합쳐서 11.52%의 지분을 확보하여 제1대 주주가 되었다. 그 후 H사는 이 주식을 매입한 지 11일 후 자신이 보유하던 H제철 주식 전부를 K사에 시간외 종가 매매를 통하여 매각하였다.

- **대법원 판단 : H사가 이 사건 주식을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고 장외 매입한 후 K사에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시가로 장내 매각한 행이는 결과적으로 K사로 하여금 H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켜 K사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지원행위다. 더욱이 K사의 경영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 매매행위는 K사로 하여금 자금력을 제고시키고 이로 인해 경쟁사업자에 비해 경쟁조건이 유리하게 되거나 시장에서의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강화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2.2.3 상품 및 용역지원행위

(1) 지원행위 여부 판단

- 자금거래나 자산거래에 비해 정상가격 산정이 어려우므로, 유사한 조건의 특수관계인 아닌 자와의 거래를 감안하여 판단할 수 있다.

(2) 유형

- 매출채권 회수 지연, 지연 회수하면서 지연이자를 받지 않는 경우, 자회사에게만 특별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 원재료의 고가 매입
- 대금 결제방식을 기존에 비해 유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3) 업무상 유의사항

- 계열사와 거래시 비용절감, 품질개선 등 효율성 증대 효과가 발생하였는지를 고려한다.
- 인쇄비, 구매위탁수수료, 노임단가 등 용역 수수료를 과다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 계열사에게 무료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안 된다

(4) 관련 사례

용역대금 지연 수령 사례 (대법원 2004두7610)

- H사는 징수 수수료의 입금에 대한 상호 정산이나 구체적인 합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등 용역대금의 수령을 지연하여 오다가, 1998년 1월 위 용역계약에 대한 추가 약정을 체결하면서 H사가 계열사로부터 매출액 전액을 수령하는 대신 계열사에게 추가약정서에서 특정된 운영인건비 등을 전산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운영권 사용대가의 지급방식을 변경함과 더불어 추가 약정의 내용을 최초 계약일에 소급적용하도록 합의하여, 계열사의 수수료 지급 지체책임을 사실상 면책시켰다.

- **대법원 판단 : H사의 추가 약정은 새로운 자금지원행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용역대금 지연수령행위 전부가 자금지원행위에 해당된다.**

교환광고를 통한 경제상 이익 제공 사례 (공정위 2010서감1285)

- 피심인은 O사와 사이에 명시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3년 9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교환광고를 하였으며, 이후 교환광고 관련 상호 정산이 이루어진 바는 없다 피심인은 피심인의 계열사인 O사의 브랜드 채널 방송에 대한 광고를 대행사를 통하지 않고 무상으로 상영해 준 사실이 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73억원이다.
- 반면, O사는 같은 기간 동안 피심인이 주최산 서울유럽영화제의 홍보영상물을 무상으로 제작하여 피심인에게 제공하는 한편, 총 78회에 걸쳐 서울유럽영화제의 예고편 등을 자신의 브랜드 채널 방송을 통해 무상 방영해 주었으며, 피심인이 주최한 일본영화제의 예고편 등을 160회에 걸쳐 위 브랜드 채널을 통해 무상 방영해 준 사실이 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1억원 가치가 인정된다.

- **공정위 판단 :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피심인은 O사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 **① 피심인이 O사에 제공한 무료 극장 광고의 가치가 당시 피심인 극장에 적용되는 광고대행 단가를 적용하였을 경우 총 73억원에 달하는 반면, O사가 피심인을 위해 제공한 영화제 홍보영상물과 예고편 광고방송은 당시 비슷한 내용의 홍보물에 대한 제작비 수준이나 O사 광고단가를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1억원에 불과하여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가 현저하다.**
- **② 교환광고를 함에 있어 상호간 명시적 계약이나 경제적 가치의 명확한 계산, 정산과정 등이 없이 실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극장매체와 방송매체는 매체간 광고단가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광고기간과 횟수 면에서도 피심인과 O사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이는 계열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사이의 업계 교환광고 관행과 배치된다.**
- **③ 광고영화 상영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광고하는 것이 업계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므로, 무상으로 광고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전형적인 업무 제휴의 형태로 보기는 어렵다.**

2.2.4 인력지원행위

(1) 지원행위 여부 판단 : 정상급여를 기준으로 함

- 근로제공 및 대가지급의 구분관계가 합리적이고 명확한 때에는 당해 인력이 지원객체와 지원주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 수당 등에서 당해 인력의 지원주체에 대한 근로제공의 대가를 차감한 금액을 정상급여로 간주한다.
- 구분관계가 합리적이지 않거나 불명확한 때에는 지원객체와 지원주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 수당 등에서 지원객체와 지원주체의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 중 지원객체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분담금액을 정상급여로 간주한다.

(2) 유형

-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계열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 인력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퇴직충당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한 경우

(3) 업무상 유의사항

-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 계열사의 인건비를 무상으로 부담하여서는 안 된다.

(4) 관련 사례

인건비를 대신 부담한 사례 (공정위 2015제감0797)
• S사는 1995년부터 2015년 3월까지 자신의 직원 11명에게 계열회사인 E사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이들의 급여를 E사 대신 지급하였다. 또한, 자신의 소속 임원들로 하여금 E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도록 하고 그 급여를 대신 지급하였다. • **공정위 판단 : S사는 인력을 파견하여 계열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대신 부담하거나 차량을 제공하고 소요비용을 부담하는 형식으로 상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계열회사인 E사를 지원하였고, E사는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S사로부터 무상으로 인력을 파견받고 차량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S사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이러한 행위는 인력지원행위에 해당된다.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원 부과)**

2.2.5 물량 지원행위

(1) 개념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을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 계열사에게 상당한 규모로 물량을 몰아주는 경우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2)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의 판단 기준

- 거래대상의 특성상 지원객체에게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 절감 효과가 지원객체에게 과도하게 귀속되는지 여부
-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 거래물량만으로 지원객체의 사업개시 또는 사업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물량을 초과할 정도의 거래규모가 확보되는 등 지원객체의 사업위험이 제거되는지 여부
- 정당화 사유 고려 : 당해 거래 고유한 특성에 의하여 지원주체에게 비용절감, 품질개선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

(3) 유형

-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가 계열회사 또는 비계열회사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계열회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거래하는 행위
- 부당하게 계열사 또는 자회사에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함으로써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
- 현실적인 관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유동성의 확보 자체가 긴요한 경우가 적지 않음에 비추어, 상당한 규모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될 수 있다.

(4) 업무상 유의사항

- 계열사와 거래할 때에도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며, 만약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할 경우 수의계약의 사유가 적정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 계열사에게 업무의 대부분을 수의계약의 형태로 몰아주어서는 안 된다.
- 계열사에 거래조건의 특혜가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5) 관련 사례

계열회사에 물류 업무 대부분을 몰아준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7누30903 판결)
• H사 및 계열사들은 G사 설립 직후부터 G사가 통합 물류체계를 완성한 2004년 6월까지 G사에게 자사 제품의 생산, 판매에 부수하는 완성차 배달 탁송, 철강 운송 등 각종 물류 업무를 비경쟁적인 사업 양수도 또는 수의계약의 방식을 통하여 대부분 몰아주었다. • **법원 판단 : 문제된 거래물량의 비중이 당시 물류시장 1위 사업자의 매출액의 약 30%에 해당하는 점, G사 전체 매출액의 35~41%에 이르는 점 등을 이유로 현저한 규모의 거래로 인정하고, G사가 비계열사와의 거래보다 훨씬 높은 매출총이익을 시현한 점, 운송단가를 시장가격의 인상률보다 높게 인상한 점, 대부분 수의계약 후 단기간 내 운임단가를 대폭 인상한 점 등에 비추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본건 지원행위로 G사가 산업 평균에 비하여 높은 자기자본 증가율, 매출증가율, 총자본영업이익율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인정하면서, G사가 설립 후 2년만에 2위 사업자로, 4년만에 1위 사업자로 급부상한 점에 비추어 본건 물량 몰아주시는 G사의 경쟁상 지위를 부당하게 제고하여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당성을 인정하였다.**

2.2.6 통행세

(1) 개념

- 거래상 실질적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하여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유형

-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경우
- 추가된 거래단계의 회사가 어느 정도 역할은 하지만 그 대가를 과도하게 받는 경우

(3) 업무상 유의사항

- 중간 매개자인 계열사의 전문적 역할, 거래비용 절감, 규모의 경제 달성 등 구체적 역할이 입증되어야 한다.
-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의 거래상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 실질적 역할이 없는 계열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해서 수익을 귀속시키게 해서는 안 된다.

(4) 관련 사례

핵심 품목을 구매 또는 판매하면서 계열사를 거치도록 한 사례 (공정위 2015시감2669)
• L사는 총수일가와 공동출자하여 A사를 설립하고, 다수 계열사의 핵심 품목인 전기동을 구매 또는 판매하면서 A사를 거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전기동 중계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확보했고, 부당이익을 바탕으로 IT서비스 분야로까지 사업을 확장했다 • **공정위 판단 : 해당 거래는 장기간 동안의 통행세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경영진 고발 조치함**

3. 특수관계인 이익제공 금지(법 제47조)

3.1 개념

(1) 대상

- 총수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총수일가 개인이나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와 거래하여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 의결권 유무는 무관하여, 직접 지분만 계산함
  * 일반부당지원과는 달리, 공정거래저해성이 요구되지 않음
  *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계없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특수관계인은 동일인 및 그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포함

(2) 위법성 판단기준

- 부당성
  * 법 제4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 부당한 이익 발생
  * 부당한 이익의 특수관계인에의 귀속
- 상당성
  * 상당히 유리한 조건 : 실제가격과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이상, 해당연도 거래총액이 50억원(상품 용역 거래의 경우 200억원) 이상인 거래
  * 상당한 규모의 물량 : 평균매출액의 12% 이상이고, 200억원 이상인 거래

(3) 제재

- 시정명령, 과징금,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제재가 가능하고, 거래객체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이 지시 관여한 경우 벌칙 가능함.

3.2 유형

3.2.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1) 대상

-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또는 특수관계인과 현금 기타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적용제외

-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연간 총 거래금액이 50억원(상품 용역 거래의 경우에는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업무상 유의사항

- 시장에서 형성된 정상가격을 산정하고 기록 관리해야 한다.
- 특수관계인에게 자금 지원시 실제 적용금리와 개별정상금리 또는 일반정상금리의 차이가 7% 미만이 되도록 해야 한다.
-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말아야 한다.
- 비상장 주식을 저가로 매도하지 말아야 한다.
- 상품 용역 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으로 계열회사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4) 관련 사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례 (공정위 2014서감1689)
• H증권은 2015년 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Z사와 직거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수일가가 9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A사를 거래단계에 끼워넣어 실질적 역할 없이 상당한 마진을 확보하게 하였다. 또한, H로지스틱스는 2012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계열사인 T사로부터 택배 운송장을 정상단가보다 12~45% 높은 단가로 구매하였다. • **공정위 판단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총 12억원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을 결정함**

계열사 급식 수의계약에 대해 과징금 부과된 사례 (공정위 2018내부2188)

- 피심인들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4개 계열사의 단체급식에 관하여 계열사 1곳과 수의계약을 체결함. 거래금액은 총 2조 7,791억원 규모였으며, 매년 물가변동, 최저임금인상 등을 반영한 자동 인상 계약이 체결됨. 피심인들은 임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높은 식단가가 책정되었으며 이는 글로벌 IT경쟁사, 국내 IT회사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주장하였고, 첨담 생산설비가 있는 곳의 경우에는 보안상 이슈로 인해 계열사 거래가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함.

- **공정위 판단 : 글로벌 IT경쟁사, 국내 IT회사와 비교해도 피심인 회사의 직접 이익율이 현저히 높은 편이며, SK하이닉스가 단체급식 경쟁입찰을 한 사례를 비교해 보면, 보안상 이슈는 수의계약을 정당화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함. 본건은 합리적 근거 없이 내부 총무팀 담당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체결되었으며, 마진율을 보장한 자동 인상 조항 등으로 인해, 급식계약을 수행하는 계열사의 영업이익은 내부거래 비중이 72.5%에 달하는 등 동종업계에는 없는 계약 방식으로 부당지원하였다고 판단함**

- **공정위 결정 : 계열사 5곳 합계 과징금 2,349억원 부과**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내륙운송 독점거래 사례 (공정위 2019지원2745)

- H사와 그 계열사는 컨테이너 내륙운송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9년 운송업체를 일원화한 이후 독점 거래를 지속하였다. 2009년 ~2019년 거래금액은 약 830억원에 달하였으며, H사 전체 운송계약의 88% 비중을 차지하였다. 운송사의 데포(Depot)는 H사가 상시적으로 사용한다는 특수성이 있기는 하였으나, 운송사에 대한 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 **공정위 판단 : 피심인들이 제시하는 사유 (Depot의 상시적 사용, 일부 구간 비용 저렴 등)는 부당지원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볼 수 없음. 전체적으로 타사 대비 유리한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전체를 부당지원으로 보아야 함 (과징금 229억원 부과)**

3.2.2 사업기회제공

(1) 대상

-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적용제외

- 회사가 당해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 회사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

(3) 업무상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에 중간 매개자인 계열사의 전문적 역할, 당사의 거래비용 절감 당사의 규모의 경제 달성 등 구체적 역할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 과도한 수수료가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실질적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을 매개로 한 거래를 하여서는 안 된다.

(4) 관련 사례

사업기회 제공을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사례 (공정위 2017서감2195)
• D사는 자신이 개발한 호텔브랜드를 계열사인 A사가 출원 등록하게 하고, 같은 브랜드를 적용하여 D사 소유 여의도 호텔을 시공한 뒤 자회사인 O사가 A사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A사에게 .브랜드 사업 기회를 제공하였다. O사는 A사로부터 브랜드 마케팅 등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A사에게 브랜드 수수료 31억원을 지급하였다. • **공정위 판단 : D사가 A사에게 호텔브랜드 사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특수관계인에 귀속시켰다고 판단. 시정명령 및 과징금 13억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특수관계인을 고발 조치**

3.2.3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 거래

(1) 대상

-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시기 도는 거래조건 등 당해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 조사하고, 이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 평가하는 등 당해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 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 거래대상의 특성상 지원객체에게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으로 비용절감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절감 효과가 계열사에게 과도하게 귀속되는 경우이거나 또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의 거래물량만으로 지원객체의 사업개시 또는 사업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물량을 초과할 정도의 거래규모가 확보되는 등 지원객체의 사업위험이 제거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통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가 될 수 있다.

(2) 적용제외

- 거래당사자간 상품 용역의 연간 거래총액 (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이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2% 미만이고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의 이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도 적용이 배제된다.

①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는 거래

-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비용 절감 또는 판매량 증가나 품질 개선, 기술개발 등 효율성 증대화과가 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거래를 말한다. 이때 효율성 증대 효과는 해당 이익제공행위가 없었더라도 달성할 수 있었을 효율성 증대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 효과가 명백하다는 것은, 경쟁입찰을 하거나 여러 사업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해당 회사와의 거래에 따른 효율성 증대효과가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 자체가 비효율을 유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상품의 규격, 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계열회사간의 거래로서 해당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 소재 등을 공급 또는 구매하는 경우에는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이나 경쟁력이 부품이나 소재, 기초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열사의 품질 또는 경쟁력과 결합되어 평가되기 때문에 계열회사에 일감을 맡기는 것이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는 거래로 인정될 수 있다..
- 회사의 기획, 생산, 판매 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비스를 산업 연관성이 높은 계열사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에는 단일 상품거래가 아닌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거래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효율성 증대 효과를 인정할 수 있다.
- 긴밀하고 유기적인 거래관계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노하우 축적, 업무 이해도 및 숙련도 향상 등 인적, 물적으로 협업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무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상호 거래시 종합적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 회사의 상품, 서비스, 생산 공정과 관련하여 계열회사와의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계열회사가 일정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경우, 업무절차 또는 관련 전산시스템이 계열회사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거나 표준화되고 유사한 구조로 구축되어 있어, 상호 거래시 효율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다.
- 거래 목적상 거래에 필요한 전문 지식 및 인력 보유, 대규모 또는 연속적 사업의 일부로서 밀접한 연관성 또는 계약이행에 대한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계열회사에 대한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 변경시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거나 품질의 안전성 확보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거래에 효율성 증대 효과가 인정될 수 있다.
- 계열회사와 거래한 기존 상품, 서비스 생산공정을 활용하여 새로운 상품,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기존 상품, 서비스 등을 하자보수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 사용자가 많거나 사용 빈도가 높아 사회적 파급력이 크거나 중요도가 높은 상품 서비스 관련 사업으로, 계열회사 외에 신뢰성이 검증된 다른 사업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 상품 서비스 생산 과정이 표준화되지 않아 경쟁 방법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정보제공이 어려운 경우

② 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

- 다른 자와 거래할 경우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이 유출되어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를 말한다.
-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는 보상할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보상만으로는 충족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를 의미한다.
- 다른 자와 거래할 경우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성격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회사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과 관련된 거래라고 하여 모두 법 적용제외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물리적 보안장치 구축, 보안서약서 체결 등 보안장치를 사전에 마련함으로써 외부 업체와 거래하더라도 정보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지, 실제 시장에서 독립된 외부업체와 거래하는 사례가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공장 연구개발시설, 통신기반시설 등 필수시설의 구축 및 운영, 핵심기술의 연구, 개발, 보유 등과 관련된 경우 보안기술 및 정보가 상품 또는 용역의 경쟁력 확보에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계열사와의 거래에 보안성을 인정할 수 있다.
- 거래 과정에서 영업, 판매, 구매 등과 관련된 기밀 또는 고객의 개인 정보 등 상호간의 핵심적인 경영정보에 접근 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자와 거래할 경우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이 유출되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안성이 있는 거래라 할 수 있다.

③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

- 경기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등 회사 외적 요인으로 인한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한 거래를 말한다.
- 회사 외적 요인이란 불가항력적인 요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예견가능성이 없거나 또는 예견할 수 있어도 회피가능성이 없는 외부 요인이 발생한 경우이다.
- 회사 스스로 긴급한 상황을 자초하거나 회사 내부적으로 긴급한 사업상 필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긴급성 요건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긴급한 사업상 필요'란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에 있어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 단기간에 장애를 복구하여야 하는 경우, 상품의 성격이나 시장상황에 비추어볼 때 거래상대방을 선정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생산, 판매, 기술개발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업무상 유의사항

- 거래상대방의 적합하 성정 과정을 거쳐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 계열사에게 수의계약 형태로 일감을 몰아주어서는 안 된다.
- 계열사간의 거래물량의 확보만으로 사업의 위험성이 제거되는 거래를 피하여야 한다.
- 계열사에 거래조건의 특혜가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4) 관련 사례

내부거래를 통해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례 (공정위 2016제감0883)

- K사와 계열사 C사간 거래에서 K사는 자기가 노력하여 만들어낸 인터넷 광고 수익을 C사에서 전부 누리도록 하고, 계약상 지급받기로 한 통신 판매 수수료를 이유 없이 면제하였다. 또한 K사는 계열사 U사와 거래에서 콜센터 업무를 위탁한 후 시스템 장비에 대한 시설이용료와 유지보수비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 **공정위 판단 : K사가 C사 및 U사에게 호텔브랜드 합리적 고려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특수관계인에 귀속시켰다고 판단.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억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특수관계인을 고발 조치**

합리적 고려 비교 없이 거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례 (공정위 2017지주3032)

- M사 및 11개 계열회사들은 골프장과 호텔에 대한 객관적 합리적 고려 비교 없이 그룹 차원에서 M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 호텔과의 거래를 원칙으로 세우거나 사실상 강제했다. 그 결과 2015년부터 3년에 걸쳐 M사 계열사들과 M컨설팅 간에 430억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내부거래가 이루어졌고, M컨설팅의 주주인 특수관계인들은 골프장 사업 안정화 및 호텔 사업 성장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었다.

- **공정위 판단 : 기업집단 M사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 비교 없이 M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고 판단. 시정명령 및 과징금 44억원 부과 결정**

1.1 개요

- 협력업체와 거래를 하면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 (공정거래법 제45조 1항 1~6호)
- 우월적 지위 남용이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가 상대방에 대해 우월한 지위에서,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우월적 지위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처에 대한 거래의존도, 당해 거래처의 시장에서의 지위, 거래처 변경가능성, 사업규모의 격차, 상품의 수급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협력업체가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자라고 하여도,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행위가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1.2 유형

1.2.1 경쟁자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위

- 협력업체에 대해 당사의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도록 강제할 경우 '부속조건부 거래행위'로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된다.
- 부당하게 협력업체가 당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력업체와 거래하는 행위를 말하며,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당사가 공급하는 품목에 대하여 경쟁사의 품목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 경쟁사와 거래시 사전 승인을 받게 하거나, 당사가 구입하는 거래상대방의 제품을 경쟁사에게는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1.2.2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협력업체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 '불이익 제공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
- 거래조건에는 각종 구속사항, 저가 또는 고가매입, 가격조건, 대금지급방법 및 시기, 반품, 제품검사 방법 등 모든 조건이 포함된다.
- 공급한 부품의 반품을 받아주지 않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반품을 포기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비용 증가분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 거래대금을 지연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나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하는 경우
-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하자보수를 강제하는 경우
- 협력업체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공급물량을 감축하는 경우

1.2.3 부당하게 차별취급하는 행위

- 특정 협력업체에게 부당하게 수량, 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 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경우 부당한 거래조건 차별행위에 해당된다.
- 거래조건에는 수량, 품질, 규격, 인도조건, 대금지급조건, 수송 조건 등이 포함된다.
- 경쟁사업자에 대한 제품 공급 비중에 따라 지급기간이나 현금지급 비율 등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 유사한 물품을 공급하거나 구매하면서 현저하게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경우

1.3 관련 사례

특정사업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공급을 거부한 사례 (공정위 2012구사2)

- 피심인들은 대구 경북 지역 레미콘 시장에서 특정사업자에게 레미콘의 공급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함으로써 공동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하였다.

- **공정위 판단 : 피심인들은 대구 경북 지역 레미콘 시장에서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로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공동으로 레미콘의 공급을 거절하였는바,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1호의 부당한 공급거절에 해당된다.**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한 자격을 정지 취소한 사례 (공정위 2006서총2387)

- 피심인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이 납품한 배전기자재에 대한 성능 확인시험을 실시하기 위해 시험 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피심인 자신이 제정한 관리지침 규정과 다른 내용을 기준으로 성능확인시험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시업을 실시하고, 그 시험에 불합격하였다는 이유로 공급 자격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공급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행위를 하였다.

- **공정위 판단 : 피심인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4호의 불이익 제공행위이므로 법위반이다.**

1.4 제재

1.4.1 행정적 제재

- 시정조치 : 위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등
- 과징금 : 관련 매출액의 4% 한도 내 (매출액 산정 어려운 경우 10억원 한도)

1.4.2 형사적 제재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정거래법 제125조), 양벌규정 적용

1.4.3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협력업체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면책될 수 있다.

1. 공정위 공시

1.1 개요

- 공정거래법에 의한 기업집단 관련 공시는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공시(공정거래법 제26조), 기업집단현황 공시(공정거래법 제28조)가 있다.

1.2 기업집단현황 공시

-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회사의 일반 현황, 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 현황, 주식 소유 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등을 분기별 또는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 분기별 공시(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정보의 변경 빈도, 기업의 작성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일부 항목은 연 1회(매년 5월 31일까지) 공시할 수 있다.
- 공시의무 위반시에는 유형에 따라 미공시 및 허위공시인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항목	공시 내용	빈도
일반현황	- 회사명, 대표, 영위업종, 종업원 수 등 회사 개요 - 영위업종 현황 -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 부채비율 등 재무현황 -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손익현황 - 해외 계열회사 현황 - 계열회사 변동 내역	- 연 1회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	- 임원의 성명, 직위, 선임일, 겸직사항, 동일인과의 관계 및 변동사항 -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운영, 주주총회 관련 제도 등의 운영 현황	- 연 1회
주식소유 현황	- 소유지분 현황 - 계열사간 주식 소유 현황	- 연 1회 (소유 지분) - 분기 1회 (계열사간)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 간 거래 현황	- 계열회사로부터의 자금 차입 현황 -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대여 현황 - 계열회사,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 현황 - 계열회사간 상품 용역 거래 현황 - 계열회사,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산 거래 현황 - 계열회사간 거래에 따른 채권 채무 잔액 현황 -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현황 - 계열회사간 담보제공 현황 - 특수관계인 지분율 높은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 분기 1회 - 상품 용역 거래 등 일부 항목은 연 1회

1.3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

1.3.1 개요

- 매년 공정위에서 발표하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관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대상이 된다.
- 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비상장법인도 포함된다.
- 해외계열사는 내부거래 공시의무가 없으나, 국내 기업이 해외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상품, 용역, 자금, 유가증권, 자산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공시의무가 있다.
- 거래당사자 모두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모두 이사회 의결 공시를 해야 하며, 일방 당사자에게만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만 이사회 의결 공시의무가 발생한다.
- 특수관계인의 비영리법인과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이사회 의결 공시의무가 발생한다.

1.3.2 자금, 유가증권, 자산 거래

- 특수관계인(해외계열사 포함)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금, 유가증권, 자산을 제공 거래시 거래규모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받고 공시해야 한다.
- 자금거래란 회계처리상 계정 과목을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에 국한되지 않고, 금융상 편의를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현금 기타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 유가증권 거래는 주식 도는 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제공 거래하는 행위,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말한다.
- 자산 거래는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부동산 임대차 거래가 포함된다.

1.3.3 상품 용역 거래

- 상품 용역 거래란 회사의 상품 거래, 용역 서비스 제공 등 영업활동과 관련된 거래로서 손익계산서상에 매출액, 영업수익으로 계상되는 거래를 말한다.
- 동일인 단독 또는 동일인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간 거래 또는 위 계열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한 상법상 자회사를 상대로 한 거래가 분기별로 **100억원** 또는 자본금/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5%이상 금액을 초과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해야 한다.

1.3.4 대규모 내부거래 여부의 판단

- 대규모 내부거래 기준금액은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자본금,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5% 이상인 거래이다. **(2024. 1. 1.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기준이 50억원 → 100억원으로 상향)**
- 자본금이란 이사회 의결일 직전의 자본금을 의미한다. (이사회 의결일 이전에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의 주식 전황으로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본다)
- 자본총계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에 표시된 자본총계이다.

(1) 거래금액

- 자금, 유가증권, 자산 거래시에는 ①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대상에 대한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②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대상에 대한 1건의 거래행위를 분할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1건의 거래행위로 본다.
- 상품 용역 거래시에는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거래행위를 분기별로 판단한다.
- 담보제공은 담보한도액, 보험계약은 보험료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 부동산 임대차는 연간 임대료와 환산 연간 임대료(보증금 X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직 제47조 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관리비는 제외된다.

(2) 거래상대방

-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금, 유가증권,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이다.
-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계열회사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도 해당된다.

(3) 이사회 의결 절차

-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을 상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한다.
- 상장법인이 상법 제393조의 2 (이사회 내 위원회)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사회 내 위원회가 상법 제382조 제2항 및 제542조의 8 제2항 규정에 따른 사외이사가 3인 이상 포함되고, 사외이사의 수가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상법 제393조의 2 제1항 : 이사회는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4) 공시 시기

- 상장법인은 이사회 의결 후 1일 이내, 비상장법인은 이사회 의결 후 7일 이내에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하여 공시한다.
- 공시를 하여야 하는 마지막 날이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 이미 공시한 사항 중 거래목적의 변경, 거래 대상의 변경, 거래상대방의 변경, 거래금액 및 조건이 당초보다 20% 이상 변경된 경우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경우, 이사회 의결 후 공시하여야 한다.

(5) 상품 및 용역 거래에 대한 특례

일괄공시	- 거래금액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1년 이내의 거래기간을 정하여 일괄하여 할 수 있다.
변경공시	- 상품 용역의 실제 거래금액이 당초 공시한 거래금액보다 20% 이상 감소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실제 거래금액을 변경공시한다. - 당초보다 20% 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사전 이사회 의결 및 공시가 필요하다.
분기 중 공시	- 분기 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아니란 거래가 분기 중에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분기 중이라도 해당 사유가 발견된 때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계약체결 방식 공시	- 계약건별로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 계약체결방식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함이 원칙이다. - 다만, 이사회 의결 시점에 계약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건별 이사회 의결 및 공시가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방식 유형별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가 가능하다.

(6) 상품 용역 거래 공시 주의사항

- 거래 회사들의 영위 업종이 상이할 경우, 일방은 상품 용역 거래에 해당하나 타방은 자금 자산 등의 거래인 경우도 있다. 따라서 상품 용역 거래 여부를 각 회사별로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 상품 용역 거래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가 당해 거래를 회계적으로 매출액(영업수익) 거래로 인식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7)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 다른 의결 및 공시대상 거래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 등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행위
- 채권, CP 매입 또는 장단기 차입 후 이를 만기 상환하는 경우
- 상품, 금융 거래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할부금융이나 카드 결제
- 주식을 보유 중인 계열사가 모든 주주에게 동일하게 유상감자를 진행하여 이에 참여하는 경우

1.3.5 위반시 제재

-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또는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위 형태에 따라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4조 별표 9 및 과태료 부과기준 고시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된다.
- 위반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사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의견제출 기회 부여(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 서면으로 과태료 납입고지서 발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0조)

2. 기업결합 신고

2.1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의의

- 기업결합이란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기업들이 자본적, 인적, 조직적인 결합을 통하여 공통의 지배력 하에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2.2 기업결합 규제 제도의 내용

2.2.1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 공정거래법 제7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기업결합으로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다만,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이라 하더라도 기업결합으로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에 다른 폐해보다 크거나,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2.2.2 기업결합 신고제도

- 모든 기업결합을 공정위가 빠짐없이 감시하고 심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회사가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신고를 하게 하여 공정위가 효율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이 기업결합 신고 제도의 취지다.

2.2.2.1 신고대상 기업결합 유형

(1) 주식취득

-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20% (상장법인은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이미 20% (상장법인은 15%) 이상 소유한 자가 당해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상법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하며, 따라서 이를 취득하는 경우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없다. 다만, 의결권 없는 주식이 이후 총회 의결 등으로 의결권이 회복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사후신고 대상이다.
- 주식의 소유 또는 인수 비율 산정이나 최다출자자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모두 합산한다.
-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란 최다출자자가 아닌 상태에서 추가 주식 취득으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최초 20% 주식 취득으로 이미 최다출자자가 된 경우에는 그 이후 추가 취득하더라도 기업결합 신고의무는 미발생.

(2) 임원 겸임

- 대규모 회사 (기업결합신고 대상 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합계가 2조원 이상인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 자신의 임원 또는 종업원을 다른 회사의 임원으로 겸임하게 하는 회사에 신고의무 발생
- 계열회사간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대규모회사가 아닌 회사의 임직원이 대규모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사외이사가 다른 회사 사외이사를 겸임하는 경우는 제외
- 임원 겸임은 일방 당사자가 대규모회사임에도 사후 신고 대상에 해당 (임원이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부터 신고의무 발생)

(3) 합병

- 다른 회사와 신설/흡수/분할 합병을 하는 경우
-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회사가, 신설 합병의 경우에는 신설회사가 신고회사로서 신고의무를 가진다.
- 합병 이전에 신고하는 경우 존속 예정인 회사가 단독으로 신고하거나(흡수합병), 결합 당사 회사가 연명으로 신고한다. (신설합병)

(4) 영업양수

-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 양수 / 또는 임차
- 경영의 수임
-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
- 영업이라 함은 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권의 집합(조직, 인력, 계약관계 등 포함)을 의미한다.
- '주요 부분'이란 양수 또는 임차 부분이 독립된 사업단위로 영위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거나, 양수 또는 임차됨으로써 양도회사의 매출의 상당한 감소를 초래하는 경우로서 영업 양수금액이 양도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경우

(5) 새로운 회사설립 참여

- 새로운 회사 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인수비율 불문)
- 최다출자자인 신고회사, 회사 설립에 참여한 특정 상대 회사가 당사 회사 규모 요건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일방은 3,000억원, 타방은 300억원 이상) 충족시, 나머지 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참여회사를 신고

2.2.2.2 신고대상 회사의 요건 (규모, 인수대가, 연구활동 지출액 기준)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당사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일방은 3,000억원, 타방은 300억원을 넘는 경우 기업결합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 이 경우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는 기업결합일 전부터 기업결합일 후까지 계속하여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신고대상 회사 규모 미만이라 하더라도, 기업결합의 대가가 6,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법 제11조 제2항, 시행령 제19조 제1항)
- 인수대상 회사가 그 시점에 직전 3년간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한 적이 있다면, 회사 규모 및 인수 대가에 관계없이 신고대상이 된다. (시행령 제19조 제2항)
- 인수대상 회사가 직전 3년간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계속 보유·활용해 왔고,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액이 연간 300억원 이상인 적이 있다면, 회사 규모 및 인수 대가에 관계없이 신고 대상이 된다. (시행령 제19조 제2항)

2.2.2.3 기업결합 신고 시기

- 기업결합 신고는 기업결합을 완료한 후 신고하는 사후신고가 원칙이나, 결합 당사회사 중 일방 이상이 대규모회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인 회사)인 경우는 당해 결합 등이 기업 및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의무적으로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기업결합의 경우 신고 후 공정위의 심사 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는 기업결합 완료행위 (주식소유, 합병 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주식인수행위)가 금지되며, 이러한 이행행위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1. 개요

1.1 대규모유통업법의 목적 및 입법취지

-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면세점)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조)

■ 대규모유통업법의 특성

- 대규모유통업법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 지위남용, 구속조건부 거래)보다 우선 적용한다.
-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거래가 하도급법상의 제조위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을 우선 적용한다.

1.2 대규모유통업법의 구조

적용대상		- **적용업종** : 면세점, 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TV홈쇼핑, 편의점, 대형서점, 온라인쇼핑몰 등 - **적용대상** : 연간 소매업종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또는 매장 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영업에 사용하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 - **적용기간** : 거래종료일로부터 5년
규제내용	**의무사항**	- 서면 교부, 서류 보존의무 - 상품 판매대금 지급 -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금지사항	① 상품대금 감액의 금지 ② 상품 수령거부, 지체 금지 ③ 상품의 반품 금지 ④ 판매촉진비용 전가 금지 ⑤ 납품업자 등 종업원 사용 금지 ⑥ 배타적 거래강요 금지 ⑦ 경영정보제공 요구 금지 ⑧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 금지 ⑨ 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⑩ 불이익 등 금지
	납품업자의 준수사항	- 서류보존의무 - 신의성실의 원칙 준수 - 위법행위 협조 거부

1.3 관련 규정

(1) 법령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고시, 지침 등

- 당사업자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 지침
-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
- 대규모유통업 분야 분쟁조정 의뢰 기준
-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 대규모유통업분야 특약 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 지침
-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

1.4 적용 범위

- 대규모유통업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대규모유통업법상의 요건(연간 소매업종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또는 매장 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영업에 사용)을 충족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며, 거래 종료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는 유통시장의 구조, 소비자의 소비실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사업 능력의 격차, 납품업자 등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거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대규모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업태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거래상 지위가 우월하다는 것은 시장에서 독점적, 지배적 지위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절대적 우월성이 아니라, 개별적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이른바 상대적 우월성을 뜻한다.

1.4.1 거래당사자

- 대규모유통업자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도매업종 매출엑은 계산에서 제외된다.
- 납품업자는 거래형태에 상관없이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할 상품을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공급하는 자를 의미한다.

1.4.2 납품업자의 거래형태

(1) 직매입거래

-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판매책임을 부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 민법상의 매매를 의미하며,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의 인도를 받은 즉시 소유권이 사업자에게 이전된다.
- 대금 지급을 언제 할 것인지는 거래형태 구별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 통상적으로는 상품 인도 및 검수 후 즉시 또는 일정기간 경과 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다.

(2) 특약매입거래

- 사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 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3) 위수탁거래

-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 법률적으로는 상법상 위탁매매의 일종이며, 대규모유통업자가 자기 명의로 상품을 판매하지만 납품업자의 계산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다.
- 따라서 상품의 소유권 및 상품판매대금은 원칙적으로 납품업자에게 귀속하며, 재고부담 역시 납품업자에게 있다.

1.5 위반시 제재

- 시정명령 : 법위반행위 중지명령, 향후 재발방지, 상품대금의 지급,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계약조항의 삭제 수정,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등
- 과징금 부과 : 납품대금 또는 연간 임대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부과
- 과태료 부과 : 허위자료 제출 및 불출석 등은 1억원 이하, 조사 거부는 2억원 이해, 서류보관의무 위반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임직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자료 미제출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고발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양벌규정 적용)

2.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위반 유형 및 업무상 유의사항

2.1 서면교부의무 및 계약추정 제도

2.1.1 주요 내용

- 대규모유통사업자는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에게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사항(법정기재사항)이 명시되고 사업자와 납품업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계약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 서면 계약서 미교부시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납품할 상품의 제조 및 주문뿐만 아니라 납품할 상품을 위한 설비 장치의 준비행위도 일체 요구할 수 없다.
- 서면계약서 미교부시 납품업자 등이 계약사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법이 정한 15일 이내에 그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품업자 등이 통지한 계약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2.1.2 업무상 유의사항

(1) 중요사항(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 발급

-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정기재사항을 작성한 서면을 계약체결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교부된 서면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 명의의 기명날인(서명)이 있어야 한다.
- 법정기재사항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2조)

①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②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
③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
④ 상품의 반품조건
⑤ 사업자가 상품판매대금에서 공제하는 판매수익 도는 수수료 및 납품업자가 판매수익 또는 수수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
⑥ 방송 횟수 및 일시
⑦ 방송출연자의 인건비와 그 분담여부 및 조건
⑧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의 배송 조건
⑨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하거나 반품한 상품의 배송 및 처리조건

(2) 서면 발급 시점

- 원칙적으로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납품업자에게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보존대상 서면 및 보존 기간

- 중요사항을 담은 서면을 계약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계약내용 확인 및 계약체결 추정제도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4항 ~ 7항)

- 계약서 미교부시 납품업자 등의 계약확인 통지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15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의 계약의 존재를 추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 서면계약서 미교부시 납품업자 등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계약사항을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계약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위 통지 및 회신은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것이어야 하며, 위 통지 및 회신은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당사자의 주소로 하여야 한다.

2.1.3 법위반사항

-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거래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매장위치, 면적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양 당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면이 누락된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
-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

2.1.4 관련 사례

계약서면을 납품업자와 계약 체결 즉시 교부하지 아니한 사례 (공정위 2015유통3344)
• 피심인들은 특약매입 단기 행사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등의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면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납품업자와 계약 체결 즉시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우수고객 초대, 패션쇼, 콘서트 등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전에 납품업자와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비율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 **공정위 판단 : 피심인들은 대규모유통업법상 서면교부 의무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2 상품판매대금 지급의무

2.2.1 주요내용

- 대규모유통업자는 ①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②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임차인 판매대금 관리, 위탁거래 이외에 특약매입거래의 경우도 포함되며 대물변제는 금지된다. 즉, 상품판매대금 및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 등으로 지급할 수 없다.

2.2.2 대금지급기한 및 지연이자

- 월 판매마감일(통상 월 말일)부터 40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월 판매마감일은 유통사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결정 가능하다. 다만 대금의 조기 지급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 규정의 취지상, 판매마감 주기를 1월을 초과하여 약정할 경우 법위반 가능성이 있다.
- 지연이자는 현재 공정위 고시에 따라 연 15.5%이다.

2.2.3 업무상 유의사항

- 납품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판매대금의 지급일, 지급금액, 지급수단 및 판매대금에서 공제된 항목별 금액이 기재된 서류, 이자지급내역 등을 보존하여야 한다.
- 퇴점업체에 대한 소비자 하자보증보험의 필수적 가입을 계약상 명시하여야 한다.

2.2.4 관련 사례

상품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사례 (공정위 2014유통3429)
• H홈쇼핑은 32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면서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상품판매대금 54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이 경과한 후에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 **공정위 판단 : 피심인은 상품판매대금 지급 및 지연이자 지금의무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시정조치 명령 등 부과**

2.3 상품판매대금 감액 금지

2.2.1 주요내용

-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르거나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훼손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상품대금을 감액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
- 납품대금의 사후 조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정당한 감액 사유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 신선 농수축산물의 대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감액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엄격한 기간 제한(2일 이내)을 두어, 상품가치 하락에 따르는 손해를 납품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대규모유통업법 제7조).

2.2.2 업무상 유의사항

- 예외적으로 상품대금 감액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합리적 기간 내'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해당 거래분야에서 상품, 거래시기, 검수에 소요되는 시간 및 절차, 거래관행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감액의 정당한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 납품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거래조건이나 경제상황의 변화,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감액할 수는 없다.

2.2.3 법위반 유형

- 대규모유통업자가 임의로 가격을 인하하여 판매하고 가격 인하로 인한 손실분을 감액하는 경우
- 당초 상품 매입시 결정한 단가를 판매부진, 계절 경과, 원가 절감 등을 이유로 추후에 단가 인하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
- 납품계약과 별도로 구매가격 할인 합의서를 체결하고 구매가격 할인액을 공제받은 경우

2.4 수령지체 및 거부 금지

2.4.1 주요 내용

- 대규모유통업자는 계약의 유형을 불문하고 납품업자와 계약체결 후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체하여서는 안 된다.

2.4.2 업무상 유의사항

- 상품의 불일치, 상품의 하자 등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훼손 등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령 거부가 가능하다.
- 일정기간 동안만 판매되는 상품이 해당 기간을 넘겨 납품된 경우에도 수령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4.3 법위반 유형

- 자체 기획 상품을 발주하여 일부는 매입하고 나머지 물량은 매입을 거부한 경우
- 납품업자의 매장 철수 이후 거래 종료일에 속하는 판매대금에서 일정률을 곱한 금액을 유보시키고 이에 대한 지급도 3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지급한 경우

2.5 상품의 반품 금지

2.5.1 주요 내용

-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여서는 안 된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반품은 금지되며, 반품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대규모유통업자가 소명하여야 한다.

2.5.2 업무상 유의사항

- 반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받은 상품을 되돌려주거나 납품업자의 다른 상품과 바꾸는 등 형식에 관계없이, 반품약정 이행, 채무불이행에 따른 반환, 재매매, 환매, 취소 등 명칭에 관계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납품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되돌려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반품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 존재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입증해야 하며, 관련 서류도 계약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신선 농수축산물의 반품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반품할 수 있는 기간은 2일을 초과할 수 없다.

2.5.3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특약매입거래의 경우로서 계약체결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② 위수탁거래의 경우

③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 훼손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④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⑤ 대규모유통업자가 반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고 해당 납품업자에게 반품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⑥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 (신선농수축산물은 제외된다)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⑦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

2.5.4 법위반 유형

- 반품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고 반품하는 행위
- 유통기한 임박 또는 경과를 이유로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는 행위
- 매출 부진, 점포 리뉴얼을 이유로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는 행위
- 신상품 출시로 인한 신구 상품 교체를 이유로 납품업자와 합의 없이 반품하는 행위
- 직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기간 중 특정매입거래로 계약을 변경한 후 반품한 행위

2.6 경영정보제공 요구 금지

2.6.1 주요 내용

-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는 금지되고, 정당한 사유로 요구할 경우 사전에 요구 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공해야 한다.
- 다른 사업자에 대한 납품가격, 납품 물량, 납품 시기, 납품 방법, 대금지급 시기, 대금지급 방법, 반품 조건 등 납품 거래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가 포함된다.
- 다른 사업자에 대한 임차 면적, 임대료, 임대료 지급방법, 지급시기, 임차 위치 등 매장임대차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가 포함된다.

2.6.2 경영정보 제공 요구의 부당성

- 원칙적으로 경영정보 제공 요구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경영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판단되어 부당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높다.

2.6.3 경영정보 제공 요청시 준수사항

(1) 형식, 요구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교부

- 경영정보의 요구에 앞서 요구 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해당 서면에는 ① 경영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목적, ② 비밀유지 방법 등 요구 대상 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및 비밀침해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③ 요구일자, 제공일자 및 제공 방법, ④ 경영정보 제공 요구가 불가피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이에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범위

- 요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정된다.

(3) 관련 서류의 보존의무

- 경영정보를 요구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제공한 서류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거래 계약을 종료한 후에도 5년 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다.

2.6.4 업무상 유의사항

- 납품업자 등과의 계약 체결시 관행적으로 해당 납품업자 등과 다른 사업자들 사이의 거래현황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2.7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전가 금지

2.7.1 주요 내용

-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비용 행사를 실시하기 전에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사항(판매촉진비용 부담에 관한 법정 약정사항)에 대해 납품업자와 약정을 하지 아니하고는 납품업자에게 해당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 또는 액수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각각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예상이익의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예상이익이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3항)
- 납품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분담 비율은 50%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에 관한 법정 약정사항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9조)

① 판매촉진 행사의 명칭, 성격 및 기간
② 판매촉진 행사를 통하여 판매할 상품의 품목
③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④ 해당 판매촉진 행사를 통하여 당사자가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
⑤ 판매촉진 비용의 분담비율 또는 액수

2.7.2 판매촉진비용의 범위

- 판매촉진 행사는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을 의미하여, 판매촉진 비용은 판매촉진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7.3 업무상 유의사항

-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전에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 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 납품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 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납품업자의 비용 분담 비율이 예외적으로 50%를 초과할 수 있다.
- 유통사업자의 정기 세일, 수시 바겐세일, 계절 할인 등 다수의 납품업자가 참여하는 행하는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 비용에 관하여 약정한 서류를 계약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다.

2.7.4 관련 사례

판매촉진 비용에 관한 사전 서면 미약정 사례 (공정위 2014유통1993)

- 피심인은 자신의 일부 점포에서 '줄세우기 행사'라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요청에 따른 차별화된 판매촉진행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판매촉진 비용 부담 등에 대하여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 **공정위 판단 : 피심인은 판매촉진 비용의 사전 서면 작성의무 위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상품권 지급 경품 행사시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사례 (공정위 2014유통2534)

- 피심인은 상품권 지급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전에 비용분담에 관한 서면 약정을 하지 않고 행사에 소요된 비용 총 1,900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 **공정위 판단 : 피심인이 행한 상품권 지급행사는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구매욕을 자극하여 상품의 수요 및 판매 증지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

2.8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금지

2.8.1 주요 내용

- 거래형태 및 소매업태를 불문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거나, 자기가 고용한 자의 인건비를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2.8.2 예외적 허용

(1) 실체적 요건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파견된 종업원 등의 인건비 및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② 납품업자 등이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따라 자발적으로 자신의 종업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③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 등을 파견받는 경우

④ 특약매입거래를 하는 납품업자 등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공정위가 고시한 상품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파견받는 경우

(2) 절차적 요건

- 파견을 받기 전에 구체적인 파견 조건 전부(종업원 등의 수, 종업원 등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종업원 등이 종사할 업무 내용, 종업원 등의 인건비 분담 여부 및 조건)에 관하여 명시한 서면이 작성되어야 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 약정된 파견 조건은 명확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의 매출액 변동이나 산발적인 판촉행사의 실시에 따라 파견 종업원의 숫자 및 근무기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범위를 지정하여 파견 조건을 약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최대한 명확하게 특정하도록 해야 한다.

(3) 파견 종업원의 업무 범위

- 파견받은 종업원 등은 해당 납품업체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 따라서 대규모유통업자는 특정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파견된 종업원 등을 자신의 일반적인 관리업무나 또는 다른 납품업자 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4) 법위반 유형

- 파견된 종업원을 현금출납, 보조업무, 포장업무 등에 종사시키는 경우
- 파견된 종업원에게 통로, 화장실 등 매장 공용공간의 청소 또는 매장 공용공간에서 매장 전체 차원의 고객 응대 및 안내 업무 등을 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 파견된 종업원에게 유통업체 PB상품의 판매, 재고관리, 진열업무 등을 맡기는 행위
- 대규모유통업자가 파견 비용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납품업자에게 상품 매입원가의 인하를 요구하거나 판매장려금, 광고비, 진열대 설치비 등을 추가로 수취하는 행위
- 대규모유통업자가 먼저 종업원 파견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요청받는 형식을 취하여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 특수한 판매기법이나 능력과 무관한 판매대금 수령 등 단순 판매보조업무의 수행을 위해 숙련된 종업원 등을 요구하여 파견받는 행위
- 납품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사전에 종업원 파견에 대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 종업원 등의 근무기간을 '상반기 중' 또는 '3분기 중'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하여 납품업자 등이 파견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2.8.3 업무상 유의사항

- 일반적으로 당해 매장에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 등은 허용된다.
- 당해 상품 판매에 부수하는 매장 관리, 정리 업무는 '상품판매 및 관리'에 해당하여 종업원 파견의 목적 범위 내라고 볼 수 있으나, 파견된 종업원을 상품 판매와 무관한 타 상품 재고관리, 유통사업자의 일반적 홍보 업무, 공용시설 청소,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게 하면 법위반이다.

2.9 경제적 이익 제공요구 금지

2.9.1 주요 내용

-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 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2.9.2 업무상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① 납품업자 등에게는 반대 급부가 전혀 없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거나, ② 경제적 이익 제공의 반대급부가 법률상 허용이 어려운 사항이거나, ③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과 반대급부 사이의 형평성이 어긋난 경우 등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2.10 매장설비비용 보상의무

2.10.1 주요 내용

- 특약매입거래에서 대규모유통업자는 기초시설 비용이나 매장 인테리어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보상해주어야 한다.

2.10.2 매장설비비용 보상 성립요건

- 납품업자 등이 지출한 해당 매장에 대한 설비 비용이어야 한다.
- 보상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감가 상각된 현재 가치가 아니라 납품업자 등이 실제 지출한 설비비용 등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 계약기간 도중 거래중단, 거절 또는 매장위치, 면적, 시설 등 변경 행위가 발생할 것

2.10.3 매장설비비용 부담 주체

(1) 기초시설 비용

- 매장 바닥, 조명, 벽제 등 기초시설(대규모유통업체 고유 사양) 공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대규모유통업체가 부담한다.
- 다만, 입점업체가 기초시설을 자신의 사양에 따라 변경할 경우, 추가되는 비용 부분에 대해 사전 서면약정을 체결하여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2) 매장 인테리어 비용

- 대규모유통업체의 사유(MD개편, 매장 리뉴얼 등)로 매장 인테리어를 변경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규모유통업체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 좋은 위치로의 이동, 입점업체 내부 매뉴얼에 따른 인테리어 변경 등 입점업체에도 이익이 된다면 비용 분담이 가능하나, 소요 비용의 50%를 넘을 수는 없다.
- 브랜드 컨셉 변경, 매장 위치 변경 희망 등 입점업체가 개별적으로 입점업체의 사유로 인테리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은 대규모유통업체와 입점업체가 협의하여 분담한다.

2.10.4 업무상 유의사항

- 계약 기간 중에 납품업자 등과 거래를 중단하거나, 납품업자 등의 매장 위치, 면적, 시설 등을 변경하는 경우,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해당 납품업자가 해당 매장에 지출한 설비 비용 중 잔여 계약기간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보상하여야 한다.
- 일괄 MD(점포 배치) 개편을 하는 경우에도, 기존에 납품업자 등이 매장 설비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 설비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 매장 설비투자가 있은 때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도 매장 설비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 매장 설비비용을 지급하더라도,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8항, 제10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납품업자 등의 매장위치, 면적, 시설을 변경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거래중단, 매장 변경 등의 적법성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

2.11 상품권 구입요구 금지 등

2.11.1 주요 내용

- 대규모유통업법은 제6조에서 제16조까지 서면 교부, 상품대금 감액, 반품, 판매촉진비용 부담, 종업원 사용 등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의 사이에서 주로 문제되는 거래조건에 관하여 대규모유통업자의 작위, 부작위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한편, 그 외에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자 등에게 일정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불이익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는 거래관계에서 나타나는 9가지 특정 행위유형을 금지하면서(제1호 ~ 제9호), 그에 준하는 것으로 납품업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제10호)

2.11.2 상품권 구입요구 등 강제행위 금지의 유형

① 상품권이나 물품을 구입하게 하는 행위

- 납품업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무가 없는 상품권이나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상품권이나 물품은 당해 유통사업자가 발행하거나 판매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 구입하게 하는 행위는 반드시 강요의 수준까지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권유, 요청 등으로 인해 사실상 납품업체의 구매가 유도되었다고 인정되면 이에 해당한다.

② 통상적인 시장의 납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게 하는 행위

- 통상적인 시장의 납품가격은 해당 납품업자의 납품실태, 원재료 수급상황의 변화, 시장에서의 수요 변동, 상품의 생산량 또는 수입량의 변동, 그 밖에 해당 상품의 가격변동 또는 납품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의 발생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대량 구매에 따른 납품가격 인하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지만, 통상의 정도를 벗어난 수준의 할인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판매촉진행사를 위하여 통상의 납품수량보다 현저히 많은 수량을 납품하게 하는 행위

- 통상적인 납품 물량은 해당 납품업자의 납품실태, 원재료 수급상황의 변화, 시장에서의 수요 변동, 상품의 생산량 또는 수입량의 변동, 그 밖에 해당 상품의 가격변동 또는 납품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의 발생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과다 물량 요구가 있으면, 할인 요구가 없더라도 법위반으로 판단된다.

④ 납품업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촉진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

- 통상적으로, 당해 유통 매장 전체의 통일성을 요하는 판매촉진행사인 경우에는 통일적 행사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전체 행사 진행 후 각 비용을 1/N로 부담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반드시 당해 유통 매장의 모든 브랜드가 일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없는 행사에 강제적으로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법위반이다.

⑤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약정한 납품 가격을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정상가격으로 환원하지 아니하거나 환원을 지연하는 행위

⑥ 납품업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납품업자 등의 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게 하는 행위(와이드칼라 등)

- 상품 광고에 따라 납품업자가 실제로 매출 증대 등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는 법위반 판단에 고려사항이 아니다.

⑦ 일정한 점포의 매장에서 퇴점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납품업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의 다른 점포의 매장에 입점하게 하는 행위

- 퇴점 방해행위의 유형은 물리적 방해에 국한되지 않는다. 퇴점시 하자보증금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매장 원상회복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실질적 불이익 제공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⑧ 계약기간 중에 납품업자 등의 매장 위치, 면적, 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 매장 설비비용 보상의무는 별개로 인정되므로,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 면적, 시설 등을 계약기간 중에 변경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비용 보상은 따로 해야 한다.

⑨ 계약기간 중에 판매장려금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조건(판매수익 또는 수수료 비율)을 변경하는 행위

⑩ 그 밖에 위 사유에 준하는 것으로서 납품업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

- 파견된 종업원에 대해 판매목표 달성 강요 등 유통사업자의 이익만 일방적으로 추구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2.11.3 업무상 유의사항

- 판매촉진행사와 관련하여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게 하거나,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많은 수량을 납품하게 하거나, 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한시적 인하를 계속 유지하는 행위, 광고를 강요하는 행위 등은 적법하게 판매촉진비용을 분담한 경우에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2.11.4 법위반 유형

- 대규모유통업자가 국내 최저가 판매 등 행사를 기획한 후 납품업자의 통상 납품가의 40% 낮은 가격에 납품하도록 하는 행위
- 납품업자 등이 자체적인 할인 행사를 마친 후, 대규모유통업자가 또다시 유사한 행사를 기획하여 동참할 의사 또는 여력이 없는 납품업자 등의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 대규모유통업자가 입점업체에 대해 월별 매출목표를 설정하고, 실제 달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제시된 목표 금액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판매장려금 등을 징수하는 경우

2.11.5 관련 사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에 판매수수료를 인상한 사례 (공정위 2015유통3345)

- 피심인 A사는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에 상품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하고, 점포 개편 작업을 하면서 계약기간 중에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 면적을 변경, 축소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액 부담시켰다.

- **공정위 판단 : 피심인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2.12 불이익 등(보복행위) 금지 등

2.12.1 주요 내용

- 납품업자 등이 대규모유통업자의 법위반행위를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알리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납품 및 매장 임차의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2.12.2 업무상 유의사항

- 대규모유통업법 제39조 제1항은 불이익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0조는 법인과 행위자를 함께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도 두고 있다. 따라서 상기 규정 위반시 행위자와 법인의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다.
- 계약조건 변경, 납품, 매장 임차 제한, 계약 이행과정에서의 기타 마찰 발생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를 엄밀하게 작성, 보존할 필요가 있다.

1. 개요

1.1 주요 내용

1.1.1 대리점 거래의 정의

- 대리점 거래는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간 상품 또는 용역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위해 행해지는 거래로서 일정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를 말한다.
- 공급업자란, 생산 또는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을 대리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대리점이란, 공급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1.2 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 교부 및 보관의무

- 공급업자는 대리점계약 체결 즉시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대리점에 제공하여야 하고, 해당 계약서는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다.
- 서면의 법정 기재사항은 ①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② 납품방법, 납품 장소 및 일시, ③ 상품대금의 지급 수단 및 지급시기, ④ 상품의 반품 조건, ⑤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⑥ 계약해지의 사유 및 계약해지 절차, ⑦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⑧ 기타 대리점 거래 계약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다.
- 작성의무 위반시 과태료 5,000만원, 보관의무 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의 제재

1.1.3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법위반 유형 (7가지)

①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구입강제 행위)

② 금전, 물품, 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행위)

③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판매목표 강제 행위)

④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불이익제공 행위)

⑤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⑥ 대리점이 청약 또는 구입의사를 표시한 제품, 수량 등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 요청을 거부 또는 회피하는 행위

⑦ 분쟁조정 신청,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보복조치 금지)

1.1.4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협의회를 두고 분쟁 조정

- 분쟁조정 당사자가 협의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단, 공정위 조사 중인 사건은 제외), 공정위가 협의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다. 중단된 시효는 조정조서 작성 또는 분쟁조정 불성립으로 종료시 다시 진행된다.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에는 분쟁조정 신청은 다시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다.
- 분쟁 당사자간 합의사항을 이행한 경우 공정위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며, 분쟁조정 담당자간 조정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조정 불성립시에는 조정 절차가 종료되며, 공정위 사건처리절차가 개시된다.

1.2 징벌적 손해배상

- 대리점 본사가 대리점법 제6조(구입강제), 대리점법 제7조(이익제공 강요)의 위반 행위를 하여 대리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대리점은 손해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법원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

2. 대리점법 상세 내용

2.1 법 적용 제외 사유

- 공급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인 경우는 제외된다.
- 대리점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적용이 제외된다.
-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된다. 거래상 지위 여부는 상품시장 및 유통시장의 구조, 공급업자와 대리점간의 사업능력 격차, 대리점의 공급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문제가 되는 거래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절대적 우월성이 아닌 상대적 우월성을 의미하며, 최소한 상대방의 거래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한다.

2.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4호 (거래상 지위 남용)에 우선하여 적용
- 대리점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구속조건부 거래 등 거래상 지위 남용 이외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은 공정거래법 규정이 적용된다.

2.3 계약서 교부의무

- 공급업자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를 대리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①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에 관한 사항
② 납품방법, 납품 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③ 상품대금의 지급 수단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④ 상품의 반품 조건에 관한 사항
⑤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⑥ 계약해지의 사유 및 계약해지 절차에 관한 사항
⑦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⑧ 기타 대리점 거래 계약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대리점거래 계약서에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각각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 전자서명을 포함)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 공급업자는 대리점거래 계약서를 대리점과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2.4 대리점법상 금지행위

2.4.1 구입강제 (밀어내기)

(1) 구입강제행위의 개념

-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법위반 유형

- 남아있는 재고 정리를 위해 주문이 없는데도 대리점에게 밀어내는 행위
- 거래처에 대하여 구입하지 않으면 향후 계속적인 거래에 영향을 받을 것임을 직간접적으로 알려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
-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대리점에게 주문하지도 않은 상품을 임의로 공급하고 반품을 허용하지 않는 행위
- 대리점에게 과다한 물량을 할당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이 그 할당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 비인기 상품,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 등을 일정 수량 이상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3) 관련 사례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할당으로 불이익을 준 사례 (공정위 2013서경1385)

- N사는 제품 회전율이 낮아 유통이 부진한 제품 등의 재고를 강제로 소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리점에게 유통기한 임박제품, 대리점이 주문하기 않거나 취급하지 않는 제품 등을 강제할당, 임의공급 방식으로 구입을 강요하였다. 2010년 9월부터는 대리점이 접속하는 주문시스템(PAM21)을 변경하여 대리점의 최초 주문량 등을 검색할 수 없도록 하여, 회사 주문 담당자의 최종 주문량 임의수정이 용이해지도록 하였다.

- **공정위 판단 :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유통기한 임박 제품 등을 구입강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문 시스템은 대리점 최초 주문기록, 변경 주문기록 및 사유, 최종주문량 등이 나타나도록 변경하고, 주문기록 등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N사는 대리점법 구입강제 금지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과징금 125억원 부과 및 임직원 형사고발함**

- **법원의 판단 : 공정위가 구입강제가 이루어진 4년여 기간동안 26개 품목 전체 물량을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며, 이를 전제로 한 125억원의 과징금도 위법하다.**

  → 법원 판결 후, 공정위는 N사에 5억원의 과징금 부과
  (자발적 주문 물량과 구입강제된 물량의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

상시적 밀어내기 행위로 불이익을 준 사례 (공정위 2014전사1457)

- J사는 부산영업소에서 2011년부터 2013년 6월까지 매월 10~14개의 집중관리 품목을 선정하고, 각 제품별로 할당량을 정한 후 관할 35개 전 대리점에 할당량 이상 구입하도록 강요하였다. 밀어내기 품목은 신제품 및 매출부진 제품, 검은콩깨두유, 검은 참깨두유 등 타사와 경쟁이 치열한 제품 등에 밀어내기가 주로 발생하였고, 밀어내기 방식은 매월말 집중관리 품목별 할당량을 정한 후 이를 팩스, 이메일, 구두로 각 대리점에 전달하고, 대리점이 할당량 미만으로 주문하는 경우 대리점의 주문 내역을 영업사원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주문 여부와는 관계없이 할당량만큼 강제 출고하였다.

- **공정위 판단 : J사의 행위는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기와 거래하는 대리점에 제품 구입 할당량을 정하여 주문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3,500만원 부과함**

2.4.2 부당한 이익제공강요 금지

(1) 부당한 이익제공강요의 개념

-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경제상의 이익에는 금전, 유가증권을 비롯해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되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상대방에게 전가하여 소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행위도 포함된다.
- 공급업자에게 실제 이익이 발생할 것까지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

(2) 법위반 유형

- 대리점업자에게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협찬금 등 경제상 이익을 공급업자를 위하여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자신이 구입하는 물량의 일정 비율만큼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대리점에 대하여 산출 근거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협찬금이나 기타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는 행위
- 자기의 필요에 의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거래처로 하여금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경우

(3) 관련 사례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각종 비용을 전가한 사례 (공정위 2013서경1385)

- N사는 대리전과의 사전 합의 없이 대형 유통업체에 파견된 진열 판촉 사원의 임금을 50% 이상 전가하고, 진열 판촉사원 파견시 제품 진열상태 개선, 재고물량의 효율적 관리, 소비자 호감도 증진 등 추가 매출 창출 효과가 N사에 직접적으로 귀속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비용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귀속시켰다.

- **공정위 판단 : N사의 행위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자기를 위하여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로서, 대리점법 위반이다.**

2.4.3 판매목표 강제행위

(1) 개념

-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판매 목표를 정해 놓고 미달성시 거래를 중단하거나 대리점이 인수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는 등 제재를 가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2) 법위반 유형

-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판매업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대리점에게 매월 일정액 이상의 판매목표를 부여하고 실제 판매액이 목표액에 미달한 경우 목표액과 실제 판매액과의 차액을 실제로 판매한 것처럼 하여 그에 상당하는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게 하는 경우
- 판매장려금을 판매목표 강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장려금이 포함되어야 정상적인 유통마진율이 확보되고 장려금 지급율이 정상적 유통마진율에 근접할 정도로 높은 경우)
- 판매목표 미달성시 신제품 판매를 중지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
- 대리점이 판매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본사에서 대리점을 대신하여 강제로 미판매 물량을 덤핑 판매한 후 그 손실을 대리점의 부담으로 하는 행위

(3) 관련 사례

판매장려금을 판매목표 강제의 수단으로 활용한 사례 (공정위 2012서경2437)
• N사는 매년 연간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품목별, 제품별 월 매출 목표를 수립하고 영업본부, 영업부, 영업지점에 할당하였다. 직전 2개월 매출 실적 및 매출 목표 구성비를 가중 평균하여 유통채널별, 거래처별 월 매출 목표를 산정하였고, 판매 목표의 80% 이상 달성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다. • **공정위 판단 : N사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가 인정되고, 대형마트와의 가격 경쟁 심화로 판매장려금이 사실상 판매마진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으므로, 판매목표 설정의 강제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N사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

2.4.4 불이익제공

(1) 개념

-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법 제6조 내지 제8조의 행위 외의 방법으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 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
- 거래 조건에는 각종 구속사항, 저가 또는 고가 매입, 가격조건, 대금지급방법 및 시기, 반품, 제품검사 방법 등 모든 조건이 포함된다.

(2) 법위반 유형

- 반품조건부로 공급한 상품의 반품을 받아주지 아니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반품을 포기하도록 하는 행위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비용 증가분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
- 판매업자에 임대한 장비, 비품이 판매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손실, 훼손된 경우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은 당초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변상 기준을 설정한 경우
- 일방적 계약 해지 조항, 계약 해지 후 일체 손해배상을 인정 안 하는 조항
- 계약 해석이 불분명할 때 당사자 일방의 해석을 우선시 하는 경우
- 불량 제품이 발생한 경우 교환비용 일부를 판매점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거나 반품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경우

(3) 관련 사례

방문판매원을 일방적으로 다른 특약점 등으로 변경한 사례 (공정위 2010서경2754)
• A사는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특약점 점주 또는 방문판매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다른 특약점 또는 직영점으로 이동시켰다. • **공정위 판단 : 거래상 지위남용(불이익제공)에 해당하므로, 법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 부과**

2.4.5 경영활동 간섭 금지

(1) 개념

-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 거래처의 경영에 대한 관여 자체가 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나, 거래처의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정상적인 상관급에 비추어 지나친 제한이나 의무를 과하는 경우는 법위반이다.

(2) 법위반 유형

- 대리점업자에게 소속된 임직원이나 판매원의 선임,해임, 계약, 근무지역, 거래조건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을 강요하는 행위
- 대리점의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자금출납 내역 등 판매업자의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 대리점의 거래상대방, 영업시간, 거래지역 등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을 강요하는 등 부당하게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경우
-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의 거래처 또는 판매내역 등을 조사하거나 제품 광고시 자기와 사전 합의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3) 관련 사례

방문판매원을 일방적으로 다른 특약점 등으로 변경한 사례 (공정위 2012서총3503)

- K사는 대리점 영업 직원 총 정원제를 시행하고, 영업직원 채용에 필요한 판매코드 발급을 지연, 거부하거나 영업직원의 해고를 강요하여 대리점의 직원 채용관련 경영활동에 간섭하였다.

- **공정위 판단 : 거래상 지위남용(경영간섭)에 해당하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 부과**

2.4.6 주문내역 확인 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이 청약 또는 구입의사를 표시한 제품, 수량 등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 요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 또는 회피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2.4.7 보복조치 금지

- 공급업자는 대리점이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신고, 공정위 조사에 따른 협조 등을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2.5 업무상 유의사항

- 대리점을 업무상 대등한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여야 한다.
- 계약의 주요 내용은 반드시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공급업자는 대리점에 대하여 적용하는 정책 및 지원(장려금 제도 및 각종 프로모션 등), 대리점 영업 전략, 예상 매출액, 판촉활동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여야 한다.
-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계약서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대리점의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합의를 거쳐서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대리점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기부금, 협찬금 등 거래와 무관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 대리점 계약 체결을 이유로 이중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1. 표시광고법의 적용대상 및 위반시 제재

1.1 표시광고법의 목적 및 입법취지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1.1 관련 용어

- '표시'란 사업자가 상품 용역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 포장(첨부물 및 내용물 포함),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 회원권, 분양권 등 상품 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 도형 및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 조장을 말한다.
- '광고'란 전단 팜플렛 견본 또는 입장권, 인터넷 또는 PC통신, 포스터, 간판, 네온사인, 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비디오물, 음반, 서적 간행물, 영화 또는 연극, 자기의 상품 외의 다른 상품,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으로, 사보, 홍보만화, 고객 안내문 등 대고객 홍보용 자료도 광고에 해당한다.
- '소비자의 오인성'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음을 의미하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두6965 판결 등)
- '거래질서 저해성'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의해 소비자가 오인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이로 인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빼앗는 등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를 의미한다.

1.1.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행위 중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등)과 표시광고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이다. 따라서 표시광고법이 우선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공정거래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 부정경쟁방지법 (광고에 의하여 원산지나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과 표시광고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이다.
- 소비자보호법(제10조, 제11조 표시, 광고의 기준)과 표시광고법은 각각 입법 목적을 달리하므로 경합하여 적용된다.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아님)

1.2 위반시 제재

1.2.1 행정적 제재

- 시정조치 :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등
- 과징금 : 법 위반 관련 매출액의 2% 범위 내 부과 (관련 매출액 산정 곤란시 5억원 이내)
- 임시중지명령 : 표시·광고행위가 법위반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되고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공정위가 이를 일시 중지토록 할 수 있다.

1.2.2 행정질서벌

- 다음 행위자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중요사항으로 고시된 표시·광고사항을 표시·광고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자
  * 요청받은 실증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임시중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 공정위 조사 및 의견청취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 공정위에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상기 사항과 관련한 법인 또는 임직원 기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2.3 사법적 제재

- 다음의 행위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자
  *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행하게 한 자
  * 공정위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상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2.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2.1 표시 광고의 기본 원칙

- 소비자는 자기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 등')에 관하여 알 권리가 있고, 공급자는 자기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 등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알릴 권리가 있는 동시에 또한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2.2 유형

① 허위 과장 표시·광고

-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기만적인 표시·광고

-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부당한 비교 표시·광고

-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 용역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사업자 등')나 다른 사업자의 상품 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비방 표시·광고

- 다른 사업자 등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에 관하여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행위를 말한다.

2.3 표시·광고시 유의사항

2.3.1 사업자 자신에 관한 표시·광고

(1) 판단기준

- 사업자가 자신이나 구성사업자의 규모, 연혁, 생산시설, 수상경력, 사업계획, 사업실적, 기술제휴 등에 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과장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2) 법위반 유형

- 자기의 생산규모가 국내에서만 가장 큰 규모인데도 세계(또는 아시아) 최대의 규모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자사의 주주 회원을 모집하면서 향후 자사 주식의 공개 상장 여부는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영업실적 등 공개상장 여건 충족 여부 등에 따라 결정)인데도 불구하고, '00년에는 틀림없이 공개 상장되어 5,000원권 주식이 60,000원에 매각 가능'이라고 마치 확실한 사실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특정 사업과 관련된 부지 구입, 사업승인, 건축허가 등 구체적인 사업 진척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조감도와 함께 '착공기일 : 00년 0월, 준공기간 : 00년 0월' 등으로 마치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사업자가 국내 유명 재벌그룹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대리점을 모집하면서 자신의 상호명에 재벌그룹명을 같이 표기하여 마치 재벌그룹 계열사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2.3.2 가격에 관한 표시·광고

(1) 판단 기준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 할인 또는 가격인하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허위의 종전 거래가격을 자기의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 타사 가격과 비교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의 실제 판매가를 현저히 낮게 보이기 위하여 허위의 경쟁사업자 가격을 자기의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 **종전거래가격** : 당해 사업자가 당해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최근 상당기간 (과거 20일 정도) 동안 판매하고 있던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기간 동안 당해 상품에 붙인 가격을 의미한다. 다만, 위 기간 중 당해 상품의 실거래가격이 변동한 경우에는 **변동된 가격 중 최저가격**을 종전거래가격으로 본다.

(2) 법위반 유형

- 할인 특매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현수막 등 표시 광고물을 제거하지 않고 이를 부착시켜 둠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할인 특매를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 가격 인하 판매를 실시하면서 비교가격의 기준과 인하 시점을 명시하지 않는 행위
- 실제 거래가격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 실제와는 달리 한정된 기간이나 수량만을 판매하는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2.3.3 원재료, 성분에 관한 표시·광고

(1) 판단 기준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에 사용된 원재료나 성분에 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2) 법위반 유형

- 실제 사용되지 않는 원자재나 성분이 포함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실제 사용된 양보다 많이 포함된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2.3.4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한 표시·광고

(1) 판단 기준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광고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2) 법위반 유형

- 품질 도는 성능이 일정한 수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수준에 해당한다고 하거나 당해 수준에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2.3.5 보증에 관한 표시·광고

(1) 판단 기준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의 보증, 사후관리(A/S)에 관하여 표시·광고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 범위, 방법, 기간, 장소, 책임자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2) 법위반 유형

- 보증의 내용, 기간 등에 관하여 표시·광고함이 없이 막연히 '100% 품질보증' 또는 '무조건 보증'이라고만 표기함으로써 사실과 다르게 완벽하게 보증이 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2.3.6 추천, 권장 등에 관한 표시·광고

(1) 판단 기준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에 대한 추천, 권장 등의 사실을 표시·광고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2) 법위반 유형

- 전문가, 연구기관, 유명단체에 의한 추천, 권장, 수상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당해 상품 등을 실제로 구입 사용해본 적 없는 소비자의 추천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 당해 상품에 관하여 실제로 시험, 조사, 검사를 한 사실이 없는 당해 부문 전문가의 추천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 OO신문사가 매년 실시하는 OO인기상품 선정 행사에서 대상이 아닌 10대 부문 히트상품으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으로 선정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단지 1년 중 하반기 히트상품으로 선정된 사실을 당해년도 전체의 히트상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특허를 출원한 사실만을 가지고 '특허 획득'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2.3.7 경쟁사업자 및 경쟁관계 상품에 관한 비교표시·광고

(1) 판단 기준

① 허위의 표시·광고

- 경쟁사업자의 규모, 연혁 등 경쟁사업자에 관한 사항이나 경쟁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의 가격, 품질 등 거래내용 또는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광고함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②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표시·광고

- 자신이나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나타내기 위하여 최대, 최고, 최초, 제일, 유일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 다만, 사업자가 명백히 입증하거나 또는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 절대적 표현이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경쟁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2) 법위반 유형

- '최초'를 입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초로 제공되는 제품'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을 인용하여 비교표시·광고하거나 또는 사실과 같다 해도 동일 조건 비교하지 않고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만 발췌 비교표시·광고하거나 사업자 또는 상품 등 일부에 대해 비교하면서 마치 전체에 대한 비교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2.3.8 중상·비방하는 표시·광고

(1) 판단 기준

-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중상 비방을 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소비자르 오인시키기 위하여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의 내용으로 중상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기하여 비방하는 표시·광고행위를 말한다.
- 이 경우 '회사' 등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어느 사업자를 지칭하는지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된다.

(2) 법위반 유형

- 경쟁사의 제품과 자사의 제품이 품질상 우열을 가리기 어려움에도 '아직도 OO사 제품을 사용하십니까?'라고 광고하는 경우

2.3.9 누락, 은폐 등에 의한 기만적인 표시·광고

(1) 판단 기준

- 사업자 자신이나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에 대하여 표시·광고함에 있어서는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표기하여야 하며, 제품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나 내용을 누락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된다.

(2) 법위반 유형

- 경쟁사는 100% 좌석을 확보해 주는 반면, 자사는 그렇지 못한 경우 자사의 통근용 정기항공편 이용의 장점을 광고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자사도 100% 좌석 확보가 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 유행상품을 모아 한 세트로 팔면서 상품 구성에 있어 구식 모델을 일부 섞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밝히지 않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2.3.10 기타 거래내용 및 거래조건에 관한 표시·광고

(1) 판단 기준

- 사업자가경품류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표시·광고함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명확하게 표시·광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공되는 경품류 내용, 제공 기간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일반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 이 경우 '회사' 등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어느 사업자를 지칭하는지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된다.

(2) 법위반 유형

- '선착순 100명에 한함' 또는 '0월 0일부터 0월 0일까지' 등 경품 제공수량 또는 기간에 관한 구체적 제한 내용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특정 상품을 경품류로 제공한다고 표시·광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신청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경품류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
- 유명회사 제품이 아닌 소형의 TV와 세탁기를 경품으로 지급함에도 경품 제공사실을 표시·광고함에 있어 '경품 : TV, 세탁기' 등으로만 모호하게 표기하여 마치 유명 회사의 중형 이상의 제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단지 왕복 항공편만 제공되고 숙박이나 식사는 제공되지 않음에도 경품 제공사실을 표시·광고함에 있어 '동남아여행', '유럽여행'이라고만 모호하게 표시·광고함으로싸 마치 숙식도 제공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3. 업무상 유의사항

- 객관적인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한 비교광고는 허용되므로, 필요시 동종의 상품에 대해 비교광고를 하도, 부분적인 우수성을 전체의 우수성으로 표현하는 행위 등은 지양하여야 한다.
- 사보, 홍보만화, 고객 안내문 등 대 고객 홍보용 자료도 광고에 포함되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표현을 수정해야 한다.
- 표시나 표현을 확정하기 전에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소비자의 입장이 되어 오인성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여야 한다.
- 비교 표시·광고는 법령에 의한 시험 조사기관이나 사업자와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 조사기관에서 학술적 또는 산업계 등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실시한 시험 조사 결과에 의하여 실증된 사실에 근거하여야 한다.

- 비교 대상과 관련하여 동일 시장에서 주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상품으로서 자기의 상품과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상품을 자기의 상품과 비교하여야 한다.
- 비교 기준과 관련하여 가격, 성능, 품질, 판매량, 서비스 내용 등의 비교 기준이 자기의 상품과 다른 사업자의 상품간에 동일하며, 비교 기준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 비교 표시·광고는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특성을 비교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주관적 판단, 경험, 체험, 평가 등을 근거로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 비교사항의 내용상 차이가 객관적으로 의미가 없거나 근소하여 성능이나 품질 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성능이나 품질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상품을 실제 이상으로 열등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여서는 안 된다.
- 다른 사업자 등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4. 부동산의 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공정위 예규)

4.1 심사지침의 목적

- 이 심사지침은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함에 있어서 부동산과 관련된 표시·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4.2 심사지침의 적용범위

- 이 심사지침은 사업자(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주택, 토지,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등 부동산의 분양(임대를 포함. 이하 같다)과 관련된 표시·광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4.3 용어의 정의

-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 "토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 2호의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4호의 토지분할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한다.
- "상가 등"이란 <건축법> 제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 등과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 의한 복리시설 등을 말한다.
- "시행자"란 주택, 토지 또는 상가 등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 "시공자"란 자신이 직접 상가 등을 건축·시공하는 시행자, 또는 시행자와 당해 상가 등의 건설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분양자"란 주택, 토지 또는 상가 등을 매수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자(이하 '피분양자'라 한다)와 체결하는 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한다)의 일방 당사자인 시행자 또는 분양대행자(분양계약의 전부나 일부, 또는 피분양자 모집 업무를 대행하기로 분양자와 약정한 자) 등의 자를 말한다.

4.4 일반 원칙

-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된 표시·광고의 부당성(소비자의 오인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구의 명료성, 글자 및 도안의 상대적인 위치와 크기 또는 색상, 표시·광고 내용과 표현이 사실에 근거하는지 여부와 명시적·묵시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이 심사지침에서 규정한 부당한 표시·광고유형은 주택, 토지 또는 상가 등의 분양 표시·광고에 있어서 발생하기 쉬운 유형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한 특정 행위가 이 심사지침에서 제시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에 해당되더라도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4.5. 세부심사지침

4.5.1 상가 등의 명칭

- 상가·호텔 등을 분양하면서 분양물의 명칭을 사실과 달리 백화점, 특급호텔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설립·운영할 수 있는 시설인 것처럼 분양물의 명칭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상가 등 명칭 부당 표시광고의 예시

- 일반 상가를 분양하면서 OO백화점, OO쇼핑, 대형마트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다만, 안경백화점, 가구백화점 등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백화점 등이 아님을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 광고가 되지 않음)
- 분양형 호텔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특급 등의 등급이 부여될 수 없음에도 마치 특급호텔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

4.5.2 시행자, 시공자, 분양자

- 분양자가 누구인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여 마치 시행자, 시공자 등 다른 자가 분양자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시공자의 상호나 상징마크 등을 상가 등의 명칭에 포함하여 마치 시공자가 주택이나 상가 등의 분양 또는 운영 등에 관여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① 시공자가 주택이나 상가 등 건축물의 건축·시공 외에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경우

  ② 분양자가 시공자와 분양 표시·광고에 시공자의 상호 등을 사용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없는 경우
- 분양 표시·광고에 분양자보다 시공자의 명칭을 크기, 색상 등의 면에서 현저히 눈에 더 잘 띄게 표기함으로써 사실과 달리 시공자가 주택이나 상가 등의 분양 또는 운영 등에 관여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시행자 등 부당 표시광고의 예시

- 분양 표시 광고에 분양자의 명칭은 표기하지 않고 ① 시행자와 시공자만을 표시하거나, ② 분양자가 속한 계열그룹만 표기하거나, ③ 분양자, 분양대행자 또는 모델하우스 전화번호만 표기하는 경우
- 원래 분양자인 A사를 매수한 실제 분양자가 마치 원래 분양자가 분양하는 것처럼 "A 상가 " 등으로 표시 광고하는 경우
- A건설회사는 상가 건물의 시공만 맡고 운영은 B회사가 하는 경우인데도, 상가 명칭은 A쇼핑, A종합상가라고 하거나 또는 명칭에 A회사의 로고를 넣어 분양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4.5.3 분양업종, 분양방법, 분양현황, 공사현황 등

- 상가 등을 분양 광고하면서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입점을 허용할 것으로 표시·광고한 뒤, 실제로는 이와 다르게 분양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피분양자의 자격 또는 수, 피분양자를 결정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실제보다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분양 표시·광고시 점포의 분양 현황에 대한 표현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사실과 달리 은행, 극장, 볼링장 등의 체육시설 등, 상가 등에 고객을 유인하는 효과가 큰 대중이용시설의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표시·광고할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 건물의 공사진행상황이나 입점예정일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여 실제보다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분양현황 등 부당 표시광고의 예시

- "지정업종은 분양 실적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의 단서 없이 볼링장, 실내수영장, 극장 등을 지정업종으로 표시 광고하고 사후에 다른 업종으로 분양하여 입점시킨 경우
- 사실과 다르게 "특정지역(경기도) 거주자에게는 우선권을 부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경우
- 단순히 '선착순 분양'이라고 표시 광고하고 실제로는 일부 또는 모든 점포를 입찰 등 선착순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분양하는 경우 (이 경우 선착순으로 분양하는 점포 수를 명시하면 부당한 표시 광고가 되지 않음)
- 실제 분양실적이 저조한데도 '95% 분양완료!'. '빨리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등으로 표시 광고하는 경우
- 사실과 다르게 '0차분 0개 점포 100% 분양', '평균 경쟁률 15:1', '최고경쟁률 18:1', '전국 지하상가 최고의 경쟁률'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 OO은행지점의 입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OO은행지점 입점 확정'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4.5.4 입지조건, 생활여건, 접근성

- 주택, 토지 또는 상가 등의 주소나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아 실제 입지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상권에 관해 객관적·구체적 근거없이 최상급 또는 확정적 표현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주택의 소재지에 대하여 기준지점이나 교통수단을 명시하지 않고 표시·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교통수단에 의한 소요시간을 「통상시간대」의 정상속도가 아닌 「새벽」이나 「한밤중」의 속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표시·광고함으로써 주택소재지가 실제보다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현재 이용할 수 없는 교통수단이나 도로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함으로써 교통여건이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주택소재지 여건에 대하여 계획단계의 비전이나 막연한 추측상의 내용을 확정된 사실처럼 표시·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공익시설이나 편의시설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함으로써 생활여건이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
- 현재 이용할 수 없는 학교, 공원, 백화점, 수영장 등 공익시설이나 편의시설 등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함으로써 생활여건이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입지조건 등 부당 표시광고의 예시

-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면서 실제 공급할 토지의 일부가 도로에 인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인접한 토지의 지번만을 표시하는 경우
- 실제 상가가 교차로와 접하는 곳에 위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가 분양광고상에는 교차로에 접하여 잇는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
- 객관적, 구체적 근거 없이 '어떠한 업종이라도 확실한 성공이 보장되는 상권', '주변 점포 전세금이 분양가격을 상회하는 상권'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 토지개발공사의 사업 결정이나 장기계획 확정 등의 근거 없이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개발 예정!'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 '대규모 아파트단지 및 주택밀집지역 유일한 상가'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인근에 연금매장 등 실질적인 상가가 있는 경우
- 새벽에는 20분, 통상적인 출근시간대에는 50분이 소요됨에도 '자가용으로 아파트에서 영등포까지 20여분 출근거리'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 사업계획만 확정된 전철에 대하여 이용가능시기, 완공예정시기, ' 계획'이나 '예정' 등의 단서를 명시하지 않은 채 약도 등에 기재하거나 'OO전철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강남지역에 마지막 남은 주택단지!'라고 광고하거나 '서울시민이 청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광고하는 경우
- 실제 주택으로부터 도보로 쉽게 갈 수 없는 거리(1km 이상인 경우)에 있음에도 'OO학교가 바로 앞'이라고 광고하는 경우
- 분양안내서의 배치도에 40평형 세대가 아파트단지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것으로 표기하면서 전망이 좋고 교통편이 편리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였으나, 실제로 전망이 차단되고 교통이 불편한 아파트단지의 중앙에 위치하는 경우
- 분양형 호텔을 광고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분양 대상인 호텔이 소재한 지역의 객실 가동률이 전국 1위라고 광고하거나, 분양 대상 호텔의 주변에 다른 숙박시설이 다수 존재함에도 호텔 주변지역 관광객의 숙박 수요를 자신의 호텔이 독점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4.5.5 재산가치, 수익성

- 주택, 토지 또는 상가 등의 미래의 재산가치에 대해 객관적·구체적 근거없이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거나 막연히 높은 가치가 보장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객관적·구체적 근거없이 확정적 투자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개발가능성이 없거나 있더라도 확정·확인 되지 않는 개발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내세워 토지의 개발이나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재산가치, 수익성 등 부당 표시광고의 예시

- 객관적, 구체적 근거 없이 '지가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급상승할 전망', '절대 우위의 재산가치 입증', '입점과 동시에 엄청난 투자증식 효과가 확실히 보장되는 상가'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 객관적 근거없이 단순히 개발계획 등으로 지가가 상승될 것이라는 기대만 갖고서 '00원 투자시 2년 내 200%의 수익'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 토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면서 해당 토지와 인접한 도로 개통이 확정되거나 도로 개통 계획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개통 예정'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개발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주변 임야를 분양하면서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곧 개발될 것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 분양업체가 수분양자에게 확정 수익을 보장하는 기간은 1~5년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수익 보장기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거나 '평생 임대료', '연금처럼 꼬박꼬박'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장기간 수익금을 확정 지급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
- 분양형 호텔의 수분양자들은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분양금액의 4.6%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득세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함에도, 수분양자가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를 수익률 산출시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수익률을 부풀려 표현하는 경우

4.5.6 부동산의 가격

- 주택, 토지 또는 상가 등의 분양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명시하지 않거나, 분양가격이나 권리금 등을 막연하게 표기하거나, 사실과 달리 표기하여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분양가격, 권리금, 임대차가액 등의 지불조건 또는 지불방법 등에 대하여 막연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여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부동산의 가격 등 부당 표시광고의 예시

- 분양가 3,000만원, 부가가치세 300만원인 상가에 대하여 단순히 '분양가 3,000만원!'이라고 표시 광고하는 경우
- 현재 주변 상가의 권리금은 2,000만원(10평 기준) 정도인데 '분양(입점) 후 권리금 2,000만원 ~ 4,000만원 선 확실'이라고 표시 광고하는 경우
- 사실과 다르게 '인근 타 상가의 2배에 해당되는 높은 임대료 보장'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 분양금 분할 납부시 이자가 부담되는데도 '무이자 3회 분할납부 가능'이라고 표시 광고하는 경우
- 일부 세대만 평당 900만원대에 공급됨에도 마치 전 세대가 해당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4.5.7 부동산의 면적

- 상가 등의 분양면적을 점포별 또는 매장별로 표기하여 분양 표시·광고하는 경우, 전용면적을 표기하지 않음으로써 전용면적이 실제보다 넓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주택의 등기면적에 대하여 전용면적 이외에 공용면적이나 서비스면적 등을 포함하여 표시·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넓은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에 대하여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 이외에 서비스면적이나 기타 공용면적까지 포함하여 "분양면적", "공급면적", "총면적", "--평형"등으로 표시·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넓은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단독주택의 경우, 공급면적에 대하여 바닥면적을, 대지면적에 대하여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표시·광고하지 않음으로써 실제보다 넓은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부동산의 면적 등 부당 표시광고의 예시

- 점포별 공용 면적 5평, 전용면적 5평인 점포를 분양하면서 단순히 '점포당 10평의 넓은 매장'이라고 기재하고 표시 광고한 경우
- (O) 전용면적 = 등기면적
- (X) 전용면적 + 공용면적 = 등기면적
- (O) 분양면적(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O) __평형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X) 분양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초과지하면적, 주차장면적 또는 발코니 등 서비스 면적
- (X) 총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서비스면적 (서비스 면적 내역 표시해도 총 면적에 계상 불가)

4.5.8 부동산의 특징 (재료, 제품, 품질, 부대시설, 별도 계약품목 등)

- 주택, 상가 등의 건축물 또는 점포의 구조, 재료, 부속, 인테리어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급·배수, 가스, 전기, 무인경비 등의 부대시설이나 별도 계약품목의 품질에 대하여, 혹은 그 설비나 공사에 필요로 하는 비용부담조건 등에 대하여 막연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기함으로써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건축물의 부대시설에 대하여 막연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기함으로써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부동산의 특징 관련 부당 표시광고의 예시

- 카탈로그에는 점포 바닥마감재를 고급 대리석으로 쓰는 것처럼 그림으로 나타내고 실제는 값싼 자재(일반목재, 타일 등)를 쓰는 경우
- 거실 앞 전면 유리창에 대하여 '채광, 방음이 뛰어난 페어그라스 사용'으로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일반유리를 사용하는 경우
- 편의시설의 공사 등에 상당한 비용이 추가됨에도 '모든 편의시설 제공'이라고 표현하여 무료로 시설해주는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경우
- 피분양자가 분양가 외에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설치해 주는 무인 경비시설에 대하여 단순히 '완벽한 무인경비시스템!'이라고 표시 광고하는 경우
- 상가입점자만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고도 고객을 위한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한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
- 아파트 등 주거용 집합건물을 분양 광고하면서 다른 아파트의 녹지율보다 높지 않음에도 '최고의 녹지율'이라고 광고하고, 사실과 달리 아파트 단지 내에 단지를 순환하는 수로가 조성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 현실적으로 복층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마치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4.5.9 융자, 전세금 등

- 융자금액에 대하여 융자기관 또는 융자금액, 이자율, 융자기간, 상환기간 등 융자내용 및 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전세금에 대하여 전세가액을 인근 동일조건의 것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융자, 전세금 관련 부당 표시광고의 예시

- 융자기관과 사전 협의나 약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고 3,000만원 융자, 연 11%' 등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였으나, 실제 융자 신청시 융자금액이 작아지거나 금리가 인상되는 경우
- 중도금 융자에 대하여 'A은행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 전에는 연 13.5%, 소유권 이전 후에는 실세금리를 적용한 융자 가능'이라고 광고하였으나 사실과 다르게 소유권이전 전에 대출금리를 연 17.5%로 인상하는 경우
- '융자 관련 제반비용 부담 없음(당사 부담)'이라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아파트 구입자들에게 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 융자와 관련된 부대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 융자의 조건으로 특정 보험회사에 화재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면서 단순히 '금융기관 융자 실시', '별도 담보없이 융자 가능'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 화재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하는 보험회사 융자임을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2,300만원짜리 집을 800만원으로 입주 가능! 융자 1,500만원'으로 표현하는 경우
- 인근 동일 조건 주택의 전세가액이 6,000만원 이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1억원 주택을 2,000만원으로 구입 가능! –주택은행장기융자 1,000 + 전세 7,000-'이라고 광고하는 경우

4.5.10 인·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분할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분할허가를 받을지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분할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관계기관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상가분양광고를 하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지 아니한 채 건축허가를 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인허가 관련 부당 표시광고의 예시

- 토지 분할 허가를 받지 않아 공유 지분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할된 것처럼 그려진 도면을 표시 광고에 포함시킨 경우
- 상가를 분양하면서 건축물대장에 지하 1층이 존재하지 않고, 건물과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등기 방식으로 상가 점포를 분양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아니한 채 마치 수분양자가 분양받는 지하 1층이 특정 호수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경우
-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 여부를 밝히지 아니한 채 상가의 평면도, 조감도 등을 통하여 분양 상가의 층별 분양 업종을 지정, 표시하여 분양 광고하는 경우 (이 경우 '토지 매입을 00% 완료하였음', '토지 매입 후 건축심의 단계임', '건축허가 신청 단계임', '건축허가가 완료되었음' 등으로 정확하게 표시하면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되지 않음)

4.5.11 조감도 등

- 토지 또는 상가 등의 분양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시설이나 자연환경의 유무, 위치, 거리, 교통편 등을 조감도, 카탈로그, 팜플렛, 약도 등에 표시할 때, 일반 소비자가 현재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을 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장래에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예정시기를 명시하거나 "계획" 또는 "예정" 등의 단서를 명기하여 표현하는 것은 무방하다.

조감도 관련 부당 표시광고의 예시

- 건립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 등을 'OO기관(회사)에서 건립 계획' 등의 단서를 붙여 조감도에 그리는 경우
- 표시 광고 시점에서 건설계획만 확정된 지하철 노선의 역위치를 완공 시기를 표기하지 않거나 '계획' 또는 '예정' 등의 단서를 달지 않고 약도에 기재하는 경우

4.5.12 건물인증

- 건물인증(정식인증, 예비인증 포함)표현과 관련하여 하위등급을 받았음에도 상위등급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건물인증(정식인증, 예비인증 포함) 표현과 관련하여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에너지효율인증마크를 사용하는 등 인증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건물인증 부당 표시광고의 예시

- 지식경제부로부터 '에너지효율 2등급 건물 인증(본인증, 예비인증 포함)'을 받았음에도 1등급 인증을 받았다고 표시 광고하는 경우
- 에너지효율 2등급 건물 예비인증을 받았으면서 본인증을 받은 것처럼 인증마크 등에 '예비인증'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표시 광고하는 경우
- 예비인증조차 받지 않았음에도 에너지효율 인증마크를 사용하여 동 인증을 받은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경우

4.5.13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 견본주택을 설치하면서 주택이나 상가 등에 실제 사용될 재료나 제품보다 우량한 것을 사용하거나 우량한 구조로 설치하여 당해 주택이나 상가 등이 실제보다 우량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견본주택에 사용된 재료 또는 구조가 사정상 변경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설치한 경우에도 실제의 것과의 차이가 현저한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모델하우스 관련 예시

- 견본주택의 인테리어를 실제 상가 또는 주택보다 고급으로 사용하는 경우
- 견본주택에는 대리석 욕조를 설치하고 '시공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고 표기한 후 대리석 욕조의 품절이나 입주자들의 동의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플라스틱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
- 모델하우스에는 A사가 제작한 벽장을 설치하였으나, 공급이 부족하여 실제로는 같은 규격, 품질의 B사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4.5.14 콘도미니엄

- 일정기간 동안 콘도미니엄(이하 "콘도"라 한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모집에 불과함에도 공유의 형식으로 소유권이 보장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객실의 공유와 이용지분에 따라 연간 이용가능일수 및 성수기 이용가능성이 제한됨에도 성수기 예약이 보장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
- 연계 체인망 콘도 등을 직영 콘도인 것처럼 표현하거나 아직 완공되지 않아 콘도시설을 이용할 수 없음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콘도미니엄 관련 부당 표시광고의 예시

- 실제로는 일정 금액의 보증금만 내고 일정기간 동안만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보장에 불과하면서, 소유가 가능한 회원권 분양이라고 표시 광고하는 경우
- 콘도 이용회원 모집임에도 '소유하십시오' 등 '소유'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표시 광고하는 경우
- 콘도사업자가 분양 계약 1개 구좌당 분양계약자 수를 감안할 때 성수기 100% 예약은 처음부터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성수기 예약이 확실히 보장되는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경우
- 전국적인 체인망 또는 해외 체인망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면서 갖추고 있는 것처럼 표시 광고하거나 연계 체인망에 불과한 콘도를 직영 콘도라고 표시 광고하는 경우
- 아직 공사 착공조차 되지 않았거나 완공이 되지 아니한 콘도 시설을 즉시 이용이 가능한 콘도인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경우

4.5.15 기타 거래조건

- 피분양자가 취득할 권리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혜택이 있다고 표기하는 등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상가 등의 소유권, 임차권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등기 등 분양절차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예시

- 분양된 상가의 임차인을 단순히 소개하는 데 불과한데도 '높은 가격으로 100% 재임대 보장!'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 사실과 다르게 '인근 창고시설 무료이용'이라고 표시 광고하는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분양 당첨시 상가 소유에 필요한 등기 절차 등 일체의 법적 조치 무상 대행'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5. 표시 광고시 주의사항

- 표시 광고법은 사업자가 표시나 광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 사후 규제가 원칙이나, 중요정보 고시 해당 업종은 예외이다. (지정된 표시 광고사항을 필수적으로 표기하여야 함)
- 사전 표시 광고 의무 규정을 갖고 있는 개별법의 경우, 표기하지 않으면 법위반이 된다. 예를 들어, 안정인증 표시, 원산지/지리적 표시, 식품(용량, 영양성분, 첨가물 등), 의약품(제조업자, 유효기간, 사용기한, 일일 섭취량 등), 사용상 주의 표시 등
-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선별하여 표기하면 된다. 다만,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근거 자료에 맞게 표시 광고해야 한다.
- 자신의 사업에 적용되는 개별법을 먼저 확인한 후, 표시광고법상 문제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6. 표시광고법상의 실효성 확보

6.1 중요정보 공개제도 (표시광고법 제4조)

-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필수적인 정보를 사업자의 표시 광고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율(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표시광고법 제4조 제1항,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 부동산 분양 업종의 경우, 건축허가 취득 여부,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신탁계약 체결 여부 등 분양대금 관리 방법, 시행사, 시공업체명, 분양물의 용도 규모 지번 등이 공개하여야 할 중요정보로 고시되고 있다.
- 중요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하며, 그 내용 자체로도 부당한 표시 광고로 별도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6.2 임시 중지명령 제도 (표시광고법 제8조)

- 공정위가 정식 심결이 있을 때까지 부당 표시 광고행위를 일시 중지시키는 조치이다.
- ① 부당한 표시 광고로 명백히 의심될 것, ②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 임시중지명령 요청기관 :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6.3 광고 실증제도 (표시광고법 제5조)

- 사업자 등은 자기가 행한 표시 광고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학술적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 공정위는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사업자는 공정위로부터 실증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실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공정위는 자료 제출이 될 때까지 광고 중지를 명할 수 있다.

6.4 제재조치

- 시정조치 : 시정명령,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필요한 조치
- 과징금 : 관련 매출액의 2%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 기준을 곱한 금액
- 고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 사업자는 1억원 이하, 임직원은 1,000만원 이하 (조사거부, 허위자료 제출 등)
- 동의 의결 : 사업자가 시정 방안을 제시하여 공정위가 수용하면 위법 판단없이 종결

  * 형사처벌이 필요한 중대 명백한 위반행위는 제외됨

7. 관련 사례

현관전실 관련 부당한 광고행위 사례 (공정위 2013구사3356)

- D사는 2007년 5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대구 달서구 소재 <D 월드마크 웨스트엔드> 아파트 분양 광고를 하면서, 분양 카탈로그 등을 통해 '현관전실-모던한 디자인과 세련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현관전실이 첫인상부터 사는 분의 품위를 높여드립니다. 가족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납공간 극대화'라고 표현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다. 또한 견본주택에 각 분양 평형별로 4~18제곱미터 면적의 전실을 설치하고 내부에 수납가구를 배치하여 전시하였다.

- **공정위 판단 : 이 사건 광고 당시 설계도상에는 전실 부분이 복도의 일부분인 공용 공간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본주택 전실 내부에 수납가구를 배치하고 카탈로그를 통해 전실을 다용도로 사용 가능한 공간으로 표현하였는바, 공용 면적에 해당되어 수분양자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전실을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 것처럼 광고하였다. 이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이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

오피스텔 수익률 광고 관련 사례 (공정위 2014안정1113)

- K사는 2013년 3월 ~ 7월의 기간 동안 중앙일간지를 통하여 수원시 광교택지 개발지구에 'K 해피리움 오피스텔'을 분양 광고하면서 '광교 최초! 임대수익보장!!(연 720만원)', '1년 720만원 보장으로 10.5% 수익률(15평형 기준)', '12만여명의 임대수요 확보'라고 광고하였다.

- **공정위 판단 : 단지 1년간의 임대료 상당액을 분양금액에서 감액해주는 것에 불과함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연 720만원의 임대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하여 수익률을 부풀렸고, 주변 시설의 고용인구와 유동인구만을 계산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이 12만여명의 임대수요를 확보하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오인 가능성이 있으므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

X.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처리 절차

1.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 사건에 대해 심판 기능을 수행하는 준사법적 기관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의 합의로 운영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심결을 위해 위원 전원(9명)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소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1.1 심판기능으로서의 공정위

구분	전원회의	소회의
의장	위원장	상임위원
의결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전원 출석 + 출석위원 전원 찬성
소관사항	• 법규 등의 제·개정 • 이의신청의 재결 •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건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요 사건	• 일반사건 • 승인, 인정, 인가사항 • 집행정지의 결정 • 과태료 • 관계기관 협조의뢰 사항 (고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요청)

■ 심의과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

- "심결" :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사건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는 일련의 심판 과정
- "심사관" : 신고 또는 직권으로 인지된 내용에 대해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한 후에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당해 인지 내용이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공무원 (공정위 소속 4급 이상인 직원 중 사무처장이 지정하는 직원)
- "피심인" :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로서 당해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위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
- "이의신청인"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받은 피심인이 당해 처분에 불복하고 당해 처분을 취소하여 중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는 자를 말한다.

1.2 공정위 사건 처리 절차

1.2.1 인지단계

- 법 규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 또는 신고에 의한 조사 가능
- 위반 혐의는 직권인지가 원칙이고, 신고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
- 신고 접수시 예비조사 실시 후 사건화 여부를 결정

1.2.2 조사 심사단계

- 사건 심사 착수 보고 (사건번호, 사건명 부여) 후 조사권을 발동하여 본조사를 실시
- 조사 내용이 법에 위반되는 경우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 등의 조치의견을 제시
- 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후, 위원회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

1.2.3 심의 의결 단계

- 심의는 위원회가 피심인과 심사관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대심 구조 하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피심인 등에 대한 본인 확인, 심사관의 심사 보고, 피심인의 의견진술, 심사관의 의견 진술, 위원들 질문 및 사실관계 확인, 참고인 등의 심의참가, 심사관의 조치의견 발표, 피심인의 최후진술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 합의는 심의가 종료된 후 위원들만 참석하여 비공개로 위법 여부 및 조치 내용 등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이다. (공정거래법 제43조)

1.2.4 의결 결과 통지

- 합의 결과에 대해 의결서를 작성하여 심사관이 의결서 정본을 피심인에게 송달하는 절차로, 이로써 피심인의 의무가 발생하거나 권리행사가 제한된다. (공정거래법 제45조)

1.2.5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유형

-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내릴 수 있는 조치 유형으로는, 재심사명령, 심의절차 종료, 무혐의, 종결처리, 조사 등 중지,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고발 등이 있다.

1.3 공정한 심결을 위한 주요 제도

1.3.1 심의준비 절차 제도

- 정식 심의에 앞서 심사관과 피심인 간에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에 대해 서면 등으로 충분히 탄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실관계와 쟁점을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한 제도

1.3.2 심의 속개제

- 심의를 신중하게 하고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심의를 한번에 끝내지 않고 다음 기일에 심의를 속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3.3 심의분리제

- 공동행위와 같은 위반행위 건에 대한 심의시 특정 피심인이 다른 피심인과 별도로 심의를 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영업상 비밀이 경쟁사에 공개될 우려가 있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심의를 분리하여 진행하는 제도

1.3.4 출석 시차제 등

- 해당 안건의 심의시작 시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회의시작 전까지 출석하도록 하여 피심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는 불편 등을 감수하지 않도록, 해당 안건의 심의시간을 예측하여 그 시간에 맞도록 출석하도록 하여 피심인들의 편의를 보장하는 제도
- 그 밖에도, 사건 처리의 공정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보고서 첨부자료 공개, 프레젠테이션 시설의 설치 운영, 외국인을 위한 통역부스 설치 등을 허용하고 있다.

1.4 불복절차

1.4.1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 공정위의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제기 가능 (공정거래법 제53조)
- 시정명령을 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집행정지 가능 (공정거래법 제53조의 2)

1.4.2 행정소송

- 공정위의 처분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이의신청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1.5 사전 심사 청구 제도

- 사전심사 청구제도는 사업자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공정거래관계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면 공정위가 이를 심사하여 그 적법 여부를 30일 이내에 회답해 주는 제도이다.
- 회답은 공정위의 공식의견이므로 적법하다고 인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없게 되는 확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 다만, 구체성이 없는 경우 자료 부족으로 법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 앞으로 실시하기로 확정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심사가 가능하다.

1.6 동의명령제도

- 동의명령제도란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서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그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
- 동의명령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은 법 위반 판정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시정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사업상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하고 불공정기업 판정으로 인한 이미지 훼손을 막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공정위 역시 법 집행의 효과를 통상적인 절차와 거의 동일하게 구현하면서도 피규제자의 동의를 얻어 냄으로써 법 집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위법성 판단과 관련된 쟁송 등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 소비자 등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사안에 따라서는 통상의 시정조치에는 포함되기 어려운 가격 인하, 손해보상 등 보다 직접적이고 다양한 시정 수단을 통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 공정위 조사 절차

2.1 조사 주체

- 사무처 소속의 사건조사업무를 담당하는 5개 국(경쟁정책국, 시장감시국, 카르텔조사국, 소비자정책국, 기업거래정책국)과 5개 지방사무소(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2.2 조사 단서

- 사건의 조사는 신고 또는 조사관의 직권 발동에 의해 개시된다.
- 직권 발동은 주로 '중점감시업종에 대한 조사',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등과 같이 연초에 조사 계획을 세우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2.3 배당과 사전심사

- 신고 또는 직권 발동에 의해 개시된 개별사건은 담당 과장에 의해 개별 조사공무원(통상적으로는 사무관)에게 배당된다.
- 배당받은 조사공무원은 당해 사건이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인지 사전심사하여, 사전심사 결과 ① 피조사인이 사업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② 적용제외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③ 5년의 조치 시효가 완료된 경우에는 '심사불개시 결정'을 내린다.
- 사전심사 결과 위와 같은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건착수보고'를 한다.

2.4 사건번호 사건명 부여와 조사의 실시

- 사건착수보고가 이루어지면, 심판관리관실에서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함으로써 정식으로 하나의 조사사건이 되며, 이후 조사공무원은 조사권을 발동하여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 확인한 후,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2.5 심사보고서 작성 후 심사관의 조치

① 약식절차 회부

- 당해 조사사건이 소회의의 소관사항인 경우,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심인(피조사인)에게 심사보고서에 기재된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 조치의견을 수락하는지 여부를 물어 피심인이 이를 수락하면 약식절차에 회부한다.
- 약식절차에 회부된 사건은 위원회 심의 없이 위원들의 서면 결의로 처분이 결정된다.
- 심사관 조치의견에 고발이나 과징금 납부명령이 포함된 경우, 또는 피심인이 심사관 조치의견을 수락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는 약식 절차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위원회 상정

- 시정조치, 과징금 납부명령, 공표명령 등의 처분이나 형사고발 조치 등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처장에게 제출하며, 사무처장은 자신의 명의로 조사사건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 조사사건이 위원회에 상정됨과 동시에, 심사관은 피심인(피조사인)에게 심사보고서를 송부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서를 원칙적으로 2주 이내에 문서로 제출할 것을 고지한다.

3. 공정위 심판 절차

3.1 심판 주체

- 전원회의는 5인의 상임위원(위원장, 부위원장 포함)과 4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 비상임위원 4인은 3인의 대학교수와 1인의 변호사로 구성된다.
- 소회의는 총 3개이며, 각 소회의는 1인의 상임위원과 2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3.2 주심위원 지정과 심결보좌

- 주심위원은 법원의 주심법관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심결보좌기구의 보좌를 받는다. 전원회의 사건에서는 위원장이 임의로 주심위원을 지정한다.
- 심결보좌는 심판관리실이 담당하며, 심판관리실의 3개 담당관(경쟁심판, 협력심판, 소비자거래심판)은 상임위원 3인에 각 대응하여 심결보좌업무를 수행하고, 심사관의 심사보고서와 피심인의 의견서를 검토하여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작성 보고한다.

3.3 심의기일 및 장소의 지정

- 통상 전원회의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로, 소회의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로 지정된다.
- 심리장소는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심판정(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으로 지정된다.

3.4 합의

- 합의는 비공개로 이루어지며, 원칙적으로 심의가 종료된 당일에 마쳐진다.
- 위법성 인정 여부에 대한 합의 후,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공표명령, 형사고발 등 제재수단의 종류와 수준에 대한 합의를 한다.
-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소회의는 3인의 만장일치로 의결하며, 소회의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전원회의에 회부된다.

3.5 의결서 작성

- 의결서는 심판관리실에서 작성하며, 원칙적으로 합의된 날로부터 35일 이내에 작성한다.

E.O.D

SGC 에너지